

기본연구
—
2020-28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
서유정·이재열·이윤진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KRIVET

머 리 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R&D 허브로서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온 국민의 평생교육, 진로교육의 강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다만 평생교육이 시작부터 성인을 포함한 온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온 반면, 우리나라 진로교육의 초기 단계에는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이 주요 수요자 집단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진로교육의 대상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이전과 고등학교 졸업 이후까지, 즉 모든 연령대의 전 국민을 포함해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생애주기 동안 빠른 사회변화로 인해 여러 직장과 직업을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시기뿐만 아니라 이후의 성인기 때도 지속적으로 진로를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역량을 갖춰야 하며,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것입니다.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수시과제로서 성인 진로교육의 수행 기반이 될 법령 개정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선행연구와 관련 이론, 법령 등을 검토하여 성인 진로교육의 정의와 대상, 목표체계, 서비스 유형 등을 제시하였고, 정부부처와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련 정책 사업을 분석하였으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진로교육법」 과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서유정 연구위원이 책임을 맡고, 이재열 부연구위원과 이윤진 전문연구원이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서기희·박규리·배유라 연구조원이 연구 진행을 지원하였습니다. 성공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과 이를 위해 자문을 아끼지 않은 여러 자문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게시된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2020년 9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나 영 선

제목 차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6
제3절 연구 방법 및 절차	7

제2장 성인 진로교육의 개념_11

제1절 성인 진로교육 용어 고찰	3· 1
제2절 성인 진로교육의 내용 및 유형 탐색	4· 2
제3절 성인기 주요 특징 및 진로 관련 이슈	4· 3
제4절 시사점	4

제3장 성인 진로교육 정책 및 사업 현황 및 현장 요구 분석_53

제1절 성인 진로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 분석	5· 5
제2절 현장 수요자 관점의 수요 및 요구 분석	6· 6
제3절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 개정 요구 쟁점 도출	5· 9

제4장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 개정 방안_97

제1절 성인 진로교육 관련 기존 법령 분석	9· 9
제2절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 개정의 주요 방향 및 내용	7· 0 1
제3절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 개정(안) 구성	5· 1 1

제5장 결론 및 시사점_131

제1절 결론 133
제2절 시사점 135

참고문헌_141

부록_155

1. 지자체별 청년층 지원정책 171
2. 지자체별 중장년층 지원정책 171
3. 지자체별 고령자 지원정책 171
4. 센터 실무자 FGI 질문지 174
5. 수요자 설문조사 질문지 179
6. FGI 문항 개발 186
7. 설문조사 문항 개발 190
8. 「진로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개정 초안 및 전문가 의견에 따른
수정안 대조표 199

본 저작물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20년도에 작성하여 제공한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서유정)이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누리집(www.krivet.re.kr)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표 차례

〈표 1-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	3
〈표 1-2〉 연구진 회의 일정 및 내용	8
〈표 1-3〉 전문가 협의회 및 서면검토 일정 및 내용	9
〈표 1-4〉 FGI 추진 일정	10
〈표 2-1〉 국내 법령상 성인의 구분	14
〈표 2-2〉 통계 조사상 성인의 정의	15
〈표 2-3〉 교육 대상·학습자로서 성인의 정의	17
〈표 2-4〉 진로교육(career education)의 정의	18
〈표 2-5〉 진로지도/평생(생애)지도의 정의	21
〈표 2-6〉 진로개발/경력개발의 정의	23
〈표 2-7〉 국내 학교 진로교육의 세부 목표 및 성취기준 (2015 개정)	25
〈표 2-8〉 생애단계별 진로교육 목표	26
〈표 2-9〉 미국의 국가 수준 진로역량 개발 체계	28
〈표 2-10〉 성인 진로교육 대상자 세부 구분	29
〈표 2-11〉 호주의 국가 수준 진로역량 개발 체계	31
〈표 2-12〉 성인기 발달단계의 주요 특징	36
〈표 2-13〉 진로 관점의 성인기 발달단계 특징	38
〈표 2-14〉 생애단계별 평생교육 중점 추진 내용	40
〈표 2-15〉 성인기의 진로 과업·고민 특징	41

〈표 3-19〉 이용하기 편리한 진로지원 및 서비스 제공 시설 선택 이유	92
〈표 3-20〉 독립된 성인진로지원 및 서비스 전담 시설의 필요성	92
〈표 3-21〉 성인 진로교육 운영을 위한 부처별 역할	94
〈표 4-1〉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105
〈표 4-2〉 성인 진로교육 법령 개정 시 조항 구성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114
〈표 4-3〉 「진로교육법」 개정(안)	117
〈표 4-4〉 「평생교육법」 개정(안)	125
〈표 5-1〉 성인 진로교육의 개념과 영역	133

그림 차례

[그림 1-1] 직장인 연차별 이직횟수	4
[그림 1-2] 성인의 진로개발준비도 검사 평균 T점수(2016~2018)	5
[그림 1-3] 연구 추진 방법 및 절차	7
[그림 5-1] 부처 간 협의체 구축 및 부처별 특성에 따른 역할 분담 체계	139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 발달과 일자리 구조의 변화 등과 함께 초기 입직 이후에도 새로운 진로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역량의 중요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성인 진로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금까지 성인의 진로교육과 진로지도는 대학의 취업서비스센터,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교육부의 평생학습센터 등에서 취업/재취업 지원의 일부로서 주로 시행되었다. 단순 취업지원을 넘어서 생애전환기의 진로 재설계와 진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성인 진로역량 제고를 돕는 진로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진로교육을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성인기까지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이 될 법령 개정안의 마련을 목표로 하였다.

나.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성인 진로교육의 개념 및 영역을 탐구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련 정책사업 현황과 현장의 성인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고, 성인 진로교육의 근간이 될 법령 개정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 연구진 회의, 전문가 협의회 및 서면검토, FGI와 설문조사이며, 문헌연구는 관련 선행연구, 법령, 정책자료, 평생학습자료, 보도자료, 정책리뷰 등을 참고하였다. 연구진 회의 9

회, 전문가 협의회 3회, 전문가 서면검토 5회를 추진하였으며,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FGI는 성인 진로교육 관련 현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총 5회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서비스 이용자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5월 4째 주부터 7월 첫째 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추진하였고, 샘플링은 할당표집(quota sampling) 방식으로 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성인 150명과 비이용자 50명, 남녀 각각 100명씩 할당하여 추진하였다.

2. 성인 진로교육의 개념

관련 선행연구와 이론, 문헌 등을 분석한 결과 정리된 국가 차원의 성인 진로교육의 기초 개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성인 진로교육의 목적 및 정의: 성인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진로를 선택·계획·준비·관리하는 진로개발역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활동·프로그램·서비스
모든 사람과 전 생애주기에서 개인의 목표, 맥락과 연관된 적성, 능력, 가치관, 태도, 학습, 직업, 경험을 모두 포괄하는 진로지도 개념 지향
- 대상: 모든 국민이 생애진로교육의 수혜자로서 특정 연령대만이 아닌 성인 초기부터 은퇴 이후까지의 성인기 모든 연령을 포함
- 영역 및 목표체계: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세계 이해, 진로탐색, 진로디자인과 준비, 진로관리 영역을 포함
특히 성인기 직업생활 실천 단계로서 창업·이직·전직·실직 등의 변화 실체에 대한 유연한 적응과 대응을 위한 진로관리 필요

- 주요 특징: 가정, 직장, 사회 등 다양한 생애역할 상황에 놓이며, 학습 목표, 경제적 상황, 건강 여건, 고용 여부 등에 따른 개인차 존재함. 구직, 직업 유지, 전환, 창업, 퇴직 등의 효과적인 직업생활과의 연관성 필요

이러한 개념하에 성인 진로교육의 목표로서 가정·일·사회 등의 다양한 생애역할 속에서 구직·전직·은퇴 등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 및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진로관리 및 진로개발역량 개발·촉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3. 성인 진로교육 정책 및 사업 현황 및 현장 요구 분석

가.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관련 정책과 사업 현황

정부부처(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정책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부처별 정책에서 넓은 범위의 진로교육 요소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2장에서 논한 성인 진로교육의 내용이나 5단계의 목표체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춘 정책의 비중은 적었으며, 대부분 취·창업 지원정책의 일부로 제한된 범위에서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황은 국내 8개 특별시 및 광역시 지자체(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의 관련 사업 역시 마찬가지였다. 관련 청년층 지원 사업 189개, 중장년층 지원 사업 74개, 고령자 지원 사업 53개 모두 유사한 현황을 보였다. 즉, 취·창업 지원에 비해 성인 진로교육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도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 현장의 수요 및 요구 분석: FGI

현장의 수요와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FGI를 실시하였다. FGI는 현장에서 관련 교육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실무자 총 12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는 연역적 코딩과 귀납법 주제 도출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성인 진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취업교육을 넘어 자기탐색과 비전 설정, 직업에 대한 개념 확대 등을 위한 진로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용자들 간의 진로결정 수준 격차, 성인 진로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 부족 등으로 인해 맞춤형 교육이나 체계적 연계 교육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 진로교육이 절실한 주요 수요계층으로는 중장년층 및 경력단절 여성, 은퇴(예정)자, 취약계층이 주로 꼽혔으며,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취업지원의 일부로 추진되는 제한적 진로교육, 취업 실적 중심의 센터 평가체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부족, 부처 간의 연계·협력 체계 미흡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성인 진로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에 운영되는 기관의 특성화 및 전문화를 통한 명확한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 현장의 수요 및 요구 분석: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평생학습센터 등 관련 센터의 이용자 150인과 비이용자 50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의 응답을 바탕으로 성인 진로교육의 필요성

을 분석한 결과, 희망하는 은퇴 연령대까지 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낮으며, 체계적으로 진로를 다시 설계하고 있는 응답자는 많지 않아 진로 재설계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성인 진로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 재설계를 위해 진로교육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성인 응답자들의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언젠가 필요해질 진로 재설계(예: 이직 등)를 위해 '준비하고 있음'이 73.2%이었으나 진로 심리검사나 진로 프로그램 참여, 진로정보 탐색 등 장기적 관점의 진로 재설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뿐만 아니라 공공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진로교육의 목표에 맞춰 제공되는가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특히 이 결과는 개별 진로교육 관련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는 점과 대조되어 현재 제공되는 공공의 진로 프로그램이 목표성을 갖고 운영되기보다는 서비스 이용자의 흥미 위주로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도 시사하였다.

라. 현장 의견 기반 성인 진로교육 운영체계 방안 제시

위의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확인된 의견을 취합하고 발전시켜 아래와 같이 효율적인 성인 진로교육 운영체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효율적인 협력과 역할 분담을 위해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부처의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

- 교육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성인의 진로개발역량 강화를 목표로 성인의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세계 이해(이론), 진로 탐색, 직업세계 진입 이후 진로 재개발 등을 위한 진로관리를 지원한

다. 대상은 진로목표(취·창업 포함)가 불명확하거나 새로운 진로개발을 희망하는 모든 성인을 포함한다.

- 고용노동부는 성인의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 후 직업세계에서의 적응 및 정착을 목표로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실습), 진로디자인과 준비 영역을 지원한다. 취업준비에 임할 역량과 마음가짐이 갖추어져 있거나 교육부의 진로개발역량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와 유사한 목표와 영역을 지원하지만,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부처에서 운영하는 공공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센터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마. 법령 개정을 위한 쟁점 도출

1) 성인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되는 진로교육 기반 마련 필요

부처 및 지자체의 관련 정책 사업이 모두 취업이 우선시됨에 따라 주요 진로교육 수요자와 주요 정책 대상자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취업교육이 중심이 되는 탓에 이용자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되는 진로교육이 제공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적 관점에서의 성인 진로개발역량 강화 지원 필요

단기적 취업지원 중심의 정책 사업 추진과 취업률 중심 성과평가로 인해 장기적, 교육적 관점에서의 진로개발역량 강화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

났다.

3)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인 진로교육 실행 여건 확보 필요

성인기에도 지속적인 진로 재설계와 관리가 필요하나 현재 운영되는 정책 사업이 주로 단기적으로, 단위 프로그램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성과 목표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 이후 이용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진로 지원 역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4.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 개정(안) 도출

성인 진로교육의 개념 및 내용에 대한 정리(제2장) 결과와 성인 진로교육 관련 정책 및 현장 요구 분석(제3장)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 제·개정의 주요 방향을 정리하였다.

- 성인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진로교육 기반 마련
- 교육적 관점에서의 성인 진로개발역량 강화 지원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인 진로교육 실행 여건 확보

가. 성인 「진로교육법」의 내용 구성

성인 「진로교육법」의 제·개정 방향에 맞추어 법령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목적: 성인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진로를 선택·계획·준비·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진로교육을 제공하여 개인의

행복한 삶과 성공적인 직업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본방향: 성인 진로교육은 사회와 직업세계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성인들이 자기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 및 재설계, 진로준비, 진로관리 등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요구되는 진로개발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직업세계와 사회의 다변화에 대응하여 다회의 진로 의사결정과 장기적인 진로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인은 각자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하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성인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에 의해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실행되고, 교육전문기관에 의해 양질의 콘텐츠가 개발·보급·운영되어야 한다.
- 영역과 방법: 성인 진로교육의 주요 영역은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와 준비, 진로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성인 진로교육의 주요 방법은 진로수업, 진로상담, 진로검사 및 평가, 진로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로 구성된다.
- 운영체계: 성인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한 진로교육기관 및 평생교육기관에서 실행하며, 성인 진로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한 진로교육기관 및 평생교육기관에서 개발, 보급하여 운영해야 한다. 진로교육기관 및 평생교육기관은 성인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 운영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진로교육기관 및 평생교육기관은 성인 진로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다.

나. 「진로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개정안

1) 「진로교육법」 개정(안)

현행 「진로교육법」에 포함된 진로교육의 기본 방향과 용어 등을 그대로 따라 학교 진로교육과의 연계성 확보에 용이하며, 성인 진로교육의 내용을 추가하여 기존 진로교육 정책 및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빠르게 활성화시킬 수 있다. 진로교육의 대상을 학생에서 성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으로 변경하며 성인 대상 진로교육의 내용과 관련된 진로관리의 개념을 포함한다. 성인 진로교육의 내용을 담은 조항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를 개정하며, 제15조를 추가한다.

「진로교육법」 (현)	「진로교육법」 개정(안)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인식, 탐색, 준비, 결</p>

「진로교육법」(현)	「진로교육법」 개정(안)
<p>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p> <p>2.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3.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p> <p>4. “진로정보”란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p> <p>5. “수업”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수업을 말한다.</p>	<p>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p> <p>2. “진로상담”이란 국민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3. “진로체험”이란 국민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p> <p>4. “진로정보”란 국민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p> <p>5. “진로수업”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4조 및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수업에서 진로와 관련된 수업을 말한다.</p> <p>6. “취업지원”이란 취업·재취업을 앞둔 국민에게 취업정보 및 고용기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p>
<p>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진로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p>	<p>(좌동)</p>

「진로교육법」(현)	「진로교육법」 개정(안)
<p>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p>	
<p>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p> <p>②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③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p> <p>④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p>	<p>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p> <p>② 모든 국민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③ 진로교육은 국민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p> <p>④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p>
<p>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p>	<p>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발달 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p>

「진로교육법」 (현)	「진로교육법」 개정(안)
<p>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제6조(진로교육 현황조사) 제7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p>	<p>(좌동)</p>
<p>제2장 초·중등학교의 진로교육 제8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제9조(진로전담교사) 제10조(진로심리검사) 제11조(진로상담) 제12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제13조(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p>	<p>(좌동)</p>
<p>제3장 대학의 진로교육 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p>	<p>(좌동)</p>
	<p>제4장 성인의 진로교육 (신설) 제15조(성인의 진로교육) ① 본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른 진로교육기관, 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하 “평생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성인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인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진로교육법」(현)	「진로교육법」 개정(안)
<p>제4장 진로교육 지원</p> <p>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이하 "국가진로교육센터"라 한다)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2. 진로정보망 구축·운영 3. 진로심리검사 개발 4. 진로상담 지원 5.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6.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7. 진로전담교사 교육 8.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평가 9.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10.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p>③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p>	<p>제5장 진로교육 지원</p> <p>제16조(국가진로교육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이하 "국가진로교육센터"라 한다)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2. 진로정보망 구축·운영 3. 진로심리검사 개발 4. 진로상담 지원 5.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6.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7. 진로전담교사 교육 8.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평가 9.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10.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관련 조사 및 연구 수행 11.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관련 연수 개발 및 지원 12.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진로교육법」(현)	「진로교육법」 개정(안)
<p>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의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제17조(지역진로교육협의회)</p> <p>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p>	<p>③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지역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관련 연수 개발·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의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제18조(지역진로교육협의회) (내용 동일)</p> <p>제19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과 국민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p>

「진로교육법」(현)	「진로교육법」 개정(안)
<p>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p> <p>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국민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p> <p>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p> <p>제21조(보호자 등의 참여)</p> <p>제22조(진로교육 콘텐츠)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진로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p> <p>② 교육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청, 교육관련 연구소 등이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p> <p>제23조(시·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p>	<p>제21조(협력 체계 구축 등) (내용 동일)</p> <p>제22조(보호자 등의 참여) (내용 동일)</p> <p>제23조(진로교육 콘텐츠)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진로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p> <p>② 교육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청, 대학, 교육관련 연구소 등이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p> <p>제24조(시·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내용 동일)</p>
<p>2) 「평생교육법」 개정(안)</p> <p>현행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교</p>	

육활동의 하나로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을 추가하여, 성인 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평생교육 인프라를 활용하기 용이하며 성인 진로교육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다.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동 중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직업능력 및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으로 변경하여 제2조를 개정하며, 성인 진로교육의 내용을 담은 조항으로 제41조를 추가한다.

「평생교육법」 (현)	「평생교육법」 개정(안)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좌동)</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p> <p>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p> <p>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및 성인 진로 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p> <p>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p>

「평생교육법」 (현)	「평생교육법」 개정(안)
<p>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p> <p>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p> <p>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 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p>	<p>시설·법인 또는 단체</p> <p>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p> <p>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p> <p>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 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p> <p>4. “직업능력 및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이하 “성인 진로교육”이라 한다)은 성인들이 진로를 인식, 탐색, 준비, 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 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 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p>
<p>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p> <p>제4조(평생교육의 이념)</p> <p>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p> <p>제6조(교육과정 등)</p> <p>제7조(공공시설의 이용)</p>	<p>(좌동)</p>

「평생교육법」 (현)	「평생교육법」 개정(안)
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제1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제15조(평생학습도시)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17조(지도 및 지원)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좌동)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19조의 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19조의 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제20조의 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제21조의 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평생교육법」 (현)	「평생교육법」 개정(안)
제21조의 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제22조(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제23조(학습제작)	
제4장 평생교육사 제24조(평생교육사) 제24조의 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제25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제27조(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좌등)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제29조의 2(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4조(준용 규정)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8조(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좌등)

「평생교육법」 (현)	「평생교육법」 개정(안)
제38조의 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 등) 제38조의 3(신고 등의 처리절차)	
제6장 문해교육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제39조의 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제4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40조의 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좌동)
	제7장 성인 진로교육 (신설) 제41조(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① 본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진로교육법」 제15조와 제16조에 따른 진로교육기관은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인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인정 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	제8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인정 제42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 (내용 동일)
제8장 보칙	제9장 보칙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주로 취·창업 지원의 일부로서 추진되어 온 성인 진로교육의 한계를 지적하고, 성인기의 진로교육과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반이 될 법령 개정안의 마련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성인 진로교육의 개념 및 영역을 탐구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련 정책 사업과 현장의 성인 진로교육 관련 요구를 분석하였으며, 성인 진로교육의 근간이 될 법령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성인 진로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 확보 및 진로교육 수혜자를 전체 ‘국민’으로 확대
- 성인 진로교육 추진을 위한 성취 및 목표체계 수립·개정의 필요성 제시
- 성인 진로교육 실천을 위해 대상에 적절한 진로교육 관련 용어 사용의 필요성 제기
- 「진로교육법」과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한 성인 진로교육 법령(안) 제시 및 각 법령의 장점과 한계 제시
- 성인 진로교육 법령 시행 이후 수요자 중심 운영체계를 위한 방안 제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3절 연구 방법 및 절차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존의 진로교육은 학생, 특히 초·중등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성인들에게는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 구조와 직무의 형태가 바뀌고, 일부 직업은 사라지는 등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김은석 외, 2017). 평균 수명의 증가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및 노동시장의 변화(<표 1-1> 참조)로 입직 이후에도 새로운 진로를 찾고 설계하는 등 성인 진로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표 1-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

주체 및 연구자	일자리 변화 전망
WEF(2006)	2020년까지 510만~710만 개의 일자리가 로봇,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
Frey & Osborne(2013)	미국 내 702개 직업 중 47%의 일자리가 10~20년 이내에 자동화될 확률이 0.7 이상으로 진단
김세움(2015)	우리나라 일자리 중 55~57%가 향후 수십 년 내에 컴퓨터로 대체될 확률이 0.7 이상으로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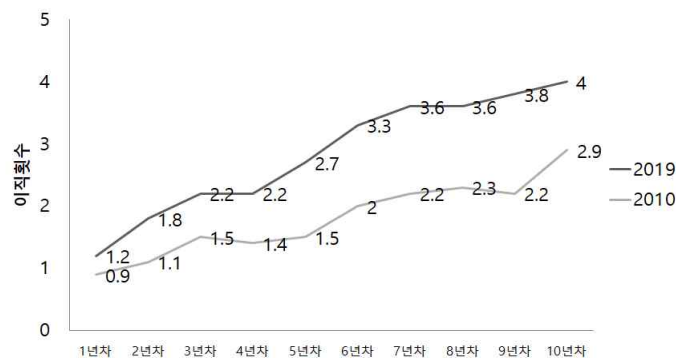
4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주체 및 연구자	일자리 변화 전망
GE(2016)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및 산업로봇 기술 등 4차 산업 관련 분야에서 20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전망. 65%의 일자리가 신생 직업이 될 것으로 전망.

재인용: 김은석·이영민·이효남·이만기·천영민·이윤선·서현주·조아름(2017). 생애 경력개발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연구 (pp. 15-17). 한국고용정보원.

과거의 조직/중심 커리어에서 벗어나 개인이 스스로의 커리어 선택, 기호에 책임을 가지는 프로틴 경력(protean career) (Hall, 2004; 김시진·김정원, 2010)과 개인이 무경계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역할을 가질 수 있다는 무경계 경력(boundaryless career)(Arthur, 1994)의 개념이 이미 오래전부터 소개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직장인 경력연차별 평균 이직횟수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직장생활 10년여 하는 동안 직장인들은 평균 4회 정도 회사를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효상, 2019). 동일조사를 진행한 2010년 10년차 직장인의 평균 이직횟수(2.9회)에 비해 약 1회 늘어난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이직기간과 횟수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그림 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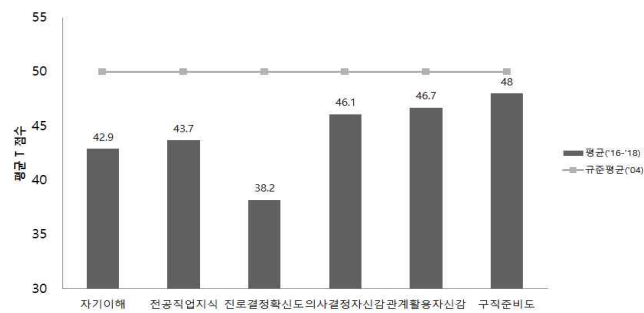
[그림 1-1] 직장인 연차별 이직횟수



출처: 이효상(2019). 10년차 직장인 이직횟수 '평균 4회'. 월간 리크루트(2019.5.27.) <http://www.hkreru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25>(검색일: 2020. 09. 15.).

또한 이재열(2019)이 2016~2018년 사이 커리어넷 진로개발준비도 검사를 실시한 성인 5,805명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4년 처음 검사가 개발되었을 때의 기준집단에 비해 분석 대상 성인들의 전반적인 진로개발준비도가 낮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2] 참조). 즉, 성인들 역시 하나의 분야에서 진로를 찾은 이후에도 향후 새로운 진로를 탐구하고 개발하기 위한 지속적인 자기개발이 필요하며, 그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서도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1-2] 성인의 진로개발준비도 검사 평균 T점수(2016~2018)



재구성: 이재열(2019).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 특성과 진로개발 관계 분석(p. 19).

이러한 변화와 필요에 대응하여 교육부는 2018년 11월에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대학생과 생애전환기를 맞은 성인에게도 진로개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사회관계장관회의, 2018. 11. 16.).

성인의 진로교육과 진로지도는 대학의 취업서비스센터,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교육부의 평생학습센터 등에서 취업/재취업 지원의 일부로서 주로 시행, 제공되어 왔다. 성인

6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교육이나 상담에는 ‘진로’보다는 ‘취업’, ‘경력’이라는 용어가 흔히 활용되어 왔으며, 「진로교육법」에서 명시하는 진로교육의 정의 역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언급되어 있을 뿐 성인이 제외되어 있다.

직접적인 취업지원 차원의 서비스를 넘어서 생애전환기의 진로 재설계와 계획 수립을 위해 성인의 진로교육은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중심으로 구성된 진로교육을 성인까지 확대, 발전시키고 기존의 법령 내에서 지원되지 못했던 성인 진로개발 영역을 탐색하여 성인 진로교육의 기반이 될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제2절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성인 진로교육의 개념 및 영역을 탐구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련 정책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장의 성인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고, 성인 진로교육의 근간이 될 법령 개정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성인 진로교육 관련 이론을 검토하고, 성인의 평생학습 및 관련 법령에서 활용되는 진로 및 진로교육 관련 개념과 대상 등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성인 진로교육의 개념과 내용, 목표, 방법을 수립하였다.

3장에서는 성인 진로교육의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 수요자 관점의 수요 및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요구에 대한 쟁점을 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책 현황 및 현장의 요구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진로교육법」과 「평생교육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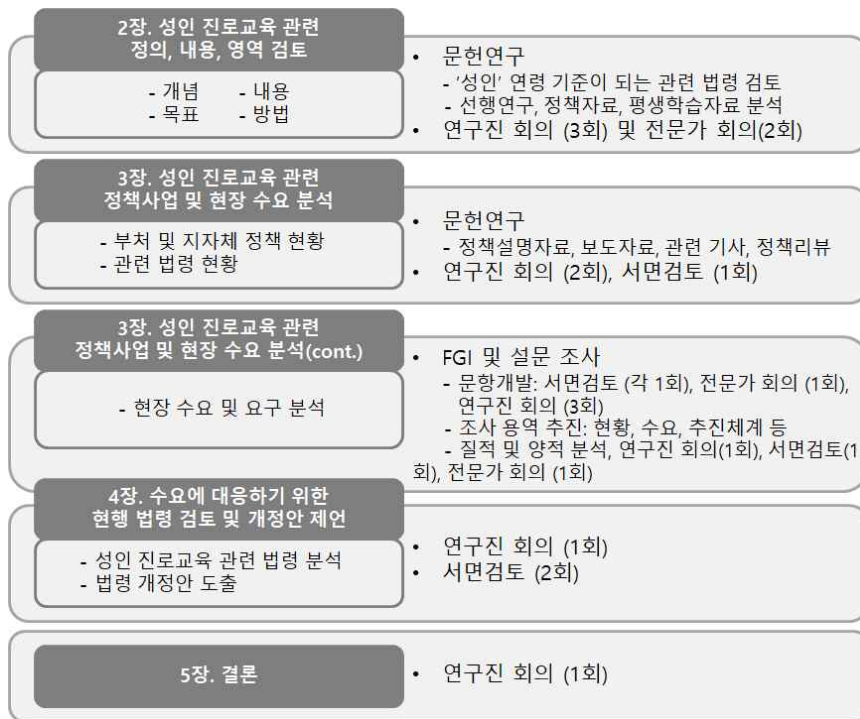
중심으로 법령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와 분석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3절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를 추진한 방법 및 절차는 [그림 1-3]과 같다.

[그림 1-3] 연구 추진 방법 및 절차



8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연구진 회의는 다음과 같은 일정과 내용으로 추진되었다(<표 1-2> 참조).

<표 1-2> 연구진 회의 일정 및 내용

일시	내용
2020. 2.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추진 방향 논의, 계획서 검토
2020. 3.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진로교육' 등의 개념 논의 • 현장 전문가 FGI 문항 기초 틀 논의
2020. 3.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이론적 용어, 국내외 진로교육 목표체계, 관련 이론 등 고찰 • 부처별 관련 정책 현황 검토 • 현행 관련 법령 검토
2020. 4.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진로교육 개념, 성인기 특징 및 진로 관련 이슈, 성인 진로교육의 범위 및 영역 검토 • 성인 진로교육 관련 새로운 핵심 개념 검토 • 현장 전문가 FGI 및 서비스 이용자 설문조사 문항 검토
2020. 5.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진로교육의 목표체계, 서비스 논의 • 「진로교육법」과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통한 성인 「진로교육법」 가능성 검토
2020. 5.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GI 및 설문문항 확정 • 중간 심의 준비 논의
2020. 6.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진로교육 개념 최종 정리 • 관련 정책 사업 분석
2020. 7.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GI 및 설문 분석 결과 논의 • 부처 및 지자체 정책 현황 분석 결과 논의
2020. 8.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진로교육 법령 초안 마련(「진로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개정), 결론 논의

전문가 협의회 및 서면검토는 <표 1-3>과 같은 일정과 내용으로 추진되었다.

<표 1-3> 전문가 협의회 및 서면검토 일정 및 내용¹⁾

일시	내용
2020. 3.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진로교육 관련 개념 논의 •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등의 성인 취업지원 정책 현황 검토
2020. 3. 24~31. (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GI 문항 검토
2020. 4. 14~21. (서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문항 검토
2020. 4. 24. (화상회의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의 정의 및 관련 이론 검토 •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 검토 • 성인 진로교육 개념, 내용, 방법, 목표 구분 논의 • 설문문항의 내용 구분 논의
2020. 6. 15. (화상회의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진로교육 관련 개념 정의 • 설문조사와 FGI 추진 현황 논의
2020. 7. 10~17. (서면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 및 지자체 정책 현황 분석
2020. 8. 31. (서면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개정안 검토
2020. 9. 11. (전문가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와 FGI 분석 결과 검토
2020. 9. 14. (서면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개정안 문구 검토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FGI는 성인 대상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 등을 제공하는 현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총 3회 진행되었으며, <표 1-4>와 같은 일정으로 추진되었다. FGI의 추진은 면대면이 어려울 경우, 화상회의 또는 개별 면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FGI 질문을 통해 살펴

1) 2020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면검토 및 화상 회의를 최대한 활용함.

10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본 주요 내용은 각 센터가 소속된 지역의 특성 등에 대한 현황, 센터에서 제공하는 주요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의 현황, 현장에서 인식하는 성인 진로교육의 요구 및 필요성,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다.

〈표 1-4〉 FGI 추진 일정

일시	참석자
2020. 5. 2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실무자 4인
2020. 5. 20	평생교육센터 실무자 4인
2020. 6. 11	고용센터 실무자 2인
2020. 6. 12	고용센터 실무자 1인
2020. 6. 17	고용센터 실무자 1인

또한 설문조사는 서비스 이용자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5월 4째 주부터 7월 첫째 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샘플링은 할당표집(quota sampling) 방식으로 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성인 150명과 비이용자 50명, 남녀 각각 100명씩 할당하여 추진하였다. 설문 조사에서는 공공 교육시설의 이용 경험과 만족도, 진로 재설계의 필요성 및 준비 여부, 공공 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로 서비스 이용 경험과 접근성, 응답자 특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2장

성인 진로교육의 개념

제1절 성인 진로교육 용어 고찰

제2절 성인 진로교육의 내용 및 유형 탐색

제3절 성인기 주요 특징 및 진로 관련 이슈

제4절 시사점

제2장 ■ 성인 진로교육의 개념

제1절 성인 진로교육 용어 고찰

본 절에서는 법, 정책 및 이론상의 선행연구 검토를 기반으로 ‘성인 진로 교육’이라는 용어의 고찰을 통해 성인 진로교육 개념에 대한 함의를 탐색하였다.

1. 성인의 정의

성인(成人)이라는 단어의 한자 구성을 살펴보면 ‘자란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인을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으로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야별 목적에 따라 상이하다.

가. 법령 및 통계 조사상 구분

국내 법령에 따른 성인의 구분은 <표 2-1>과 같이 모두 연령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형법」을 제외한 대다수의 법령은 19세 이상을 성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법」, 「소년법」, 「청소년보호법」, 「청년기본법」은 19세 이상을

14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성인으로 보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은 18세 이상, 「형법」은 가장 낮은 연령인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표 2-1〉 국내 법령상 성인의 구분

법령	성인의 기준	주요 특징
「민법」 (제2장 제4조) ²⁾	19세 이상	대다수의 법령은 18~19세 이상의 연령을 성인으로 판단함.
「형법」 (제2장 제9조) ³⁾	14세 이상	
「소년법」 (제1장 제2조) ⁴⁾	19세 이상	
「청소년보호법」 (제1장 제2조) ⁵⁾	만 19세 이상	
「공직선거법」 (제2장 제15조) ⁶⁾	18세 이상	
「청년기본법」 (제1장 제3조) ⁷⁾	19세 이상 34세 이하(청년)	

출처: 각 법령 해당 조항의 내용을 연구자가 표로 구성함.

주요 교육통계상 성인의 범위 설정은 <표 2-2>와 같이 조사 주체의 연구 목적이나 타 조사와의 중복성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 등에 따라 구분이 매우 상이하다. OECD(2020)⁸⁾의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는 만 16세에서 65세까지를 성인역량 조사 대상으로 설정한다. Eurostat(2020)⁹⁾의 성인교육조사

2) 국가법령정보센터(2020b). 「민법」 제2장 제1절 제4조, 2017. 10. 31. 개정. URL: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8475&efYd=20180201#j4:0>(검색일: 2020. 02. 25.).

3) 국가법령정보센터(2020f). 「형법」 제2장 제1절 제9조, 2018. 12. 18. 개정. URL: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820&efYd=20181218#j9:0>(검색일: 2020. 02. 25.).

4) 국가법령정보센터(2020c). 「소년법」 제1장 제2조, 2018. 9. 18. 개정. URL: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487&efYd=20180918#j2:0>(검색일: 2020. 03. 04.).

5) 국가법령정보센터(2020e). 「청소년보호법」 제1장 제2조, 2020. 3. 24. 개정. URL: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5865&efYd=20200324#0000>(검색일: 2020. 05. 19.).

6) 국가법령정보센터(2020a). 「공직선거법」 제2장 제15조, 2020. 3. 25. 개정. URL: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6091&efYd=20200325#0000>(검색일: 2020. 05. 19.).

7) 국가법령정보센터(2020d). 「청년기본법」 제1조 제3조, 2020. 2. 4. 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3951&efYd=20200805#0000>(검색일: 2020. 09. 01.).

8) OECD(2020). About PIAAC. URL: <http://www.oecd.org/skills/piaac/about/#d.en.481111>(검색일: 2020. 02. 25.).

9) Eurostat(2020). Adult Education Survey(AES). URL: <https://ec.europa.eu/eurostat/web/microdata>

(AES)는 25세에서 64세까지를 성인 교육의 조사 대상으로 한다. 국내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 10)¹⁰⁾의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연구는 조사 대상 연령을 만 26세에서 79세까지로 설정하고 있다.

〈표 2-2〉 통계 조사상 성인의 정의

교육통계	성인의 범위	주요 특징
국제성인역량조사 (PIAAC)(OECD, 2020)	만 16~65세	조사 주체의 연구 목적이 나 함께 병행되는 타 조사와의 중복성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 등에 따라 구분이 매우 상이함.
성인교육조사(AES)(Eurostat, 2020)	25~64세	
교육통계서비스-2018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8: 10)	만 26~79세	

출처: 각 선행연구의 내용을 연구자가 표로 구성함.

나. 교육 대상·학습자로서의 성인

교육학에서도 성인을 교육 대상 및 학습자로서 주목하는 분야는 평생교육학, 성인교육학, 진로교육학 등이 있으며, <표 2-3>과 같이 성인을 정의하고 있다.

UNESCO 용어사전에 의하면 성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기술 또는 전문적인 자격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능력을 발전시키고,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지식을 확장시키거나 또는 새로운 분야에서의 지식, 기능, 역량을 습득하는 사람”(UNESCO, 2020a)¹¹⁾이다. 또한 법적 연령이 성인에 도달하지 않았

/adult-education-survey(검색일: 2020. 05. 19.).

10)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 교육통계서비스-2018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URL: https://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18&menuSeq=3653&publSeq=24&menuCd=79797&itemCode=02&menuId=0_3&language=(검색일: 2020. 05. 19.).

11) UNESCO(2020a). Adult education. URL: <http://uis.unesco.org/en/glossary-term/adult-education> (검색일: 2020. 05. 19.).

16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더라도 “성인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성인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UNESCO, 2016: 7)¹²⁾.

성인 교육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노울즈(Knowles)는 “성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및 자신을 성인으로 인식하는 사람 모두가 성인에 포함”(Knowles, 1980; 조성연·홍지영, 2010: 1101 재인용)되며, “생활 연령, 발달 정도, 사회적 역할수행능력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다”(Knowles, 1980; 권대봉, 2006: 20 재인용)고 하였다. 무어(Moore)는 성인을 “졸업 등으로 정규 학교 체제 이후 직업, 상위 교육 진학 등을 통해 자신의 흥미를 추구하는 사람”(Moore, 1973: 3)으로 정의하였다. 크란츠(Krajnc, A., 1989: 19)는 나이에 의한 구분이나 성숙한 성인이라는 특징에 근거한 심리발달적인 구분이 모두 성인 교육 측면에서는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성숙한 개인일수록 성인 교육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는 권대봉은 성인을 일반적으로 “자기 관리를 통해 자기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만 18세 이상의 사람”(권대봉, 2006: 20)으로 정의하였다. 진미석·윤형한은 성인 진로 관련 연구에서 성인을 “정규 학교교육 단계를 일단 떠난, 즉 대학졸업 혹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노동 시장에 진입하였거나 현재 진입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진입할 의도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근로자 집단”(진미석·윤형한, 2003: 5)으로 한정하였다. 즉, 성인의 기준으로서 생물학적 의미의 적정 연령 여부와 함께 사회적 역할과 삶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함께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권두승·조아미, 2006; 조성연·홍지영, 2010: 1101 재인용).

12) UNESCO(2016). Recommendation o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2015. URL: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45179>(검색일: 2020. 05. 28.).

〈표 2-3〉 교육 대상·학습자로서 성인의 정의

주체 및 연구자	성인의 개념	주요 특징
UNESC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기술 또는 전문적인 자격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능력을 발전시키고,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지식을 확장시키거나 또는 새로운 분야에서의 지식, 기능, 역량을 습득하는 사람(UNESCO, 2016: 7)¹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에 관계없이 사회적 역할, 책임감, 의무를 충족하는 사람 • 흥미를 찾고,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사람 • ‘정규 학교교육 이수 여부’로 성인을 구분하는 학자도 있음.
Know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및 자신을 성인으로 인식하는 사람 모두(Knowles, 1980; 조성연·홍지영, 2010: 1101 재인용) • 생활 연령, 발달 정도, 사회적 역할수행 능력에 따라 달리 규정(Knowles, 1980; 권대봉, 2006: 20 재인용) 	
Moo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 등으로 정규 학교 체제 이후 직업, 상위 교육 진학 등을 통해 자신의 흥미를 추구하는 사람(Moore, 1973: 3) 	
권대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관리를 통해 자기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만 18세 이상의 사람(권대봉, 2006: 20) 	
진미석·윤형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 학교교육 단계를 떠난 사람, 즉 대학졸업 혹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하였거나 현재 진입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진입할 의도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근로자 집단(진미석·윤형한, 2003: 5) 	

출처: 각 선행연구에서의 해당 정의들을 연구자가 인용하여 표로 구성함.

교육학적 측면에서는 법령이나 정책상의 외적, 생물학적 연령보다는 사회적 역할, 책임감, 의무를 다하고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 등과 같이 성인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내재적 소양을 지녔는지 여부를 더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이수 여부 측면에서 보자면 정규 학교교육 체계에 준하는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도 보편적인 구분 방식이다.

13) UNESCO(2016). Recommendation o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2015. URL: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45179>(검색일: 2020. 05. 28.).

2. 진로교육 및 연관 용어의 정의

‘성인 진로교육’의 핵심 용어인 ‘진로교육(career education)’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으며, 진로교육과 자주 혼용되어 사용하는 주요 용어들이 있어서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예: 진로지도, 진로개발 등).

가. 진로교육(career education)

‘진로교육’에 관한 정의는 <표 2-4>와 같이 교육 정책 및 체제 운영 주체, 정부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공통적인 함의에 따르면, 진로교육은 ‘계획된 교육과정 기반’ 학습으로서 진로 관리 및 계획에 필요한 기술·역량 습득, 진로(학습, 일) 선택, 진로정보 활용 능력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해당 용어는 교육과정이나 모델이 기반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 주로 교육 정책 수행자 및 공급자의 입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진로교육의 대상은 특별히 특정하지 않거나 또는 성인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귀결된다. 다만, 교육 관련 부처에서 사용하는 경우 ‘학생’이라는 용어로 지칭하는 경향이 있다.

<표 2-4> 진로교육(career education)의 정의

주체 및 연구자	정의	주요 특징
OEC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개인 및 그룹이 진로 개발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도록 돕는 데 주의를 기울이는 것(Watts, 200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되고 조직화 되어 준비된 교육과정 기반 학습 활동
유럽평생지도정책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들이 자신의 진로와 삶의 경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 프로그램 및 활동, 진로 정보와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교육 정책 수행자 및 공급자

주체 및 연구자	정의	주요 특징
	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포함 (ELGPN, 2020b) ¹⁴⁾	<p>의 입장에서 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거나 또는 한정하지 않거나 성인까지 포함하는 두 가지 분류
미국직업 및 기술교육향상법안	• (진로에 관한) 조직화된 교육 활동(U. 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2006: 4) ¹⁵⁾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 준비된 진로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진로교육에 관한 노력에 대해 주 차원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진로교육의 발전과 확장에 대한 국가 차원의 리더십에 대한 전략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California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1974: iii)	
호주 교육부	• 교육 및 훈련 환경에서 계획된 학습 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 기술 및 태도를 개발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과 일 선택에 관해서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고 직업 생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Australian Government, 2020) ¹⁶⁾	
Moore	• 청소년과 성인이 자신의 관심과 능력에 따라 평생학습과 생산적이고 보람 있는 일을 위해 스스로 필요한 지식, 기술 습득을 계획할 수 있게 하는 조직적이고 종합적인 활동 (Moore, 1973: 4)	
장석민	• 현명한 진로선택과 진로발달을 통하여 생산적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행복한 개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장을 돕는 교육의 과정(장석민, 2014: 29)	
이지연·김재희·이서정	• 개인이 삶에 있어 필요한 생애역할, 평생학습, 일, 여가 등에 참여하는 것을 배우고 준비하는 학습경험의 총체, 사전에 계획되고 수립된 학교 교육과정에 의해 운영(이지연·김재희·이서정, 2017: 18-19)	

출처: 각 선행연구에서의 해당 정의들을 연구자가 인용하여 표로 구성함.

14) ELGPN(2020b). Career education. URL: <http://www.elgpn.eu/elgpnadb/search/metadata/view/189>(검색일: 2020. 05. 19.).

15) U. 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2006). An Act To amend the Carl D. Perkins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Act of 1998 to improve the Act. URL: <https://www.govinfo.gov/content/pkg/BILLS-109s250enr/pdf/BILLS-109s250enr.pdf>(검색일: 2020. 05. 19.).

나. 진로지도(career guidance), 평생(생애)지도(lifelong guidance)

‘진로교육’과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는 <표 2-5>와 같이 ‘진로지도(career guidance)’가 있으며 유사한 개념으로 ‘평생(생애)지도(lifelong guidance)’가 있다.

‘진로지도/평생(생애)지도’는 전 생애 시기에 놓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총체적인 도움 및 지원으로서 생애진로 관점을 강조하며 대상 및 내용이 포괄적이다. 진로상담, 진로정보, 역량 평가, 멘토링 등이 모두 진로지도 활동의 일환이며, 주체에 따라서는 진로교육도 진로지도의 하위 개념으로 본다. CEDEFOP(2020)¹⁷⁾는 평생(생애)지도의 목적 자체가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하며, ELGPN(2020c)¹⁸⁾은 이 두 가지 단어는 동일한 개념이라고 정리한 바 있다. 이에 진로지도와 평생(생애)지도는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16) Australian Government(2020). School to work transitions. URL: <https://www.education.gov.au/school-work-transitions>(검색일: 2020. 05. 19.).

17) CEDEFOP(2020). Lifelong Guidance. URL: <https://www.cedefop.europa.eu/en/events-and-projects/projects/lifelong-guidance>(검색일: 2020. 05. 22.).

18) ELGPN(2020c). Career Guidance. URL: <http://www.elgpn.eu/elgpndb/search/metadata/view/190>(검색일: 2020. 05. 22.).

〈표 2-5〉 진로지도/평생(생애)지도의 정의

구분	주체 및 연구자	정의	주요 특징
진로지도 (career guidance)	OEC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연령과 전 생애 시기에 놓인 사람들의 교육, 훈련 및 직업에 대한 선택을 하고 진로를 관리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 또는 진로지도 서비스 활동의 일환, 진로교육, 진로상담, 진로정보를 진로지도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OECD, 2004: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을 포함한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주체에 의한 서비스 및 지원 전 생애적 관점을 강조하며 대상 및 내용이 포괄적임.
	유럽연합 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연령이나 삶의 시점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역량, 능력, 흥미를 명확히 하여 의미 있는 교육, 훈련 및 직업에서의 결정을 하도록 돕는 다양한 활동이며, 이러한 역량을 배우고 사용하는 학습, 업무 및 기타 환경에서 개인의 삶의 경로를 관리하는 지속적인 과정 진로지도의 범위는 정보 전달, 진로상담, 역량 평가, 진로관리 스킬, 진로 결정과 연관된 다양한 개별 또는 집합 활동을 포함(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8: 2) 	
	싱가포르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을 포함하여 이들로 하여금 교육 및 진로 선택에 필요한 지식, 기술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총체적이고 경험적 노력(Government of Singapore, 2020)¹⁹⁾ 	
	이지연·김재희·이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진로지도(lifelong guidance)’ 개념 강조, 모든 연령과 전 생애주기에 서 개인의 진로활동을 도와주는 것 개인의 역량·흥미를 확인하고, 의미 있는 교육·훈련·직업적 결정을 내리며, 학습·일·개인의 사적 맥락에서 개인의 생애경로를 관리하도록 지원 조언, 상담, 역량평가, 멘토링, 교수·학습, 진로의사결정, 진로관리기술 등을 포함(이지연·김재희·이서정, 2017: 18-19) 	
	진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에 대한 인식 제고, 자아탐색과 	

22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구분	주체 및 연구자	정의	주요 특징
	윤형한	직업 교육기회 정보 제공, 진로선택과 준비라는 일련의 교육적 과정(진미석·윤형한, 2003: 8)	
평생(생애)지도 (lifelong guidance)	유럽직업훈련 개발센터	• 평생(생애)지도는 모든 연령, 모든 진로 단계에 놓인 사람들의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CEDEFOP, 2020). ²⁰⁾	
	유럽평생지도 정책네트워크	• 유럽연합이사회(2008)의 정의를 따르며, '진로지도'와 '평생(생애)지도'의 정의는 동일함(ELGPN, 2020c). ²¹⁾	

출처: 각 선행연구에서의 해당 정의들을 연구자가 인용하여 표로 구성함.

다. 진로개발, 경력개발(career development)

진로개발과 경력개발은 <표 2-6>과 같이 영어로는 동일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진로개발'은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경력개발'은 성인을 대상으로 대상에 따라 달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구분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 '경력개발'을 전 생애 관점으로 확장하여 보기도 한다. 양쪽 모두 스스로 평생에 걸쳐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역량 자체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지닌다.

19) Government of Singapore(2020). Education and Career Guidance(ECG). URL: <https://www.skillsfuture.sg/Programmes-For-You/Initiatives/Education-and-Career-Guidance>(검색일: 2020. 05. 19.).

20) CEDEFOP(2020). Lifelong Guidance. URL: <https://www.cedefop.europa.eu/en/events-and-projects/projects/lifelong-guidance>(검색일: 2020. 05. 22.).

21) ELGPN(2020c). Career Guidance. URL: <http://www.elgpn.eu/elgpndb/search/metadata/view/190>(검색일: 2020. 05. 22.).

〈표 2-6〉 진로개발/경력개발의 정의

구분	주체 및 연구자	정의	주요 특징
진로개발 (career development)	유럽평생지도 정책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평생에 걸쳐 미래를 향해 계속 발전해 가기 위해 학습, 업무, 여가 및 전환을 관리하는 과정(lifelong process) (ELGPN, 2020a)²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주도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평생에 걸쳐 개발하고 관리하는 역량 자체 •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를 통해 교육하고 개발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
	한국진로교육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한국진로교육학회, 2017: 49) 	
	장석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직업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적성 및 능력, 가치관 및 태도 등을 포함하는 자아 개념 및 자아특성을 발전시켜가는 과정(장석민, 2014: 36-37) 	
	이지연·김재희·이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생 전반에 걸쳐 추구하는 일의 총체가 개인의 생애목표와 균형을 이루어 자신과 외부환경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 • 한 개인이 삶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다양한 삶의 맥락 속에서 자기주도적으로 경험을 선택하고, 계획하며, 준비하는 활동(이지연, 2009; 이지연·김재희·이서정, 2017: 17 재인용) 	
경력개발 (career development)	진미석·윤형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기업체 인사관리의 일환으로 조직 내에서의 경력개발, 즉 승진을 위한 직무연수나 지원 등(진미석·윤형한, 2003: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중에서도 직업에 종사한 '경력', '경험' 보유 여부
	김은석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생 대상은 진로개발 및 진로 발달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조직 생활과 관련하여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다루는 연구에서는 경력개발이라는 용어를 사용(김은석 외, 2017: 26-27) 	

출처: 각 선행연구에서의 해당 정의들을 연구자가 인용하여 표로 구성함.

제2절 성인 진로교육의 내용 및 유형 탐색

본 절에서는 성인 진로교육이 다루어야 할 내용과 유형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내에서 인식되고 있는 일반적인 진로교육의 내용 및 유형 현황과, 실제로 국가 차원에서 성인 진로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실행해 온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1. 국가 수준의 성인 진로교육 내용

가. 국내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현황

국내에서는 <표 2-7>과 같이 「2015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이 수립되어 국내의 진로교육 목표와 내용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대영역은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세계 이해, 진로탐색, 진로디자인과 준비, 중영역은 자아이해,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역량 개발, 직업세계 이해, 직업의식 형성, 교육기회 탐색, 직업정보 탐색, 진로 의사결정능력 개발, 진로설계 등 8개 영역이다. 각 영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3단계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다(교육부, 2016)²³⁾.

22) ELGPN(2020a). Career development. URL: <http://www.elgpn.eu/elgpndb/search/metadata/view/188>(검색일: 2020. 05. 22.).

23) 교육부(2016). 2015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URL: http://www.career.go.kr/cnet/front/commbbs/courseMenu/commBbsView.do?BBS_SEQ=131516(검색일: 2020. 05. 25.)

<표 2-7> 국내 학교 진로교육의 세부 목표 및 성취기준(2015 개정)

구분	진로교육 영역	
	대영역	중영역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이해 •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역량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직업세계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세계 이해 • 직업의식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회 탐색 • 직업정보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디자인과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의사결정능력 개발 • 진로설계
대상	초·중·고(총 3단계)	

출처: 교육부(2016). 2015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URL: http://www.career.go.kr/cnet/front/commbbs/courseMenu/commBbsView.do?BBS_SEQ=131516(검색일: 2020. 05. 25.)의 내용을 연구자가 참고하여 표로 작성함.

이와 같이 국내의 경우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영역과 활동은 매우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틀에 의해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정책 수행과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초·중·고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세부 목표와 성취기준만 개발되어 있어 성인 진로교육을 아우르기에는 제한이 있다.

이영대·임언·이지연·최동선·김나라(2004)는 <표 2-8>과 같이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 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틀로서 성인을 포함한 전 생애 진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 체계 수립 방안과 내용을 제안한 바 있다. 이영대·임언·이지연·최동선·김나라(2004)는 생애단계별 진로교육 내용의 차이를 1~5 단계로 설정하였지만 동일한 학령 단계에 속하더라도 개인에 따른 진로 성숙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다. 「2015 학교 진로교육 세부 목표 및 성취기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본 연구의 해당 목표체계는 학령기 진로

26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계획 수립 이후의 실천, 효과적인 구직·직업유지·전환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표 2-8〉 생애단계별 진로교육 목표

구분	진로교육 영역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이해 및 긍정적인 자아개념 •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 평생학습의 중요성 인식 및 참여 • 진로정보의 탐색, 해석, 평가, 활용 • 일, 사회, 경제 관계 이해 • 긍정적인 직업가치와 태도 •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진로계획의 수립 • 진로계획의 실천 • 효과적인 구직·직업유지·전환 				
대상	생애 1단계 (대략 유치원·초등학생 시기에 해당)	생애 2단계 (대략 중학생 시기에 해당)	생애 3단계 (대략 고등학생 시기에 해당)	생애 4단계 (대략 취업을 하고자 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시기에 해당)	생애 5단계 (성인들이 직업생활을 하는 데 있어 초창기부터 은퇴기까지)

출처: 이영대·임언·이지연·최동선·김나라(2004: 53-65)의 내용을 요약하여 표로 구성함.

나. 해외의 성인 진로교육 영역 수립 사례: 블루프린트(blueprint) 기반

해외의 진로교육 관련 사례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어진 바 있으며, 우리나라의 「진로교육법」 및 학교 진로교육 체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가 된 바 있다(이영대·임언·이지연·최동선·김나라, 2004; 조대연·현영섭, 2008). 본 연구에서는 특히 블루프린트(blueprint) 사례를 들어 성인 진로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는 국민의 진로개발에 관한 범위와 영역을 수립하고 진로교육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블루프린트라는 공통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블루프린트는 미국에서 1989년 처음 개발된 후, 진로 정책에 대

한 관점을 '전 생애' 관점으로 전환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고,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블루프린트는 학습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며, 진로가 단지 직업을 선택하는 데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이내믹한 노동시장 변화에서 각 개인이 스스로의 진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 생애단계를 거치면서 각 과정마다 달성해야 할 진로과업이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Hooley, T., Watts, A. G., Sultana, R. G. & Neary, S., 2013: 1).

블루프린트는 학습 영역, 학습 모델, 학습 수준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약간씩 다른 용어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핵심 개념은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과 마찬가지로 각 영역별 목표와 성취기준이 대상별 수준에 따라 세부적, 단계적으로 제시된다. 본 절에서는 3개 국가의 모델 중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은 블루프린트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호주는 세 국가 중 가장 최근 개발되어 그간 변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1) 미국

미국은 국가진로개발협회(National Career Development Association: NCDA)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진로교육 표준 및 체계를 제시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왔다(조대연·현영섭, 2008: 51). 미국의 진로역량 개발 체계는 타 국가들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가 수립된 경우가 많다(이영대·임언·이지연·최동선·김나라, 2004).

국가진로개발 가이드라인(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elines:

28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NCDG)은 <표 2-9>와 같이 진로교육의 영역으로 개인차원의 사회적 발달, 교육적 성취 및 평생학습, 진로관리의 3가지 영역과 총 11개의 하위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진로교육의 대상은 학령기뿐만 아니라 학령기 전의 유아 단계부터 성인, 은퇴자까지의 전 연령을 아우른다(NCDA, 2020: 1-2)²⁴⁾.

<표 2-9> 미국의 국가 수준 진로역량 개발 체계

구분	진로교육 내용		
	개인차원의 사회적 발달 (personal social)	교육적 성취 및 평생학습 (educational achievement and lifelong learning)	진로관리 (career management)
영역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인 자기개념 수립 및 유지를 위한 자기이해 • 다양성을 존중하는 긍정적 대인관계 기술 개발 • 진로개발에 대한 성장과 변화의 통합 • 개인, 여가, 지역, 학습자, 가족 및 가족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균형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및 진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적 성취 및 성과 획득 • 다양하고 변화하는 경제에서 효과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평생학습 경험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목표에 맞는 경력 계획 수립 및 관리 • 진로 개발의 한 요소로서의 의사결정 과정 활용 • 진로 계획 및 관리를 위해 정확하고, 최신의, 치우침 없는 진로 정보 활용 • 고용(직업)을 얻고, 창출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학업, 직업 및 일반고용 기술을 습득 • 본인의 진로 계획에 변화하는 고용 동향, 사회적 요구 및 경제적 요건을 통합

24) NCDA(2020). 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elines(NCDG) Framework Understanding the NCDG Framework. https://www.ncda.org/aws/NCDA/asset_manager/get_file/3384/ncdguidelines2007.pdf(검색일: 2020. 05. 25.)

구분	진로교육 내용					
대상	전 생애(유아~은퇴자)					
	(a) 학령기 전	(b) K~6학년	(c) 7~9학년	(d) 10~12년	(e) 성인 (18~65세)	(f) 은퇴자

출처: NCDA(2020). 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elines(NCDG) Framework Understanding the NCDG Framework. https://www.ncda.org/aws/NCDA/asset_manager/get_file/3384/ncdguidelines2007.pdf(검색일: 2020. 05. 25.)와 NCDA(2011: 5-7). Career Development: A Policy Statement of the National Career Development Association. <https://www.ncda.org/aws/NCDA/pt/fli/4728/false>(검색일: 2020. 05. 25.)의 내용을 기반으로 표로 구성함.

미국의 사례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표 2-10>과 같이 진로교육 대상으로서의 성인을 (e) 성인(18~65세)과 (f) 은퇴자의 2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이를 더욱 세분화해서 진로개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e) 성인(18~65세) 그룹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 실직 상태, 소외계층, 진로 전환자 등이며, (f) 은퇴자 그룹은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목적을 경제적 이유로 구분하였다(NCDA, 2011: 5-7).

<표 2-10> 성인 진로교육 대상자 세부 구분

그룹	세부 구분
성인(18~65세)	(a) 직업 사회에 진입하고자 하는 학교를 막 졸업한 사람 (b) 실직 상태에 놓여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하는 사람 (c) 함께 일을 찾고자 하는 사람(부부 등) (d) 신체적, 정신적 장애, 인종, 문화적 배경, 성, 나이 등으로 차별을 받는 사람 (e) 경력 개발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
은퇴자	(a) 재정적 이유로 직업이 필요한 사람 (b) 여가 시간의 활용 등을 위해 직업이 필요한 사람

출처: NCDA(2011: 5-7). Career Development: A Policy Statement of the National Career Development Association. <https://www.ncda.org/aws/NCDA/pt/fli/4728/false>(검색일: 2020. 05. 25.)의 내용을 기반으로 표로 구성함.

30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2) 호주²⁵⁾

호주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진로를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으며, 성인 중에서는 일부 소수의 청년들만이 진로개발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내용도 학교에서 일터로의 전환 자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점점 더 광범위해지는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한 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호주는 학교에서 진로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교육하는 것처럼 성인에 대한 진로개발도 지원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특히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들이나 젊은 청년 모두가 변화하고 도전적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호주의 블루프린트(blueprint)는 이러한 맥락에서 진로개발 관련 실무자, 교육자, 연구자, 산업, 정부가 모두 협력하여 개발하였고, 기본적으로는 캐나다의 블루프린트를 많은 부분 벤치마킹하였다(MCEECDYA, 2010: 8).

호주 블루프린트의 핵심은 ‘진로관리역량(career management competencies)’이며 해당 역량들은 <표 2-11>과 같이 개인 관리, 학습 및 일 탐색, 진로수립의 3개 영역과 총 11개의 하위 역량들로 이루어져 있다(MCEECDYA, 2010: 15).

25) 해당 부분은 MCEECDYA(2010). The Australian Blueprint for Career Development, prepared by Miles Morgan Australia, Commonwealth of Australia, Canberra. URL: https://docs.education.gov.au/system/files/doc/other/australian_blueprint_for_career_development.pdf(검색일: 2020. 05. 25.)를 참고하여 요약 작성함.

〈표 2-11〉 호주의 국가 수준 진로역량 개발 체계

구분	진로교육 내용			
역량	A 영역: 개인 관리	B 영역: 학습 및 일 탐색		C 영역: 진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인 자아상 형성·유지 •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타인과 상호작용 • 생애에 걸쳐서 변화 및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목표를 위한 평생학습 참여 • 진로정보의 효과적인 탐색 및 활용 • 직업과 사회, 경제의 관계를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의 획득 및 유지 • 진로 발전에 대한 의사결정 • 삶과 일 역할의 균형 유지 • 삶과 일 역할 변화에 대한 이해 • 진로 수립 과정에 대한 이해 및 관리 	
대상	유치원~성인			
	단계 1: 유치원~초등학교	단계 2: 중학교	단계 3: 고등학교 수준에 준하는	단계 4: 성인

출처: MCEECDYA(2010). The Australian Blueprint for Career Development, prepared by Miles Morgan Australia, Commonwealth of Australia, Canberra. URL: https://docs.education.gov.au/system/files/doc/other/australian_blueprint_for_career_development.pdf(검색일: 2020. 05. 25.)의 p. 15와 p. 23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표로 구성함.

진로교육의 대상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미국 사례와는 달리 연령에 의한 구분은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학생이나 학습자를 연령에 의해 묶는 것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이러한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포함하며 총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성인의 진로개발과 관련하여 호주의 블루프린트에서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주안점은 삶에 있어서 학습이나 경험이 개인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진로발달 또한 반드시 일련의 순서대로 이루어지거나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

32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히 성인에 대한 진로개발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였을 때 학생과는 다르게 두드러지는 점이었다고 밝히고 있다(MCEECDYA, 2010: 23).

2. 진로교육·진로지도의 활동·서비스 유형

가. 국내 진로교육 활동 유형

우리나라의 「진로교육법」(국가법령정보센터, 2020g)²⁶⁾에서는 진로교육의 활동을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 총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이 국내 진로교육 활동 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적인 구분 틀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참고로 정철영 외(2019)는 「진로교육법」 상의 진로교육 활동 유형 6가지 구분에 따라 국내외 98편의 연구를 분석하여 진로교육 활동의 세부 유형을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시도를 하였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연구들은 주로 진로교육 활동의 세부 유형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진로수업은 진로 교과 및 교과통합 진로교육 수업을 포함한다. 진로체험은 직접체험활동, 간접체험활동을 포함한다. 진로상담은 진로집단상담을 뜻한다. 진로심리검사는 진로탐색검사, 종합진로직업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진로정보는 자신, 직업, 노동시장 및 사회 환경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취업지원은 취업교과목, 취업특강, 채용 박람회 및 설명회, 취업컨설팅을 포함한다(정철영 외, 2019: 339).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외 연구들의 경우 온라인 기반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다루고 있으며 생애설계, 멘토링과 같은 단어가 다양

26) 국가법령정보센터(2020g). 「진로교육법」 제1장 제2조, 2015. 06. 22. 제정. URL: <http://www.law.go.kr/lslInfoP.do?lsiSeq=172382&efYd=20151223#0000>(검색일: 2020. 05. 25.).

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나. 국제 교육 협력 기구 차원의 함의

진로지도 개념의 평생(생애) 관점을 강조하는 OECD, CEDEFOP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최소 3~6개 유형으로 진로지도 서비스를 구분하고 있으며, 되도록 범용적이고 포괄적 차원에서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각 국가별 상황과 기조에 따라 각기 달리 수립될 정책의 기본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진로지도의 서비스 대상이 특정 연령대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즉 전 시민이 대상임을 기본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OECD(Watts, 2009: 2)는 진로지도 서비스 활동을 크게 진로상담, 진로교육, 진로정보의 3가지로 구분한다. 진로상담은 일대일 또는 그룹으로 이루어지며 명확한 진로 문제를 다룬다. 진로교육은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그룹에 대한 진로개발 관리 역량을 키우는 데 관심을 둔다. 진로정보는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되며 교육과정, 진로경로, 직업 정보, 노동시장 정보를 다룬다(Watts, 2009: 2).

UNESCO는 진로지도가 일련의 연계된 활동으로서 대면, 전화, 온라인 형식으로 모두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활동 범위로는 진로정보, 맞춤형 지도, 상담, 역량(적성) 평가가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직업세계의 참여, 의사결정 및 진로관리 기술에 대한 학습과 연관된다(UNESCO, 2020b)²⁷⁾.

CEDEFOP는 평생(생애)지도의 유형으로 정보, 조언, 상담, 역량 평가, 멘토링 등의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CEDEFOP, 2020)²⁸⁾.

27) UNESCO(2020b). Investing in career guidance. URL: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1414>(검색일: 2020. 4. 1.).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진로지도의 범위를 정보 전달, 진로상담, 역량 평가, 진로관리 스킬, 진로 결정 등의 5가지 유형으로 제시한다(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8: 2).

미국의 국가진로개발 가이드라인(NCDG)은 공공 및 민간 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진로개발센터 운영을 기반으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특히 20~65세 해당)에 대해 다음 5가지 유형의 진로개발 활동을 지원해야 함을 명시한다. 즉 ① 행동 측정 및 지필 검사 형태 등의 다양한 평가 도구를 사용한 진로 평가(자기 평가 포함), ② 지역, 주, 국가 단위 정보를 포함하는 다양한 직업, 교육, 훈련에 관한 진로 정보, ③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하는 진로 상담 서비스, ④ 구직, 기술 탐색 및 유지, 고용가능 기술, 진로 결정 기술,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일 가치를 습득할 수 있도록 고안된 진로 훈련 시설, ⑤ 진로(직업) 배치 및 후속 서비스이다(NCDA, 2011: 5-6)²⁹⁾.

제3절 성인기 주요 특징 및 진로 관련 이슈

성인기의 진로개발은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책임이 강화된 상태라는 점과 노동시장에서의 활동을 한다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인해 아동·청소년기의 진로교육과는 차별화된다는 특성을 지닌다(한국진로교육학회, 2017: 465). 또한 성인교육학에서는 학습자로서의 성인은 학령기 학생과는 구분되는 고유 특징이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성인기의 주요 특징과 진로 관련 이슈에 대한 함의를 고찰하였다.

28) CEDEFOP(2020). Lifelong Guidance. URL: <https://www.cedefop.europa.eu/en/events-and-projects/projects/lifelong-guidance>(검색일: 2020. 4. 1.).

29) NCDA(2011: 5-6). Career Development: A Policy Statement of the National Career Development Association. URL: <https://www.ncda.org/aws/NCDA/pt/fli/4728/false>(검색일: 2020. 05. 25.)

1. 성인기의 생애단계 특징

성인 시기의 특징과 과업을 다루는 영역은 발달이론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발달이론은 사람이 성장해감에 따라 각 단계별로 어떻게 발달해가고 해당 시기의 과업이 무엇인지 구분하며, 그중 성인기를 포함한 이론들은 <표 2-12>와 같다.

에릭슨(Erikson, 1959)은 전 생애에 걸친 성격 발달을 강조한 8단계를 소개하였으며, 그중 6단계인 청년기(18~40세)를 성인기의 시작으로, 이후의 연령은 장년기(40~65세), 노년기(65세 이상)로 구분하였다(McLeod, 2013: 1에서 재인용)³⁰⁾. 해비거스트(Havighurst & Glasser, 1972) 또한 전 생애에 걸친 6단계 발달과업을 소개하였으며, 그중 4단계인 초기 성년기(19~30세)를 성인기의 시작으로 중년기(30~60세), 후 성숙기(60세 이상)로 구분하였다. 레빈슨(Levinson, 1986)은 성인기에 더 집중하여 성인기의 발달단계를 전(pre-) 성인기(0~22세), 초기 성년기(17~45세), 중년기(40~65세), 후(late-) 성인기(60세 이상)로 구분하였다.

이들 발달이론에서 대체적으로 성인기는 주로 17~18세의 연령에서부터 60세 이후에 해당하며, 이 시기에 정체성 확립, 직업 선택, 결혼, 출산 경험, 신체적 노화 진행을 공통적으로 겪는다고 보았다.

30) McLeod(2013). Erik Erikson. URL: https://docuri.com/download/erik-erikson-psycho-social-stages-simply-psychology_59c1e23ff581710b286a64c6.pdf(검색일: 2020. 05. 26.).

〈표 2-12〉 성인기 발달단계의 주요 특징

연구자 및 출처	내용	
에릭슨 (Erikson, 1959; McLeod, 2013 재인용) ³¹⁾	친밀성 대 고립감 (18~40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시기로서 다른 사람들과 더욱 친밀성을 가지게 됨. • 기존의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지는 데 탐색함. • 본 단계를 성공적으로 수립하는 경우 관계성에 있어서 편안함을 가지게 되며 헌신, 안전감, 관계에서의 친밀감을 가지게 됨. • 친밀감이나 헌신, 관계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고립, 외로움, 우울감을 겪을 수 있음. • 해당 시기의 주요 가치는 '사랑(love)'
	생산성 대 침체감 (중장년기, 40~6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와 경력을 수립하고, 관계를 정착시키며 가족을 형성함. • 자녀를 양육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직업이나 일터에서 생산적으로 일하며, 조직과 사회의 활동에 참여함. • 이러한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경우 침체감을 느낄 수 있음. • 해당 시기의 주요 가치는 '보호(care)'
	통합성 대 절망 (노년기, 65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년기에 해당하며, 생산성을 늦추게 되고 은퇴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탐색함. • 기존의 성취를 돌아보고 기존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느끼는 경우 자아의 통합성을 이루게 됨. • 자신의 삶이 생산적이지 않았거나, 과거에 대한 후회를 느끼거나, 삶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 삶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고 절망이나 희망이 결여된 상태에 빠질 수 있음. • 해당 시기의 주요 가치는 '지혜(wisdom)'
Levinson(1986)	성인 전기 (성인 초기, 17~4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22세: 초기 전환기로서, 청년기와 성년기의 중간 정도에 걸쳐짐. • 신체 능력은 20, 30대에 정점을 이루게 됨. 결혼, 가정생활, 직업적인 성취, 창의성 발현 등의 만족감을 경험하는 반면, 스트레스도 많아지는 시기임. 자녀 양육 및 직업, 경제에 대한 부담이 항상 존재함. 해당 시기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시니어(senior)'로서의 역할을 시작함.
	성인 중기 (중년기, 40~6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45세: 중기 전환기로서, 초기 성년기가 종료되고 중년기의 시작 단계임. • 신체적 능력은 낮아지지만 에너지나 열정, 만족감 등은 여전히 충분함. •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재정립, 인생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며, 부정적인 변화나 경험이 있는 경우 위기를 겪기도 함.

연구자 및 출처	내용	
	성인 후기 (노년기, 60세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65세: 후기 전환기로서, 중년과 성년 후기의 중간 단계임. • 신체적 노화와 죽음에 대해 인식하게 되며 조부모로서 자녀에게 지혜, 보살핌 등으로 기여하는 시기임. • 사회적 의무와 개인적 보상을 주는 활동을 하는 시기임.

출처: 연구자별 해당 출처에서 내용을 요약하여 연구자가 표로 작성함.

진로 관점의 성인기 발달단계 특징은 <표 2-13>과 같다. 대표적인 진로이론인 수퍼(Super)의 생애진로개발 이론은 생애를 주요 5단계 및 하위 단계로 설명하며, 진로는 각 단계마다 생애 역할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사람이 진로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이 자기개념이며, 자신에게 중요한 흥미와 가치를 알고, 명료한 자기 개념을 형성하여 진로선택을 하는 것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수퍼(Super)의 초기 이론은 생물학적 연령에 따라 성장기(~13세)→탐색기(15~24세)→확립기(25~44세)→유지기(45~64세)→쇠퇴기(65세~)의 5단계를 거치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다(An Official Pennsylvania Government, 2020: 11)³²⁾. 생애 초기 단계에서는 비슷하던 특징이 성인기에 들어서면서 개인차가 발생하고 직업기회의 변동, 다양한 생애역할 수행 과정에서 개인의 대응방식에 따라 다르게 발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수퍼(Super, 1980)는 진로가 생물학적 나이에 따른 고정된 단계가 아니라 전 생애주기적 관점을 바탕으로 유동적이며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 '진로발달

31) McLeod(2013). Erik Erikson. URL: https://docuri.com/download/erik-erikson-psycho-social-stages-simply-psychology_59c1e23ff581710b286a64c6.pdf(검색일: 2020. 05. 26.).

32) An Official Pennsylvania Government(2020). Overview of Career Development Theories. URL: <https://www.education.pa.gov/Documents/K-12/Career%20and%20Technical%20Education/CEWStandards/Resources/Pedagogy/Overview%20of%20Holland%20Bandura%20and%20Super.pdf>(검색일: 2020. 05. 26.).

이론'에서 '생애주기(Life-Span)-생애공간(Life-Space)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수퍼(Super, 1981)의 이론에서는 성인기에 거치는 직업세계로의 진출, 진로에 대한 적합성 확인, 직업 전환, 직업 및 지위상의 안정, 은퇴맞이의 일련 과정을 세부적인 연령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영대·임언·이지연·최동선·김나라(2004)는 생애단계 구분에서 생애 4단계와 5단계가 성인에 해당하며, 이 시기에는 직업세계로의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이직과 전직이 이루어지며 직업생활이 중심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표 2-13〉 진로 관점의 성인기 발달단계 특징

연구자 및 출처	내용	
수퍼(Super) (An Official Pennsylvania Government, 2020: 11) ³³⁾	탐색기 (15~2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기(18~21세): 전문적인 훈련 또는 직업에 입직하기 위한 현실적인 사항들을 고려하게 되며 자아 개념을 실현 • 선호 확인기(22~24세): 적절한 직업을 찾고자 하며, 적절하지 않은 경우 직업 선호에 대한 결정과 구체화를 시도
	확립기 (25~4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기(25~30세): 직업에 적응하기 시작하며,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부양을 시작하는 시기 • 발전기(31~44세): 직업상 지위가 확고해지고 안정감과 발전에 관심을 더욱 두게 되며, 경제적 안정감, 책임감, 독립성 등을 지님.
	유지기 (44세 전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직업과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임.
	쇠퇴기 (60세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기(60~64세): 직업세계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며, 은퇴에 대한 계획과 어떤 활동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게 됨. • 은퇴기(65세~): 직업생활이나 경력을 종료하게 되며 가정, 취미, 지역사회 내에서의 다른 부분으로 역할이 변경됨.
이영대·임언·이지연·최동선·김나라 (2004: 58)	생애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본격적으로 준비 • 졸업 후 취업을 하고자 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대학생이 대략적으로 이 시기에 해당 • 직업 세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도와 준비를 하는 단계

연구자 및 출처	내용	
	생애 5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활동과 전직 및 이직이 이루어지는 단계 • 성인들이 직업생활을 하는 데 있어 초창기부터 은퇴까지를 포함하며, 직업생활에서의 성공과 원만한 적응을 위해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다양한 직업 활동을 본격적으로 수행

출처: 각 선행연구에서 해당 정의들을 연구자가 인용하여 표로 구성함.

이 외에 국내 평생교육 정책상 관점에서는 「제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통해 <표 2-14>와 같이 생애단계를 구분하고 해당 시기마다의 주요 특징을 구분하였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08: 23; 정윤경·이윤진·방혜진, 2018: 36), 정윤경·이윤진·방혜진(2018: 93)은 생애단계별 진로·취업 고민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해당 평생교육 기준 생애단계를 따른 바 있다.

33) An Official Pennsylvania Government(2020). Overview of Career Development Theories. URL: <https://www.education.pa.gov/Documents/K-12/Career%20and%20Technical%20Education/CEWStandards/Resources/Pedagogy/Overview%20of%20Holland%20Bandura%20and%20Super.pdf> (검색일: 2020. 05. 26.).

40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표 2-14〉 생애단계별 평생교육 중점 추진 내용

구분	특성
① 성인 입문기(20~24세)	입직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본격적 시작
② 성인 전기(25~39세)	경제 활동 시작 및 결혼·출산을 통한 가족생활 시작
③ 생애 제1 전환기(40~44세)	경제활동의 전성기, 제2의 직업 생활 모색
④ 성인 중기(45~54세)	경제활동 비중 감소, 은퇴 이후 생활과 노후 대비 필요
⑤ 제2 생애 전환기(55~59세)	퇴직으로 인한 인생 구조 재정비기
⑥ 성인 후기(60~69세)	경제·사회 활동 참여 욕구가 높고, 자녀 결혼, 배우자 사별로 가족 관계 변화
⑦ 성인 완성·정리기(70세~)	가족과의 이별, 건강 악화, 죽음에 대한 준비 필요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8: 23); 정윤경·이윤진·방혜진(2018: 36)의 표 <2-18> 재인용 및 일부 보충하여 표를 구성함.

2. 성인기의 진로 관련 주요 이슈 및 주안점

이 외에 성인의 진로개발을 다룬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는 유·청소년기와는 구분되는 성인기 고유의 진로 과업과 고민의 특징을 <표 2-15>와 같이 분석하였다.

정윤경·이윤진·방혜진(2018: 94)은 성인기의 진로 문제를 진로·직업, 개인 특성·환경 및 직무·취업과 관련한 3가지 차원의 문제로 구분하였다. 특히 성인은 고령의 나이와 건강 상태와 같은 개인적 특성과 환경 문제가 진로에 있어서도 장벽이 될 수 있으며, 자신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직무역량 부족의 문제가 가족 관계나 지인과의 문제와 맞물려서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진미석·윤희한(2003: 57-60)은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성인 시기에 여러 번의 이동과 변동이 생기는 변화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식이 필요하며, 성인기에는 안정과 변화라는 반대되는 개념이 공존하는 시기이므로 진로 문제가 단순하지 않고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표 2-15〉 성인기의 진로 과업·고민 특징

연구자 및 출처	내용
정윤경·이윤진·방혜진 (2018: 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직업 관련 문제: 자아이해, 변화하는 직업 및 사회에 대한 이해, 자기 신뢰, 변화대처능력 등 • 개인 특성·환경 문제: 나이 및 건강 문제, 가정 및 지인과의 관계 문제, 성별 차이 • 직무·취업 관련 문제: 경제적 어려움이나 직무역량의 부족 • 성인의 경우 개인별 특성이 정해진 상태이므로 고령의 나이라든지 건강 상태 등의 요인이 진로 및 취업과 관련한 장벽이 되는 경우가 있음. • 각 생애단계를 지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요가 변화
진미석·윤형한 (2003: 57-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자와 달리 성인들은 자신의 진로개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훨씬 큼. • 지속적으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유동적인 단계 • 여러 번의 직업이동과 직장이동을 경험 • 성인기는 현실을 유지하고 안정을 지향하려는 힘과 사회적·경제적인 상황 변화에서 야기되는 변화의 힘을 함께 가짐으로써 구조적인 갈등 상황이 발생 • 진로문제가 단순히 일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적 역할 등과 얽혀 있음.

출처: 각 선행연구에서 해당 정의들을 연구자가 인용하여 표로 구성함.

이와 관련하여 OECD는 <표 2-16>과 같이 진로지도 정책 입안자를 위한 핸드북에서 성인을 ① 실직 상태의 성인, ② 고용 상태의 성인, ③ 고령의 성인 등 3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해당 그룹이 지닌 각 성격의 진로지도 이슈와 정책 수행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을 제언하였다(OECD, 2004: 28-33).

〈표 2-16〉 성인의 분류별 진로지도 이슈

성인 구분	관련 이슈
실직 상태의 성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직 성인들은 특성과 문제가 매우 상이하지만(예시: 고령 노동자, 아동 양육 후 직장에 복직하는 여성, 소수 민족 및 장애인) 이들의 필요에 맞추는 진로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음. • 구직자들의 즉각적인 요구에 대해 종합적인 진로지도를 통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자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지역기반 및 온라인, ICT 활용 등).
고용 상태의 성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자인 성인은 새로운 직장, 직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진로지도, 진로개발이 필요하지만 실직자에 비해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할 기회가 낮음. • 공공 분야에서 재직자에 대한 서비스는 거의 개발되지 않고 있음. • 생애 학습 및 적극적인 고용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재직자를 위한 공공 분야의 진로지도 서비스가 필요
고령의 성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티브 에이징(active ageing)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전문화된 정보와 조언이 필요 • 봉사 성격의 일,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

출처: OECD(2004:28-33). Career Guidance. URL: <https://www.oecd.org/education/innovation-education/34060761.pdf>(검색일: 2020. 05. 25.)의 내용을 표로 작성함.

3. 성인기에 필요한 진로 역량

성인의 여러 차례 이직 및 경력 전환에 따른 직업이동은 흔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황광훈(2019: 166)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 직업력 1~10차(2007~2016년)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청년층의 근로자 50.9%가 노동시장 진입 후 10년간 이직경험이 있으며, 근로경험 기간에 따라서 첫 일자리 진입 이후 1년간 8.7%, 3년간 26.7%의 이직경험을 하고, 이직경험자의 10년간 평균 이직횟수는 1.87회이며, 최대 이직 경험은 12회로 나타났음을 밝혔다. 임정연·이영민(2015: 150)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직

업력 15년차 자료 분석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 근로자의 평균 직업이동 횟수가 3.9회에 달한다고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한 취업 플랫폼의 자체 조사 결과, 10년차 이상의 직장인 전체 응답자의 90.7%가 직장생활을 시작한 이래 회사를 한 번 이상 옮겨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력 1년차 신입사원 중 이직 경험자는 77.1%로 10년 전 동일조사 결과 대비 3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잦은 이직 및 전직의 추세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잡코리아, 2020)³⁴). 성인들의 경우, 특히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슈퍼(Super)는 성인의 경우, 학생과 달리 다양한 사회적 역할과 맥락의 영향을 받으므로 진로와 관련된 발달과업의 내용이나 수준 또한 다양하며, 진로발달을 단일한 방향으로 정의하는 ‘진로성숙’보다는 ‘진로적응성’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Super & Knasel, 1981; 조성연·홍지영, 2010: 1100 재인용). 이들은 진로적응성의 개념을 제안하면서 진로적응성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일의 세계와 자신이 처한 환경의 요구에 대처하는 준비도”라고 하였다(Super & Knasel, 1981; 유현실, 2013: 430 재인용).

진로적응성은 Savickas(1997)에 의하면 “성공적인 경력을 쌓기 위하여 실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등 직업적 과제를 준비하는 측면과 일이나 직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준비성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Savickas, 1997; 조현재, 2016; 김종상·김남조, 2018: 61 재인용).

진로적응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진로탄력성이 있으며, 진로탄력성은 런던(London & Noe, 1997)에 의해 개념화된 용어로서, 역경을 경험하거나 직업에 대한 위기를 겪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상담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

34) 잡코리아(2020. 04. 27.). 신입사원 77% ‘이직경험’...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 http://www.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6685&schCtgr=0&schTxt=%EC%9D%B4%EC%A7%81%EA%B2%BD%ED%97%98&Page=1(검색일: 2020. 09. 14.).

44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고 있다. Noe & Bachhuber(1990)는 진로탄력성을 “진로와 관련하여 역경이 닦혔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Noe & Bachhuber, 1990: 341; 유현실, 2013: 424 재인용)으로 정의하였다. 진로적응성과 진로탄력성은 종종 혼동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유현실(2013: 431-432)은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 진로적응성은 사전에 미리 대책을 준비하여 대처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경향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에 가까운 반면, 진로탄력성은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보다 정서적인 개념을 수반한다고 하였다.

상기의 개념들은 청소년과 성인의 진로교육을 구분하는 차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령별 발달단계에 의한 진로성숙 개념에 충실한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비해서 성인의 진로는 직업세계에 직접 참여하면서 마주하는 재순환, 재탐색, 역할 갈등, 미래의 발달 과제 파악 등의 과제들을 수행하고 대처에 필요한 적응력, 탄력적 역량이 청소년기에 비해 더욱 필요하기 때문이다(Super, 1990; 이지원·송보라·이주연·이지향·이기학, 2014: 1075 재인용).

제4절 시사점

제2장의 성인 진로교육 용어 고찰, 성인 진로교육의 내용 및 유형 탐색, 성인기 주요 특징 및 진로 관련 이슈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 및 성인 진로교육의 기초 개념은 다음과 같다.

가. 성인 진로교육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성인 진로교육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정책·법령·체제하에서 수행됨을 전제로 하며, 성인 진로교육은 성인의 진로개발역량 축진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자 한다. 따라서 성인 진로교육의 정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성인이 자기주도적으로 평생에 걸쳐 진로를 선택·계획·준비·관리하는 진로개발역량을 축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활동·프로그램·서비스’로 한다. 여기서 ‘진로교육’은 ‘생애 관점의 진로지도’의 의미를 내포하며 다양한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활동까지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³⁵⁾

나. 성인 진로교육의 대상

국가 정책 차원에서 성인 진로교육의 대상은 법령상 기본 성인의 요건 및 교육적 차원을 모두 고려하여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기에 준하는 사람이며, 흔히 만 18~19세 이상의 사람들이 해당된다. 즉, 성인 진로교육의 대상은 현재 「진로교육법」 상에서 한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학생’ 대상에서 더 나아가 ‘모든 국민’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인 진로교육 대상의 범위는 성인기 특정 연령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성인 입문기 청년부터 성인 후기 은퇴자까지 모두 포괄해야 한다.

생애발달 시기상 성인기에는 직업세계에 대한 준비를 위한 훈련, 자신과

35) 현실적으로 성인은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직화된 체계 안에서 진로교육의 수혜자가 되는 비율은 학생 대비 낮을 수 있다는 점과, 생애 관점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엄밀한 용어 사용 관점에서는 진로교육보다 진로지도의 사용이 성인에게는 적합하다는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부 관점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진로교육법」을 시행하고 관련 정책을 펼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제공자 및 공급자 관점을 드러내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성인 ‘진로교육’이라는 용어로 명시하고자 한다.

46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직업과의 적합성 확인, 진로 전환, 직업에서의 안정성 추구, 퇴직 및 은퇴 등의 과업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한편, 성인의 진로 문제는 학령기 학생이나 청소년에 비해 건강 문제, 가족 관계 등의 개인적 요건이 진로 장벽으로 부각되며, 학생과는 달리 성인의 경제적 여건과 고용 상태 여부가 진로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에 정책 대상자로서의 성인을 세분화할 때는 생애단계별 구분과 고용 여부에 따른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성인 대상 진로교육을 구안하거나 실시할 때는 학령기 학생과는 대비되는 자기주도성에 기반을 둔 성인학습자로서의 고유 특징을 이해하고 성인 개개인마다 학습 목표, 상황, 여건, 진로교육 수혜 여부 등에 따라 진로발달 수준에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함을 고려해야 한다.

다. 성인 진로교육의 내용 및 주안점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성인 진로교육 내용의 영역은 크게 개인, 교육·학습, 직업세계, 진로 설계·관리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³⁶⁾ 이러한 구분은 성인 시기만을 위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전 생애 모든 시기의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통적인 영역이다.³⁷⁾

- 개인: 긍정적 자아형성·자기이해, 대인관계·상호작용 역량, 일과 삶의

36) 해당 구분은 국내와 국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주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최대한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국내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향후 성인 진로교육에 관한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시에는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과의 통일성을 견지하여 개발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영역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37) 성인의 진로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근거로 하며,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전 생애 진로지도 관점에서 학령기부터 성인까지 모두 동일선상에서 조망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 틀 자체는 동일하다.

균형 추구·유지, 생애 변화에 따른 성장·역할 이해

- 교육·학습: 교육 기회·성취, 지속적인 평생학습 참여
- 직업세계: 직업 이해 및 정보 탐색, 직업-사회·경제 간 관계 이해
- 진로 설계·관리: 진로 목표·설계·관리, 진로의사결정 능력, 진로정보 탐색·활용 능력, 직업 획득·고용 유지를 위한 역량·기술 습득

국외 사례에서 성인에 대한 진로교육의 영역과 내용의 경우, 특히 진로디자인, 준비 단계 이후의 실질적인 실천으로서 입직이나 고용과 관련하여 직업을 얻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진로관리(career management)’ 단계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국가 차원의 「진로교육법」 및 진로교육 정책상에서는 성인 진로교육 목표나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상에서도 자연히 해당 영역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현대사회에서 성인의 진로개발은 필수 요소이며, 특히 성인은 이직, 전직 등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의 변화에 대한 사전 준비 차원의 진로적응성과 이미 발생한 변화에 대한 대응과 회복에 대한 진로탄력성을 갖추는 것은 더욱 현실적으로 필요한 역량일 것이다. 성인은 조직에 소속된 수동적인 인력으로서가 아닌 주체적인 자아로서 환경 변화에 따라 자신의 진로개발 및 진로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성인 진로교육 내용의 주요 주안점³⁸⁾은 다음과 같다.

38) 해당 내용은 이영대·임연·이지연·최동선·김나라(2004)의 pp.73~78 내용 일부를 요약 및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것임.

48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 가정·직장·사회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자기이해
- 경제적 여건·건강·가족 관계 등의 개인적 요인에 대한 파악
- 직업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대인관계능력·네트워킹 능력 고취
- 직업생활과 연계한 평생학습 전략 및 참여
- 다양한 정보 및 자료를 활용한 직업정보·노동시장 정보·채용동향 등의 파악·수집·활용
- 경력단절·실직 등과 같은 변화에 대해 유연한 적응과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진로적응성·진로탄력성·경력 다변화 역량 및 태도 필요
- 효과적인 구직·직업 유지·전환을 위한 자기주도적 진로관리 중요성 이해
- 직업생활 초기·중기·은퇴 후 설계 단계를 고려한 진로계획 수립 및 수정 보완
- 전직·창업·퇴직을 고려한 효율적인 계획 수립 및 평가

이러한 점들은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의 내용과는 차별화 되며, 성인 진로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표 2-17>과 같은 주안점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표 2-17〉 성인 진로교육 목표체계 수립의 영역 및 내용

구분	기존 확립 영역 (현 국내 학교 진로교육 성취기준 및 목표 영역)				추가 필요 영역
대영역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세계 이해	진로탐색	진로디자인과 준비	진로관리 (career management)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이해 •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역량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세계 이해 • 직업의식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회 탐색 • 직업정보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의사결정능력 개발 • 진로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획득·유지 실천 • 진로관리 • 창업·이직·전직·실직 등의 변화 실체에 대한 단력적, 유연한 적응과 대응

▲
실제 직업생활 실현(입직·전직·창업 등) 단계의 진로관리

라. 성인 진로교육의 서비스 활동 유형

성인 진로교육의 서비스 활동 유형은 크게 진로교육(수업), 진로상담, 진로검사·평가, 진로정보로 구분된다.

- 진로교육(수업): 교육과정에 의한 그룹단위의 수업 일환
- 진로상담: 개인 또는 집단 상담, 조언, 멘토링, 생애설계
- 진로검사·평가: 적성 검사, 흥미 검사, 역량 평가
- 진로정보: 다양한 매체 활용, 교육·진로경로·직업·노동시장 및 사회환경 관련 정보

성인에게 해당 서비스 활동을 실행할 때에는 학령기 학생과는 차별성 있게 또는 성인 세부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서비

50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스·활동 유형으로서의 진로교육(수업)은 협의 개념으로서 교육과정에 기반한 수업 형태를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성인의 경우 정규 수업 유형에 대한 참여율은 학령기 학생 대비 점점이 제한적이다. 이에 지역 센터, 커뮤니티, 상담, 온라인, 리플릿 등의 유형이나 자료를 활용하여 다각적인 접근율을 높이는 방안이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진로교육법」 상에서 명시된 진로체험의 경우, 성인 전반에는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용어이지만 성인 입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에는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인턴십 유형도 포함 가능하다. 이 외에 성인 진로상담은 진로지도, 조언, 멘토링, 생애설계 등의 용어로 다변화하여 사용될 수 있다.

2. 성인 진로교육의 개념 요약

앞서 도출한 시사점 전반을 종합하여 도출한 국가 차원의 성인 진로교육의 기초 개념을 요약하면 <표 2-18>과 같다.

<표 2-18> 성인 진로교육의 개념

구분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진로를 선택·계획·준비·관리할 수 있도록 성인의 진로개발역량 강화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성인의 진로개발역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활동·프로그램·서비스 모든 사람과 전 생애주기에서 개인의 목표, 맥락과 연관된 적성, 능력, 가치관, 태도, 학습, 직업, 경험을 모두 포괄하는 진로지도 개념 지향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국민이 생애 진로교육의 수혜자로서 특정 연령대만이 아닌 성인 초기부터 은퇴 이후까지의 성인기 모든 연령을 포함 생애단계별 구분: 성인 입문기, 성인 전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 등 고용상태별 구분: 입직 및 취업 준비자, 재직자, 구직·실직 및 은퇴자(경력 단절, 소외계층, 특수교육 대상자) 등

구분	내용					
내용 및 특징	(영역 및 목표체계) “성인기 직업생활 실천 단계로서 학령기 진로준비 단계 이후의 진로관리 영역 필요”					
	구분	현재의 국내 성취기준상 확립된 영역 (학교 진로교육 성취기준 및 목표 영역)			탐색 및 추가 필요 영역	
	영역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세계 이해	진로탐색	진로디자인과 준비	진로관리 (career management)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이해 •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역량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세계 이해 • 직업의식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회 탐색 • 직업정보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의사결정능력 개발 • 진로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획득·유지 실천 • 진로관리 • 창업·이직·전직·실직 등의 변화실체에 대한 탄력적, 유연한 적응과 대응
	▼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직장, 사회 등 다양한 생애역할 상황 ✓ 학습 목표, 경제적 상황, 건강 여건, 고용 여부 등에 따른 개인차 존재 ✓ 구직, 직업 유지, 전환, 창업, 퇴직 등의 효과적인 직업생활과의 연관성 					
▼ (목표)						
성인이 가정·일·사회 등의 다양한 생애역할 속에서 구직·전직·은퇴 등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 및 탄력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진로관리 및 진로개발역량 개발·촉진						
서비스 및 활동 유형	(서비스 및 활동 유형) “자기주도적 성인학습자로서 다양한 장면에서 맞춤형 접근 필요”					
	진로교육(수업)	진로상담	진로검사·평가	진로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에 의한 그룹 단위의 수업 일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또는 집단 상담 • 조언 • 멘토링 • 생애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성 검사 • 흥미 검사 • 역량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매체 활용 • 교육, 진로경로, 직업, 노동시장 및 사회환경 관련 정보 			

제3장

성인 진로교육 정책 및 사업 현황 및 현장 요구 분석

제1절 성인 진로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 분석

제2절 현장 수요자 관점의 수요 및
요구 분석

제3절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 개정 요구
쟁점 도출

제3장 | 성인 진로교육 정책 및 사업 현황 및 현장 요구 분석

제1절 성인 진로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 분석

본 절에서는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성인 진로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1. 부처의 관련 정책 사업 및 법령 현황

성인의 진로교육을 위한 부처별 관련 정책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추진되어 왔다. 진로, 취업지원, 평생학습 등 관련 키워드를 바탕으로 검색한 정책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부처별 정책에서 넓은 범위의 진로교육 요소가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2장에서 살펴본 진로교육의 내용이나 목표체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책은 제한적이었다(<표 3-1> 참조).

밀접하게 연관된 정책을 따로 분류하여 성인 진로교육 목표체계에 적합한 서비스가 얼마나 충실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의 신

되도 확보를 위해 연구진 2인과 외부 전문가 1인이 각각 정책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연구진 회의를 통해 재검토하였다.

그 결과, 관련 정책들이 성인 진로교육 목표에 해당되는 5개 영역을 충실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용자가 체계적으로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을 개발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혼치 않았으며, 취업지원 정책의 일부로서 제한된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표 3-1> 참조).

특히 교육부의 사업은 타 부처의 관련 사업에 비해 예산 규모가 크지 않으며, 성인 진로교육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정책보다 국내 전반의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예: 국가평생학습포털,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등).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부처의 여러 정책 사업을 통해 성인 진로교육 목표체계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생애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빠른 취업 또는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취·창업 지원이 중심이었다.

〈표 3-1〉 부처별 성인 진로교육 관련 정책 및 법령 현황

구분	부처별 정책 현황		성인 진로교육 목표체계					취·창업 지원
	정책명	예산규모* (억 원)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세계 이해	진로탐색	진로디자인과 준비	진로관리	
교육부 (6)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12.6		△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119	△					
	평생교육 바우처	34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241	△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14	△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	16			△			△
고용 노동부 (10)	청년취업아카데미	184		○				○
	취업성공패키지	2,317	△	○	○	△		○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220	○	○	○	○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여성가족부 공동)	117.42	△	△	△	△	△	○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216	△	△	△	△	△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중장년 일자리	△	○	△	△	○	○

58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구분	부처별 정책 현황		성인 진로교육 목표체계					취·창업 지원
	정책명	예산규모* (억 원)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세계 이해	진로탐색	진로디자인과 준비	진로관리	
		희망센터에 예산 포함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149	△	○	△	△		○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고용센터)	10	△	○	△	△		○
	4차산업혁명선도인력양성 훈련	260		○				○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자, 재직자)	8,778	△	△				○
여성 가족부 (3)	온라인 경력개발센터(꿈날개) 운영	5	△	○		○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565	△	○	△	○	△	○
	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	6	△				△	○
중소 벤처 기업부 (12)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 사관학교)	932	△				△	○
	K-스타트업 (예비창업패키지)	1,114		△		△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54						○

제3장 성인 진로교육 정책 및 사업 현황 및 현장 요구 분석 59

구분	부처별 정책 현황		성인 진로교육 목표체계					취·창업 지원
	정책명	예산규모* (억 원)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세계 이해	진로탐색	진로디자인과 준비	진로관리	
	재도전성공패키지	176	△				△	○
	재창업패키지	75		△			△	○
	소상공인 사이버평생교육원	6		△				○
	중장년기술창업센터	45					△	○
	장애인 창업 육성	48				△		○
	창업에듀	4		△				○
	실전창업교육	48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66				△		○
	여성벤처창업케어 프로그램	5	△	△		△		○

* 1억 이하에서 반올림

** 정책이 목표체계와 관련된 사항을 밀접하게 지원하는 경우 ○,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로 표기함.

*** 2020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부처 웹페이지에 예산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였음.

출처: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0. 1. 15.). 2020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및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설명회.

교육부(2019). 2020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기본계획.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

권태희·서미경·임현선·이성재·정연정(2018). 고용서비스 사업 심층평가 - 공공고용서비스 사업의 품질개선 방안 - (여성일자리 중심으로). 한국고용정보원.

권혜자(2017). 취업성공패키지의 유형별 취업성과와 중고령자 정책 시사점. 고용이슈 2017년 5월호. 10(3).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2019). 2019년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고용노동부(2019). 2019년판 고용노동백서. 160-190.

60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URL: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disaster/list12.do>(검색일: 2020. 05. 26.).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NILE 브로슈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0). 『2020년 재창업패키지』 사업시행 및 교육기관 모집·재지정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URL: http://www.sbiz.or.kr/sup/ssup_c01/1212726_1463.jsp?gubun=policycomeback(검색일: 2020. 07. 01.).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URL: http://www.mogef.go.kr/sp/geq/sp_geq_f013.do(검색일: 2020. 07. 02.).

정부24 홈페이지. URL: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765>(검색일: 2020. 07. 0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19).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차보고서.

중소벤처기업부(2020).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2020). 2020년도 부처별 창업지원사업. 중소기업부.

한국산업인력공단(2019).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편방안 연구. (사)한국고용복지연급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0). 2020 사업설명회 자료집.

또한 밀접한 관련 정책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의 실적이나 성과 관련 자료 역시 제한적이었다. 정책 추진에 따른 실적과 성과 자료가 공개된 경우에도 취업률 또는 이용자 수 등 양적 중심의 평가로 인해 실제 사용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만족도는 어느 수준인지 등의 결과는 확인하기 어려웠다(<표 3-2> 참조).

〈표 3-2〉 정책별 실적 및 성과 예시(2018, 2019년도 기준)

부처	정책명	실적	성과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인원: 2009년 0.9만 명 → 2018년 30.8만 명 • 지원 대상 확대: 2009년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 2011년 만 34세 이하 청년 → 2012년 만 35~64세 중장년 → 만 65~69세 중장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률: 2010년 59.2% → 2018년 64.9% • 6개월 고용유지율: 2010년 60.1% → 2018년 62.8% • 12개월 고용유지율: 2010년 38.6% → 2018년 52%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일센터 이용 구인: 2011년 237,133명 → 2018년 511,953명 • 새일센터 이용 구직: 2011년 186,940명 → 2018년 483,802명 • 새일센터 이용 취업: 2011년 117,370명 → 2018년 173,064명 • 여성고용 유지 지원: 2017년 6천 명 → 2019년 1만 9천 명 • 직장문화개선: 2017년 88개 → 2019년 544개 • 창업 지원: 2017년 1,274건 → 2019년 1,408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의 역량 강화와 고용 증가 • 상담 및 경력개발 자문 등을 통해 여성의 역량 개발 • 직장문화 개선 및 근로 환경 개선 • 창업 관련 기초상담, 직업교육 훈련 지원을 통한 여성 창업
중소기업벤처부	창업에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수료생 수: 2017년 16만 1,192명 → 2018년 30만 3,126명 • 유튜브 창업에듀 페이지 개설 • 학습자 중심의 주제와 강좌 내용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전에 유용한 창업 강좌 제공 • 창업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출처: 고용노동부(2019). 2019년판 고용노동백서. 160-19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URL: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disaster/list12.do> (검색일: 2020. 05. 2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19).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차보고서.

이러한 점은 성인의 진로교육이 여러 부처의 담당 영역에 걸쳐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체계적이고 주도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핵심 부처는 부재해 왔음을 보여준다.

2. 지자체별 관련 사업 현황 분석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을 포함한 8개 특별시 및 광역시 지자체의 관련 사업 현황 결과를 청년층과 중장년층, 고령자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청년층 지원 사업 중 진로 및 취업지원과 관련 있는 189개의 사업을 <표 3-2>의 부처 정책과 같은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신뢰도 확보를 위해 2인의 연구진과 1인의 외부 전문가에 의한 분석, 연구진 회의를 통한 검토 결과를 <표 3-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사업이 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 지원 중심으로,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의 비중은 낮은 편으로 확인되었다(<표 3-3>, <부록 1> 참조).

<표 3-3> 지자체별 청년층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사업 현황

지자체 (관련 사업 수)	성인 진로교육 목표체계					취·창업 지원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세계 이해	진로탐색	진로디자인과 준비	진로관리	
서울 (29)	○ 6 △ 6	○ 5 △ 10	△ 8	△ 12	△ 2	○ 25
부산 (28)	○ 1 △ 3	○ 3 △ 4	○ 1 △ 5	○ 1 △ 9	○ 1 △ 1	○ 22
인천 (25)	○ 1 △ 3	○ 5 △ 3	○ 1 △ 6	○ 1 △ 5	△ 1	○ 20

지자체 (관련 사업 수)	성인 진로교육 목표체계					취·창업 지원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세계 이해	진로탐색	진로디자인과 준비	진로관리	
대구 (36)	△ 2	○ 7 △ 1	△ 10	△ 9	○ 2 △ 3	○ 33
광주 (20)	○ 1 △ 2	○ 3 △ 7	△ 4	○ 1 △ 6	△ 1	○ 18
대전 (28)	○ 1 △ 3	○ 2 △ 6	○ 4 △ 6	○ 1 △ 7	△ 1	○ 23
울산 (13)		○ 1 △ 1	○ 2 △ 1	△ 4		○ 11
세종 (10)	△ 1	○ 2 △ 2	△ 1	△ 4		○ 8
총계 (189)	○ 4 △ 20	○ 28 △ 34	○ 8 △ 41	○ 4 △ 56	○ 3 △ 9	○ 160

* 사업이 목표체계와 관련된 사항을 밀접하게 지원하는 경우 ○,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로 표기하고 관련 사업 수를 제시함.

출처³⁹⁾: 온라인청년센터(지자체청년정책). URL: <https://www.youthcenter.go.kr/jynEmpSptNew/jynEmpSptList.do>(검색일: 2020. 07. 02.).

8개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수행하는 189개 사업 중 취·창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160건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을 충실히 지원하는 사업은 4건,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20건이었으며,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지원하는 사업은 각각 28건과 34건, 진로탐색은 8건과 41건, 진로디자인과 준비는 4건과 56건, 진로관리는 3건과 9건이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지원 사업은 74개(<표 3-4>, <부록 2> 참조)가 확인되었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53개(<표 3-5>, <부록 3> 참조)가 확인되었다. 청년층 지원 사업에 비하면

39) 해당 URL에서 각 지역별 정책을 검색·분석하여 정리하였으며, 본문에서는 메인의 URL을 제시함. 각 정책명은 <부록 1>에서 확인할 수 있음.

64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열악한 수준이었으며, 체계적으로 진로를 지원하기보다는 주로 독립적인 단위 프로그램의 수준에서 운영되었다.

〈표 3-4〉 지자체별 중장년층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사업 현황

지자체 (관련 사업 수)	성인 진로교육 목표체계					취·창업 지원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세계 이해	진로탐색	진로디자인과 준비	진로관리	
서울 (10)		△ 4	△ 4		△ 1	△ 8
부산 (7)	△ 3	△ 1				△ 5
인천 (14)	△ 7	△ 5				△ 10
대구 (7)	△ 2	△ 3				△ 7
광주 (2)		△ 1	△ 1			△ 2
대전 (4)	△ 2		△ 3			
울산 (20)	△ 6	△ 3	△ 8			△ 12
세종 (10)	△ 2	△ 3	△ 7			△ 3
총계 (74)	△ 22	△ 20	△ 23		△ 1	△ 47

* 사업이 목표체계와 관련된 사항을 밀접하게 지원하는 경우 ○,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로 표기하고 관련 사업 수를 제시함.

출처40): 광주시청 홈페이지. URL: https://www.gwangju.go.kr/index_corona.jsp(검색일: 2020. 08. 26.).

광주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 URL: <http://gwangju.work.go.kr/>(검색일: 2020. 08. 26.).

대구시청 홈페이지. URL: <http://www.daegu.go.kr/>(검색일: 2020. 08. 28.).

대구시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URL: <https://www.dgonestop.kr/>(검색일: 2020. 08. 28.).

대전시청 홈페이지. URL: <https://www.daejeon.go.kr/>(검색일: 2020. 08. 26.).

40) 각 지역의 관련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관련 정책을 분석하여 정리하였으며, 출처로는 메인의 URL을 제시함. 각 정책명은 <부록 2>에서 확인할 수 있음.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홈페이지. URL: <https://www.daejeonsenior.or.kr/>(검색일: 2020. 08. 28.).
 부산시청 홈페이지. URL: <https://www.busan.go.kr/>(검색일: 2020. 08. 31.).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URL: <https://www.busanjob.net/>(검색일: 2020. 08. 31.).
 서울시청 홈페이지. URL: <https://www.seoul.go.kr/>(검색일: 2020. 09. 01.).
 서울시50플러스포털 홈페이지. URL: <https://www.50plus.or.kr/>(검색일: 2020. 09. 01.).
 세종시청 홈페이지. URL: <https://www.sejong.go.kr/>(검색일: 2020. 09. 01.).
 세종시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URL: <http://sejong.work.go.kr/>(검색일: 2020. 09. 01.).
 울산시청 홈페이지. URL: <http://www.ulsan.go.kr/>(검색일: 2020. 09. 02.).
 울산시내일설계지원센터 홈페이지. URL: <http://www.usnoinjob.org/>(검색일: 2020. 09. 02.).
 인천시청 홈페이지. URL: <https://www.incheon.go.kr/>(검색일: 2020. 09. 02.).
 인천일자리포털 홈페이지. URL: <https://www.incheon.go.kr/job/>(검색일: 2020. 09. 03.).

〈표 3-5〉 지자체별 고령자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사업 현황

지자체 (관련 사업 수)	성인 진로교육 목표체계					취·창업 지원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세계 이해	진로탐색	진로디자인과 준비	진로관리	
서울 (12)	△ 3	△ 5	△ 6			△ 8
부산 (6)	△ 1	△ 6				△ 6
인천 (8)	△ 1	△ 7				△ 8
대구 (4)	△ 1	△ 4				△ 4
광주 (4)	△ 1	△ 4				△ 4
대전 (4)	△ 1	△ 4				△ 4
울산 (11)	△ 2	△ 4	△ 6			△ 4
세종 (4)	△ 1	△ 4				△ 4
총계 (53)	△ 11	△ 38	△ 12			△ 42

* 사업이 목표체계와 관련된 사항을 밀접하게 지원하는 경우 ○,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로 표기하고 관련 사업 수를 제시함.

출처⁴¹⁾: 〈표 3-4〉와 동일함.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청년층 지원 사업에 비해 중장년층과 고령자 지원 사업은 제한적이었으며, 비교적 더욱 활발히 진행되는 청년층 사업 역시 적극적으로 성인의 진로설계를 지원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대부분의 정책이 단기적 관점에서의 취·창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생애 진로설계를 위해 필요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원은 제한적인 편임을 알 수 있었다. 정부부처의 정책 현황과 더불어 지자체 사업에서도 지원이 제한적이었던 점은 그만큼 취·창업에 비해 성인 진로교육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도가 낮았음을 보여준다.

제2절 현장 수요자 관점의 수요 및 요구 분석

현장의 수요자 입장에서 성인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교육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수요와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정책 수요자 대상으로 FGI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FGI는 현장에서 관련 교육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실무자 총 12인을 편의 표집하여 조사하였으며, 설문조사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평생학습센터 등 관련 센터와 교육시설 12곳의 교육 및 상담 이용자 150인과 비이용자 50인을 할당표집하여 온라인 설문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41) 각 지역의 관련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관련 정책을 분석하여 정리하였으며, 출처로는 메인의 URL을 제시함. 각 정책명은 <부록 3>에서 확인할 수 있음.

1. FGI 문항과 설문문항의 개발

먼저 FGI 문항의 개발은 연구진의 논의를 통해 초안을 작성한 뒤, 전문가의 서면검토를 거쳐 수립된 의견을 다시 연구진 회의를 통해 논의하여 최종안 작성에 반영하였다(<부록 4>, <부록 6> 참조). 설문문항 역시 연구진 논의를 통해 초안을 작성한 후 전문가의 서면검토를 거쳤으며, 더불어 전문가 협의회(2020. 4. 24)에서 수립된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반영하여 연구진 논의 후 최종안을 확정하였다(<부록 5>, <부록 7> 참조). 최종 확정된 FGI 문항의 구조는 <표 3-6>, 최종 확정된 설문조사 문항의 구조는 <표 3-7>과 같았다.

〈표 3-6〉 FGI 문항의 구조

구분	항목
응답자 배경	소속기관, 담당직무, 성별 및 연령대, 소속지역 및 규모
센터 현황	센터 지역 특성, 부서 및 인력구성, 센터 방문자 주요 특징, 교육에 대한 주요 요구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 현황	주요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 및 관련 정책, 개선점 및 요구사항
성인 진로교육의 요구 및 필요성	진로교육의 필요성 및 요구되는 서비스, 목표에 따른 서비스 운영 현황, 서비스 유형에 따른 운영 현황, 진로 서비스 제공 관련 계획, 주요 대상 집단
성인 진로교육 운영체계	전담 부처 및 조직, 정책방안 등

〈표 3-7〉 설문문항의 구조

구분	항목
공공 교육시설 이용 경험	이용 경험 유무, 이용 시설 및 시기, 이용하지 않는 원인, 만족도
진로 재설계의 필요성	희망 은퇴 연령, 진로 재설계 필요 여부 및 준비
성인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	공공 교육시설의 진로 서비스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접근성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대, 거주 지역 및 지역규모, 재직 여부, 구직준비 여부

2. FGI 분석 결과

FGI는 성인 진로교육의 현황 파악 및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며, 응답자의 현황은 <표 3-8>과 같았다.

〈표 3-8〉 FGI 참석자 현황

구분	코드명	담당 직무	성별	연령대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새일1	상담사	여	50대
	새일2	취업사업총괄	여	40대
	새일3	PM	여	40대
	새일4	상담사	여	40대
평생교육 센터	평생1	프로그램 개발	여	30대
	평생2	프로그램 운영	여	30대
	평생3	프로그램 운영	여	30대
	평생4	프로그램 운영	여	40대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고용1	프로그램 운영	여	40대
	고용2	직업진로지도	남	50대
	고용3	프로그램 운영	여	40대
	고용4	직업훈련	남	40대

FGI를 통해 수집한 자료의 분석은 연역적과 귀납적 방법을 병행한 혼성접근방식(hybrid approach)의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Swain, 2018)을 통해 진행되었다.

가. 성인 진로교육의 필요성

먼저 성인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응답들을 연역적으로 코딩한 뒤, 코딩된 응답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귀납적으로 주제를 도출하였다. 연역적 코딩을 통해 성인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여부를 분석해 본 결과, FGI 참석자 12명 중 9명이 자기탐색과 비전 설정, 직업에 대한 개념 확대 등을 위한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새일2, 새일3, 새일4, 평생1, 평생3, 평생4, 고용1, 고용2, 고용3).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탐색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보통 자기탐색 하는 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이런 것을 쓰는 시간이 있는데 정말 못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새일4)

“일에 대한 개념이나 세계관을 지금 이제껏 저희가 정의했던 것 말고 전환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평생2)

“진로를 찾을 때 아무 때나 가서 진로에 대한 상담도 받고 설계도 받고 뭐가 비전도 찾고 그런 것들, 나의 꿈을 실현시켜 가는 과정의 진로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평생 4)

“청년취업이 늦어져서 30대 중반이 되어야지 어느 정도 자기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고, 30대 중반이 되면 다시 자기의 자아를 찾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 번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는 진로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들었고…….”(평생4)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인이라고 해서 자기 진로가 확고한 사람이……. 요즘에는 진로라는 것 자체가 한 번 결정한 직업이라는 것이 없으니

70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까.”(고용1)

“진로 이쪽은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겠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마음을 다독이고, 취업 의욕도 높이고.....”(고용2)

1) 이용자들의 자기계발 및 진로개발에 대한 욕구

이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확인된 주제는 센터를 방문하는 성인 이용자들의 자기계발 및 진로개발 욕구가 높다는 점이었다. 당장의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보다는 스스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의미 있는 진로를 찾고, 원하는 분야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너무 단순하고 이런 일자리보다는 조금 더 인생 후반부에 있어서 가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새일2)

“20, 30대나 40대까지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커서 뭔가 새로운 경험 그리고 자기를 좀 더 알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평생2)

“지적 욕구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평생4)

“뚜렷한 목표를 갖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아니면 문화예술을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평생1)

2) 이용자들 간의 진로결정 수준 격차

또한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을 희망하는 이용자의 경우에도 진로가 결정되지 않아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 어려움을 겪거나, 다른 이용자로부터 불만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현재 제공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이전 단계에 이용자의 진로선택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교육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로 프로그램 1단계에서는 진로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원래 성취 프로그램은 진로가 결정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워요.”(고용1)

“(집단 프로그램 중) 한 이용자는 진로 관련해서도 좀 생각이 정리되어 있는데, 상대는 진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때 둘이 활동을 하게 되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게 되고 얻는 부분이나 피드백이 대체로 잘 안 오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불만이 되는 거죠.”(고용3)

나.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한 성인 진로교육

성인 대상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반면, 소속 센터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여러 응답자가 느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취업 실적 중심으로 부처의 정책 사업이 추진되면서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체계적인 진로지원보다 이용자 개개인의 특성과 무관하게 취업을 강조하고, 쉽게 취업지원이 잘 되는 곳으로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진로 준비가 안 된 분들 준비시키기는) 저희가 역량이 부족하고…….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을 기다려 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 취업에 상관없이 마음 편안하게 일단 배워봅시다 하고 싶은데 직업교육훈련생 면접을 볼 때도 선생님, 꼭 취업하셔야 됩니다.”(새일1)

“진로라고 하기는 어렵죠 저희는 진로라고 하는 생애주기별로 고민할 수 있는 틀이나 이런 것도 없고 취업지원의 성격도 너무 강하기 때문에…….”(새일2)

“(취업지원이 중심이다보니) 자기 전공과 꿈에 갇혀 있으신 거예요. 그럼 저희는 계속 끌고 가도 취업을 안 하실 분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지원

72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새일3)

“취업하기가 너무 어려운 직종들이 많으니까 언젠가부터는 (이용자의) 꿈 얘기를 제가 집단에서 빼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취미로 하세요.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새일4)

“만약에 했다고 했을 때 잘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 막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게…….”(평생2)

“취업시키기 바쁘다. 취업 실적을 잡아야 되는데, 무슨 진로상담을 하고 있느냐? 그래요.” (고용4)

센터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역시 프로그램이 제한적이었으며, 이용자의 진로결정 여부 또는 진로발달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체계적으로 연계된 교육은 제공되지 못하고 있었다(<표 3-9> 참조).

<표 3-9> 센터별로 진로발달 수준에 따라 제공하는 진로교육 현황

구분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개발	일과 직업세계 이해	진로탐색	진로디자인과 준비	진로관리
새일1	• 집단상담 프로그램	• 집단상담 프로그램 • 개인상담 • 직훈교육 특강	• 집단상담 프로그램 • 개인상담	• 집단상담 프로그램 • 개인상담	• 경력이음 지원사업
새일2	• 취업권설팅 • 직무멘토링	• 고부가치 직업훈련 • 현직자 특강	• 취업장애 요인 파악 •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직업상담	• 집단상담 프로그램	-
새일3	• 상담, 집단 상담	• 상담, 집단 상담 • 직업훈련 교육 • 직무향상 교육	• 상담, 집단 상담	• 상담, 집단 상담 • 직업훈련 교육 • 직무향상 교육	-

구분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개발	일과 직업세계 이해	진로탐색	진로디자인과 준비	진로관리
새일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TI 검사 • 직업선호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생애 진로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사다리 재취업성공 사례
평생1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직을 위한 시간 	-	-
평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학, 시민학, 서울학, 사회경제학, 문화예술학, 생활환경학, 미래학 관련 프로그램 • 명예시민 학위제 및 시민연구회 활동 	-	-	-	-
평생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의 이상블 프로젝트 	-	-	-	-
평생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역량 강화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별 진로 특강 	-	-	-
고용1·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 자기탐색 및 집단상담 • 개별심리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 집단상담 • 체험활동 및 기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 집단상담/ 직무탐색 • 희망분야 취업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 집단상담 • 직무탐색 후 취업지원 	-
고용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심리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정보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선택 구체화 위한 대차대조법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계획 수립 위한 SMART기법 활용 	-

센터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강사의 진로특강을 꼽는 경우가 있었으나, 단발성인 탓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더욱 구체화, 세분화되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74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실무에서 필요로 하고 현장에 있던 분들을 강사진으로 포진을 하다보면..... 교육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았어요. 현장에서의 본인 업무를 다 말해주시니까, 노하우를 다 말해주시니까 좋았는데..... 교육생들은 만족감을 느꼈어요.”(새일1)

“기업에서 현직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업무를 하는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멘토링도 해주시고 자기가 그 길로 가기까지의 경력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알려주시고 그런 내용을 특강식으로.....”(새일3)

“진로특강..... 진행을 했었는데..... 만족도는 높은데,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대상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누고..... 이런 교육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평생1)

다. 성인 대상 진로교육 활성화의 장애요인

센터의 성인 대상 진로교육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주제가 확인되었다. 1) 취업지원의 일부로 추진되는 제한적 진로교육, 2) 취업지원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3)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부족, 4) 부처 간의 연계·협력 체계 미흡.

1) 취업지원의 일부로 추진되는 제한적 진로교육

진로교육과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센터 대부분이 진로교육 자체가 목적이기보다 취업지원의 일부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취업스킬을 강화하기 위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교육, 적절한 직업교육훈련을 찾기 위한 직업상담, 취업의욕을 높이기 위한 상담 등 취업에 중심을 두고 관련 교육과 상담이 추진되고 있었다.

“성취(성공취업 프로그램)와 고등학교 진로지도 쪽으로 하이(하이 프로그램)를 하고 그리고 행복오름 하고 캡 갈파인가 그것을 내부 진행으로 돌린다고 하는데..... 이게 취업지원 프로그램이잖아요. 1단계는 진로에 대한 성향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에 대한 스킬을 가르칩니다.”(고용3)

“상담을 통해서 거기에 맞춰서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요. 저희가 커버가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소개하기도 하고.....”(새일1)

“기본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은 직업상담 프로그램을 핵심적으로 많이 받도록 하고..... 그러니까 집단을 듣고 나서 직업교육을 받게 되면 그 효과가 100% 이상 올라가거든요.”(새일4)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그전에 심리적인 것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취직이기 때문에..... 가족상담, 부부상담, 취업상담, 대인관계, 좌우간 여러 가지를 다 다루고.....”(고용1)

2) 취업지원 실적 중심의 센터 평가체계

센터들이 취업지원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센터의 취업지원 관련 평가 방식이 양적, 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었다. 현재의 평가체계가 바뀐다면 센터들이 양질의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체계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고용센터에서도 진로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하긴 하죠. 실적 베이스로 가다 보니까 길게 장기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시면 일자리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고 일자리 연계나.....”(새일2)

“취업 실적이 증가됐는데..... 고용센터가 알선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니까.....”(고용4)

76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실적보다는 정말 양질의 진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하고 조금 고급된 질 높은 상담 서비스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새일4)

“실적 부분이나 센터를 평가하는 기준을 바꾸어 변화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다양한 진로를 일 경험을 통해서, 어떤 직무를 통해서 자기가 생각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진로 경력개발 쪽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새일3)

3)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부족

성인 진로교육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문적으로 상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인력이 상담을 하거나 외부 전문가에 의존하는 경우, 실무자 스스로 진로상담 역량을 강화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를 희망해도 기존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수행하기가 어렵거나, 인사이동 이후에 유지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예 센터 업무에서 제외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저희 센터도 상담해 주기는 하지만 사실 진로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니까 그럴 때 많은 고민이 되기도 했었어요.”(새일3)

“상담, 진로, 직업의 세계, 뭐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전문한 행정직들이 있어서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 무자격자 비율이 60% 되거든요. 최소한 직업상담사나 심리 상담사 쪽으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와야 되는데…….”(고용4)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클리닉 하고 심리검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지정되어야 한다 해서 지원을 했는데 팀 회의에서 안 된다고 결론이 났어요. 3년마다 인사발령이 나서 로테이션이 되니까 상담사 분이 가고 나면 누가 할 거냐? 그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업무 분장표에 이걸

넣으면 안 된다고…….”(고용4)

“외부 전문가를 모셔놓고 일대일 진로 컨설팅을 하는데…….”(새일2)

“어떤 과정을 해봤으면 좋겠다 아이디어를 내긴 하는데 그 과정을 운영할 사람을 누가 하나는 거죠 그 과정을 맡아서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시간들이, 개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런 개인역량을 개발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새일1)

4) 부처 간의 연계·협력 체계 미흡

여러 부처에서 독립적으로 관련 정책 사업을 수행하면서 서로 역할이 겹치고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아무리 현장에서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위로 가면 부처 간에 칸막이 때문에 연계도 안 되고, 사실 고용노동부 쪽에서도 평생교육센터가 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평생2)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진로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1) 실업급여 및 취업지원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되 그 이전의 진로교육과 관련된 것은 교육부가 수행하도록 주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2) 교육부에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타 부처의 직업교육훈련과 접목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실업급여를 주는 것은 고용노동부 쪽이 맞고, 그 이전에 해야 될 모든 교육적인 기능을 교육부와도 나눠서, 주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평생2)

“교육부 쪽에서 그런 교육을 개발해서 저희가 직업교육훈련하고 접목을 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새일1)

라. 성인 진로교육의 주요 수요계층

성인 진로교육의 주요 수요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1) 40~50대 이상 중장년층 및 경력단절여성, 60대 전후 은퇴(예정)자, 2) 소외 및 좌절을 경험한 취약계층이 확인되었다.

1) 중장년층 및 경력단절여성, 은퇴(예정)자

40~50대 이상의 제2진로 설계를 희망하는 사람들, 경력단절여성 그리고 60대 전후의 은퇴예정자와 은퇴자를 꼽는 응답이 다수로 나타났다.

“40대 후반의 사람들이나 정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센터를 방문해서 취업상담을 전문적으로 편하게 받을 수 있고…….”(새일4)

“애매한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한 회사에 입사해서 보통 다니다가 경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즉 자기가 했던 분야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새롭게 마음가짐도 가져야 되고……. 나를 좀 내려놓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고용1)

“요즘에 평생직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재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타국이 되면 좋을 것 같고…….”(평생3)

“학부모님들 보면 학력이나 그런 것도 너무 좋으시고, 그간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썩혀 두기에는 너무 아쉬운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이 새롭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평생1)

“경력단절여성이 차츰차츰 나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기가 막내가 고학년에 올라갈 때쯤 더 이상 엄마의 손이 안 가니까 그때부터…….”(평생4)

“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직종에 오래 다니다가 정년퇴직이든 중간퇴직이든 명예퇴직이든 퇴직을 하고 오신 분들이 더 새로운 직종에 대해서 정보를 모르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새일1)

“은퇴하신 분들이 뭔가 직업을 딱 하는 것보다는 뭔가 자기의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진로에 대한 것들을 심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평생4)

FGI에 참여한 현장 전문가들이 중장년 이상의 고령자를 주요 진로교육 수요자로 꼽는 이유로는 다수의 센터 주요 이용자가 40대 이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이 강조되면서 온라인 정보의 활용에 익숙한 청년층의 방문이 줄고, 그렇지 못한 고령자들의 센터 이용이 높아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젊은 층보다는 40대에서 70대 어르신까지 오시고…….”(새일1)

“40대, 50대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력이 다른 기관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2년 이상의 대학졸업생들이 고졸보다는 많습니다.”(새일2)

“저희가 프로그램 하는 시간이 보통 낮시간이 많다 보니까 거의 60% 이상 자체가 은퇴자와 50, 60대가 60% 이상이에요.”(평생4)

“나이대는 40대부터 60대까지 오시는 것 같아요.”(평생3)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대부분 모이는 것을 금지하게 하니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시는 고령자 분들의 방문이 어머머하세요”(고용1)

40대 이상의 수요자가 많다는 점은 성인 진로교육의 목표 중 진로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첫 진로 설정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이나 청년층에 비해 40대 이상은 재취업 및 진로의 재설계, 정년 이후의 진로 등 제2, 제3의 진로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두드러지지 않은 것은 20~30대의 청년층은 초·중등 단계에서 진로교육을 경험한 세대이며⁴²⁾,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 중 청년층 대상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표 3-3> 참조).

2) 소외 및 좌절을 경험한 취약계층

다음으로는 소외와 좌절을 경험한 취약계층이 주요 수요자로 꼽혔다. 정보 접근성에서 소외되거나 실패를 경험하고 의욕을 잃은 집단 그리고 생계를 위해 교육훈련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정보 소외를 받는 사람은 계속 정보 소외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취약계층을 잘 발굴해서 제공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평생2)

“지역에서 많이 부도도 나고 그러잖아요. 사회적으로 자기가 패배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좀 더 기회를 주는 여건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평생3)

“가장 필요한 것은 좀 힘없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그분들이야말로 좀 더 사회에 나와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집단을 위해서 저희 자치구나 여러 기관에서 많이 도와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평생3)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고, 훈련을 못 해서 좋은 데에 취업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단시간 일자리에 머무르게 되고, 그런 고리를 끊기 위해서 이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고용3)

42) 1999년 교육부 위탁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진로정보센터가 설치되고, 2011년부터는 중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는 등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추진되었음. 그 이전에 학교를 졸업한 4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진로교육의 경험이 제한됨.

마. 성인 진로교육 운영체계

성인 진로교육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기보다 기존에 운영되는 기관의 특성화 및 전문화를 통한 명확한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성인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운영되는 기관들의 특성을 명확히 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은 반대고요. 진로 서비스의 주체를 먼저 정리해 주시는 것이 지금 있는 자원과 조직을 갖고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평생2)

“지금 지역에서도 평생교육기관이 있고 사설에 평생교육시설도 있고 대학에서도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하시는 곳도 있거든요. 과연 기관 성격에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새일2)

역할 명확화 및 강화의 예시로 1) 기관별로 4차 산업, 인문학, 진로 등과 관련된 역할을 각각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2) 기관 특성에 따라 진로 관련 콘텐츠 개발, 취업지원 전담, 직업교육훈련 적용 등의 역할을 분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전문적인 평생학습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평생학습관이 각각 특색 있는 것들을, 또 전문화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4차 산업혁명만 공부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 어느 곳은 인문학 위주로 된 평생학습관, 어느 곳은 직업 관련된 평생학습관, 그런 것을 좀 나누면 시민들이 오는 것도 정확한 목적을 갖고 오게 되잖아요.”(평생3)

“교육부 산하에 속해 있는 평생교육기관들을 내용적으로 활성화하는 방법 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새일2)

82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동네 곳곳에 이런 배움터라든가 평생학습과 관련된 기관들이 많잖아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행복학습지원센터로 다 지정이 되어 있고 하나까……. 그런 것들의 조직과 연계해서 뭔가 일시적인 프로그램들이 아니고, 약간 정기적으로 상시적으로 열어 두면 필요할 때…… 하나의 서비스를 하는 거죠.”(평생4)

“평생교육 쪽과 접목을 시켜서 더 개발하고 새 일에 맞는 진로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가져오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새일1)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의 취업알선 업무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 일은 그냥 교육만 운영하면 안 되나? 직업교육훈련이든 성인 교육이든 교육만 운영하고 거기에 그 사람들만 취업 연계시키고 그러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새일1)

부처 간 관련된 사업은 실효성 증대를 위해 예산을 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평생교육 쪽은 교육부에 속해서 예산을 받지만, 교육부에 평생교육 쪽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교육부 예산의 0.2%? 그러다 보니까 정말 빛을 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직업을 담당하는 그런 쪽의 예산과 함께 운영하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정책적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평생4)

즉, 정부부처 및 관련된 산하 센터들의 협력과 역할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센터에서 일치되는 의견이 있었다.

3. 설문조사 분석 결과

온라인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현황은 <표 3-10>과 같다. 할당표집을 시행하였기에 설문에 응답한 200명의 성별은 남(50.0%)과 여(50.0%)가 같은 비율이었다.

응답자의 연령은 '40대'(32.5%)가 다소 많았고, '60대 이상'(25.5%)과 '50대'(24.5%)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 중 40대 이상의 고령자가 많다는 점은 그만큼 부처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교육시설 이용자 중 중장년층 이상의 연령대가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거주 지역의 규모는 '대도시'(54.5%)가 반수 이상이고, 그다음으로 '중소도시'(38.0%)가 많았다.

현재 직업 활동 상태는 '풀타임 근무 중'(47.0%)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무직 상태'(32.5%), '일용직/파트타임/시간제 근무 중'(20.5%)이 많았다. '무직 상태'라는 응답자가 32.5%이었던 것에 반해 '구직 중'이라는 응답자는 41.5%로 현재 일을 하고 있어도 구직 중인 응답자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할당표집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공공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비영리 교육시설(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평생교육센터/평생학습센터, 대학취업지원센터, 주민센터, 시민대학 등)을 '이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이용 중'인 응답자를 75%(150명) 표집하였다. 이들은 총 12개의 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평생학습센터)로부터 표집되었다.

〈표 3-10〉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00	50
	여	100	50
연령대	20대	8	4.0
	30대	27	13.5
	40대	65	32.5
	50대	49	24.5
	60대 이상	51	25.5
거주 지역 규모	대도시	109	54.5
	중소도시	76	38.0
	읍면지역	15	7.5
재직 여부	풀타임 근무 중	94	47.0
	일용직/파트타임/시간제 근무 중	41	20.5
	무직 상태임	65	32.5
구직 여부	구직 준비 중	83	41.5
	아님	117	58.5
공공 교육시설 마지막 이용 시기	2020년(이용 중)	20	13.3
	2019년	64	42.7
	2018년	30	20.0
	2017년 이전	36	24.0

가. 성인 진로교육의 필요성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희망하는 은퇴 연령대까지 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낮으며, 체계적으로 진로를 다시 설계하고 있는 응답자는 많지 않아 진로 재설계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성인 진로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먼저 응답자들에게 어느 연령대까지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가에 대해 20~30대와 40~50대는 60대까지 일하기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각각 45.7%, 45.6%), 60대 이상 응답자는 70대까지 일하기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54.9%)(<표 3-11> 참조). 비율이 높지는 않으나 80대 이상의 연령까지 일을 하고 싶다는 응답도 있어 과거에 비해 더욱 장기적인 관점의 진로설계와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표 3-11〉 희망하는 은퇴시기

(단위: %)

구분	40~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전체	12.5	43.5	38.5	5.5	
연령	20~30대	11.4	45.7	37.1	5.7
	40~50대	18.4	45.6	31.6	4.4
	60대 이상	-	37.3	54.9	7.8

자신이 일하기를 희망하는 연령대까지 한 곳의 일자리(재직 중이라면 현재의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20~50대 사이에서는 과반수를 차지하였다(20~30대: 57.1%, 40~50대 55.3%)(<표 3-12> 참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수의 응답자들이 은퇴 연령까지 최소 1번 이상의 진로 재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12〉 은퇴시기까지 한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여부

(단위: %)

구분		그렇다	아니다
전체		51.5	48.5
연령	20~30대	42.9	57.1
	40~50대	44.7	55.3
	60대 이상	72.5	27.5

나. 성인 진로교육의 활용도 및 만족도

성인 진로교육의 활용도 및 만족도에 대해서는 다소 일관적이지 못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먼저 진로 재설계를 위해 진로교육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성인 응답자들의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희망하는 은퇴 연령대까지 한 직장에서 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n=97), 언젠가 필요해질 진로 재설계(예: 이직 등)를 위해 ‘준비하고 있음’이 73.2%이었으나 진로 심리검사나 진로 프로그램 참여, 진로정보 탐색 등 장기적 관점의 진로 재설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표 3-13> 참조). 그나마 높은 비중을 보이는 20~30대조차 절반 이하의 비율만을 보였다. 40~50대와 60대 이상은 그보다도 훨씬 저조하여 10% 미만, 심지어 0%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표 3-13〉 진로 재설계를 위한 준비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음	준비하고 있음								
		진로심리 검사	진로 프로 그램 참여	진로 정보 탐색	외국어 공부	학위 공부	자격증 공부	구인 정보 검색	관련 분야 인맥 구성	취·창 업교육
전체	26.8	11.3	12.4	14.4	28.9	3.1	30.9	29.9	9.3	14.4
연령	20~30대	10.0	35.0	25.0	25.0	35.0	15.0	45.0	35.0	15.0
	40~50대	30.2	6.3	9.5	14.3	30.2	0.0	30.2	28.6	7.9
	60대 이상	35.7	0.0	7.1	0.0	14.3	0.0	14.3	28.6	7.1

진로 재설계를 위해 주로 하고 있는 준비는 ‘자격증 공부’(30.9%), ‘구인 정보 검색’(29.9%), ‘외국어 공부’(28.9%)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응답자들이 은퇴를 희망하는 연령대까지 한 번 이상 진로를 변경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진로 재설계를 위한 진로활동보다는 단기적 관점의 취업 준비활동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로 재설계를 위한 진로활동은 제한적이었지만 정부부처 및 지자체 산하의 지원센터(공공 교육시설)를 통해 진로 서비스를 이용한 적 있다는 응답은 높은 편이었다(<표 3-14> 참조). 응답자들이 공공 교육시설을 통해 진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진로정보 탐색 서비스’(60.7%)를 이용한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진로심리검사 및 평가’(55.3%), ‘진로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52.7%) 및 ‘진로상담·조언·멘토링 등’(52.7%) 순으로 이용한 비율이 높았다.

〈표 3-14〉 공공 교육시설을 통한 진로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구분		진로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진로상담·조언·멘토링 등	진로심리검사 및 평가	진로정보 탐색
전체		52.7	52.7	55.3	60.7
연령	20~30대	60.0	63.3	76.7	56.7
	40~50대	50.0	42.7	48.8	67.1
	60대 이상	52.6	65.8	52.6	50.0

※ 진로 서비스를 이용해 본 응답자의 비율임.

공공 교육시설을 통해 진로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 만족도 역시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다(<표 3-15> 참조). 5점 만점 척도로 조사한 만족도는 ‘진로정보 탐색’(평균 4.61), ‘진로심리검사 및 평가’(평균 4.55), ‘진로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평균 4.53) 및 ‘진로상담·조언·멘토링 등’(평균 4.53) 순으로 높았다.

〈표 3-15〉 공공 교육시설을 통한 진로 서비스 이용 만족도

(기준: 5점 만점)

구분	진로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참여		진로상담·조언·멘토링 등		진로심리검사 및 평가		진로정보 탐색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4.53	0.50	4.53	0.50	4.55	0.50	4.61	0.49	
연령	20~30대	4.60	0.50	4.63	0.49	4.77	0.43	4.57	0.50
	40~50대	4.50	0.50	4.43	0.50	4.49	0.50	4.67	0.47
	60대 이상	4.53	0.51	4.66	0.48	4.53	0.51	4.50	0.51
	F	0.434 (p=0.649)		3.745* (p=0.026)		3.631* (p=0.029) (a>b)		1.717 (p=0.183)	

※ 1 = 매우 불만족, 5 = 매우 만족

각각의 진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반면, 공공 교육시설에서 지원하는 진로 서비스가 진로목표를 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표 3-16> 참조). ‘진로관리(2.84)’,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2.83)’, ‘진로디자인과 준비(2.83)’, ‘진로탐색(2.76)’, ‘일과 직업세계 이해(2.75)’ 순으로 모든 진로목표 영역에서 보통 이하의 만족도가 나타났다.

〈표 3-16〉 공공 교육시설의 진로목표체계별 진로지원 만족도

(기준: 5점 만점)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세계 이해		진로탐색		진로디자인과 준비		진로관리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2.83	.731	2.75	.788	2.76	.786	2.83	.798	2.84	.876	
연령	20~30대	2.71	.860	2.71	.825	2.89	.832	2.83	.954	2.89	1.07
	40~50대	2.83	.703	2.82	.790	2.78	.750	2.83	.763	2.89	.807
	60대 이상	2.90	.700	2.61	.750	2.61	.827	2.80	.775	2.71	.879
	F	0.685 (p=0.505)		1.382 (p=0.253)		1.445 (p=0.238)		0.024 (p=0.976)		0.800 (p=0.451)	

※ 1 = 매우 불만족, 5 = 매우 만족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이 공공 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각각의 단위 진로 서비스(예: 상담, 검사 등)를 비교적 많이 활용하고 있고 만족도도 높지만, 목표의식(예: 진로 재설계)을 바탕으로 이용하는 비율이나 진로교육의 단계별 목표 충족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성인 진로교육이 보다 명확한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성을 갖도록 개선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 공공 교육기관을 통한 성인 진로교육 운영의 장애 요인: 수요자의 니즈에 대응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부족

위의 <표 3-16>을 바탕으로 목표의식에 기반을 두거나 진로교육 목표체계에 적합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로교육이 부족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FGI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전문적인 진로교육 콘텐츠의 부족이 성인 진로교육의 운영과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교육시설을 이용했던 응답자들 역시 조사가 진행되기 약 1년 반 전부터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44.0%에 달했다(<표 3-17> 참조).

<표 3-17> 정부부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교육시설 이용 여부 및 미이용 이유

(단위: 명, %)

이용 여부	빈도	비율	시설 미이용 이유	빈도	비율
2019~2020년도에도 이용 중	84	56.0	-	-	-
2018년을 마지막으로 이용하지 않는 중	66	44.0	접근성이 떨어져서	13	19.7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37	56.1
			담당자/강사의 전문성이 높지 않아서	7	10.6
			기타	9	13.6

이용을 중단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56.1%로 반수 이상이었다. 다음으로는 ‘접근성이 떨어져서’(19.7%), ‘기타’(13.6%)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현재 공공 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본인의 필요와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용자의 비중이 그만큼 높은 것이다.

라. 성인 진로교육 운영체계

어떤 시설을 통해 성인 진로교육이 제공될 때 가장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온라인’(28.5%), ‘주민센터’(27.5%), ‘고용복지플러스센터’(20.5%), ‘평생교육센터’(17.5%) 순으로 나타났다(<표 3-18> 참조).

<표 3-18> 이용하기 편리한 진로지원 및 서비스 제공 시설

(단위: %)

구분	온라인	주민센터	평생교육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시민대학	민간교육시설	기타	
전체	28.5	27.5	17.5	20.5	2.5	0.5	2.5	0.5	
연령	20~30대	25.7	25.7	20.0	17.1	8.6	0.0	2.9	0.0
	40~50대	30.7	24.6	15.8	22.8	1.8	0.9	2.6	0.9
	60대 이상	25.5	35.3	19.6	17.6	0.0	0.0	2.0	0.0

선택한 시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접근이 편리해서’(54.5%)라는 응답이 반수 이상이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25.5%), ‘잘 알려져 있어서’(16.5%)라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온라인과 주민센터, 시민대학을 선택한 응답자들이 접근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평생교육센터를 선택한 응답자들은 잘 알려져 있다는 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선택한 응답자들은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신뢰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9> 참조).

〈표 3-19〉 이용하기 편리한 진로지원 및 서비스 제공 시설 선택 이유

(단위: %)

시설	접근이 편리해서	잘 알려져 있어서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기타
전체	54.5	16.5	25.5	2.5	1.0
온라인	89.5	3.5	1.8	5.3	0.0
주민센터	70.9	14.5	14.5	0.0	0.0
평생교육센터	20.0	40.0	37.1	0.0	2.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7.1	22.0	58.5	2.4	0.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40.0	0.0	60.0	0.0	0.0
시민대학	100.0	0.0	0.0	0.0	0.0
민간교육시설	40.0	0.0	40.0	0.0	20.0
기타	0.0	0.0	0.0	100.0	0.0

현재 운영되는 공공 교육시설 외에 독립된 형태의 성인진로지원 및 서비스 전담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연령대 전반적으로 90% 안팎의 높은 긍정응답이 확인되었다(<표 3-20> 참조).

〈표 3-20〉 독립된 성인진로지원 및 서비스 전담 시설의 필요성

(단위: %)

구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전체		90.5	9.5
연령	20~30대	94.3	5.7
	40~50대	90.4	9.6
	60대 이상	88.2	11.8

이러한 의견은 현장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FGI 응답자들과는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으로, 취·창업 지원 중심인 기존의 관련 센터들 외에 성인의 진로지원에 특화된 교육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현장 의견 기반 성인 진로교육 운영 방안

위에서 수행한 정책 사업 분석 및 FGI와 설문조사를 통해 취업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1) 장기적, 교육적 관점에서 성인 진로교육을 지원할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핵심부처의 부재와 2) 성인의 진로발달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로지원에 대한 현장의 수요가 높음에도 대응하고 있지 못한 현황 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성인 진로교육의 운영을 위해 현장 의견을 취합하고, 연구진 논의와 전문가의 검토의견(2020. 9. 11)을 통해 발전시킨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처 간의 협력과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위해 성인 진로교육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부처들 간의 협의체를 구성한다(예: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산하의 공공 교육기관들은 취업 중심으로 지원해 왔으나 그로 인해 이용자들 간의 진로개발역량의 차이로 인한 맞춤형 서비스가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부처별 역할을 구분하면 <표 3-2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3-21〉 성인 진로교육 운영을 위한 부처별 역할

구분	역할	
부 처 간 협 의 체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성인의 진로개발역량 강화 • 영역: 성인의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세계 이해(이론), 진로탐색, 직업세계 진입 이후 진로 재개발 등을 위한 진로관리 • 대상: 진로목표(취·창업 포함)가 불명확하거나 새로운 진로개발을 희망하는 모든 성인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성인의 취업역량 강화, 취업 후 직업세계에서의 적응 및 정착 • 영역: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실습), 진로디자인과 준비 • 대상: 취업준비에 임할 역량과 마음가짐이 갖추어져 있거나 교육부의 진로개발역량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성인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취약계층 성인의 취업역량 강화, 취업 후 직업세계에서의 적응 및 정착 • 영역: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실습), 진로디자인과 준비 • 대상: 취·창업 취약계층 중 취업준비에 임할 역량과 마음가짐이 갖추어져 있거나 교육부의 진로개발역량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성인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공공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각 센터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러한 의견을 발전시켜 동일 지역권 내에 있는 센터에 각각 역할을 부여하여 진로지원 특화센터, 취업지원 특화센터, 인문학 소양 양성 특화센터 등 필요와 요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제3절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 개정 요구 쟁점 도출

위의 1절과 2절에서와 같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사업 현황과 현장의 의견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3가지 쟁점이 도출되었다.

1. 성인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진로교육 기반 마련 필요

지금까지 성인의 진로교육은 주로 취·창업 지원의 일부로서 진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취·창업 교육을 넘어 자기탐색과 비전 설정, 직업에 대한 개념 확대 등을 위한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현재 제공되는 성인 진로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전문성이나 체계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 간의 진로 결정 수준 격차로 인해 맞춤형 진로교육이 제공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또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관련 사업 역시 가장 절실한 수요계층인 중장년층 및 은퇴(예정)자보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되는 진로교육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2. 교육적 관점에서의 성인 진로개발역량 강화 지원 필요

정부부처의 관련 정책과 지자체의 지원 사업 모두 장기적 관점에서 성인의 진로개발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기보다 취업률 증가를 우선시하는 취·창업 지원이 우선시되어 왔다.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서 성인 진로교육 관련 지원정책과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성인 진로개발역량 강화를 지원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처 역시 부재했다. 부

처 및 지자체의 성인 진로교육 관련 정책 사업 평가 기준이 취업률 중심의 지표로 구성된 탓에 단기적 관점에서 빠르게 취업을 시키기 위한 지원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현장의 센터들도 장기적 관점에서 이용자의 진로개발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교육이나 수요를 반영한 교육보다 취업이 쉽게 될 수 있는 교육이 우선시된다는 점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기준으로 인해 변화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3.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인 진로교육 실행 여건 확보 필요

현장 의견을 통해 중장년층과 고령자 등이 성인 진로교육의 주요 수요자이며, 첫 입직 이후에도 이직과 진로변경 등으로 지속적인 진로 재설계와 관리 등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는 관련 지원 사업과 정책은 단기적으로 단위 프로그램 방식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진로 목표를 달성한 후 다음으로 이어지는 체계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개별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반면, 진로 목표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으로, 관련 프로그램이 체계성과 전문성, 목표성을 갖지 못한 채 이용자의 흥미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시사되었다.

또한 이용자가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하거나 취·창업을 달성하면 지원이 끝나고, 이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추적 관리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각 부처별로 분리되어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탓에 서로 역할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한편, 정작 성인들의 근본적인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은 부족한 불균형 현상이 확인되었다.

제4장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 개정 방안

- 제1절 성인 진로교육 관련 기존 법령 분석
- 제2절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 개정의 주요
방향 및 내용
- 제3절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 개정(안)
구성

제4장 ■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 개정 방안

제1절 성인 진로교육 관련 기존 법령 분석

본 절에서는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의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기존 성인 교육 또는 성인 진로취업지원 관련 법령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 개정이 가능한 대상 법령을 살펴보고 개정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1. 교육 관련 법령과 성인 진로교육

교육 관련 법령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각종 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성인 진로교육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특정하여 정의한 법령은 아직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진로교육법」이 학교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구성 및 적용되고 있기에 학령기 청소년과 대학생의 진로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은 어느 정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직업세계의 변화가 심화되고 성인들의 진로교육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들의 진로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 또한 필요하다(정윤경, 2020). 하지만 성인 진로

교육의 대상 범위가 다양하고 내용적으로 복잡적이고 종합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과 관련된 여러 법령과의 중복이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면 어떠한 법령을 기반으로 추가·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교육기본법」은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으로서, 「교육기본법」 제3조의 학습권에서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에서는 제4조 교육의 기회 균등과 제21조 직업교육에서 모든 국민이 필요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여, 모든 국민이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음의 근거를 간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김도협, 2015; 최영준, 2016). 하지만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법령에 특수교육, 영재교육, 유아교육, 직업교육, 과학·기술교육 및 학교체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진로교육에 대한 내용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성인 또는 모든 국민에게 진로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한편, 「진로교육법」이 2015년 제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상당 부분 마련되었다. 「진로교육법」은 제1조에서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세계에 대한 대처와 소질 및 적성의 실현을 표방하였으며, 진로교육·진로상담·진로체험·진로정보 및 수업의 내용을 정의하고 진로교육의 방법과 지원 기관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다. 다만, 「진로교육법」은 학교 중심의 법체계에서 사실상 학생을 대상으로 규정되어진 법령으로 해석되므로 배타성이 있으며, 제5조 2항에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진로교육 시책 마련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학교 밖의 청소년이나 성인 등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진로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법령으로 보기에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최영준, 2016). 이러한 측면에서 「진로

교육법」이 모든 국민의 전 생애적인 진로개발 관련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정운경, 2020).

또한 성인 교육 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관련하여 「평생교육법」을 검토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에 규정된 국민들의 평생교육 관련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으로, 제2조 1항의 정의에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평생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대상 측면에서 성인 진로교육 실행에 필요한 요소를 「평생교육법」이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국가 및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평생교육이 전국 각지에서 실행되고 있으므로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과 근거를 확보하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 다만 현재 평생교육의 범위 내에 직업능력 향상교육, 즉 직업교육훈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진로교육도 중첩되거나 포함되어 있는 구조로 볼 수 있다(최영준, 2016).

「교육기본법」과 「진로교육법」, 「평생교육법」 등 성인 진로교육의 대상과 내용이 관련 있는 교육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 및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간접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큰 방향 외에 직접적으로 성인 진로교육을 추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령 조항이나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정운경, 2020). 따라서 교육적인 관점에서 성인 진로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 관련 법령의 대상과 내용 개정이 필요하다.

2. 고용 및 직업교육 관련 법령과 성인 진로교육

고용 및 직업교육 관련 법령에서는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거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등 직업능력개발이나 취업지원 등의 관점에서 국민들의 진로교육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법률들이 진로지도나 지원을 다루는 과정에서 진로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이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전형적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으로 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김도협, 2015). 하지만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취업지원 등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성인 진로교육의 대상인 국민들의 생활에서는 진로와 직업이 연계하여 작동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들의 내용을 검토하여 개정 필요성이나 충돌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고용정책 기본법」은 국가가 고용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국민의 직업능력개발과 취업기회 제공,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의 대상은 근로자와 사업주, 구직자 등을 포함하는데, 그중 근로자와 구직자가 진로교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의 대상인 근로자와 구직자는 일반적으로 학교를 졸업한 성인들이므로 근로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상당수의 교육들이 성인 진로교육의 범위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은 직업능력개발훈련(제4장)과 일자리 관점에서 직업교육 또는 취업지원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자기이해 등 진로개발역량의 교육과 강화를 포괄하는 전형적인 진로교육에 비해 제한적인 범위의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약칭: 「직업교육훈련법」)도 국민들의 직업교

육훈련 기회 제공과 질적 향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직업교육훈련법」은 제2조에서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직업교육훈련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7조의 3에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명문화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훈련의 체계적 실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직업교육훈련법」에서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근로자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성인 진로교육의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직업교육훈련법」에서 대상 범위를 결과적으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자 하나, 구체적인 진로교육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진로교육을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김도협, 2015).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 근로자 및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남녀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6조의 2에서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 제15조와 제16조에서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17조의 2에서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직업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근거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에서 일반 여성 및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대상 범위가 여성으로 국한되어져 있고 「직업교육훈련법」과 마찬가지로 진로교육 전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과 「직업교육훈련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성인 진로교육의 대상과 내용이 관련 있는 고용 및 직업교육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성인을 대상으로 진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등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직업교육훈련이나 직업능력개발이 진로교육과 연계 또는 중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진로교육이 다루고 있는 내용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지 못하고 있고, 직업교육 단계에서 진로교육의 어떤 요소를 실행해야 하는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결국 현행 고용 및 직업교육 관련 법령을 통해 국민들의 진로개발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진로교육을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도협, 2015). 따라서 성인들이 자기이해에서부터 진로탐색, 진로설계, 진로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진로개발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 관련 법령에 근거한 진로교육과 직업훈련 관련 법령에 근거한 취업지원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에 따른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3.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 분석 결과 정리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교육 관련 법령과 고용 및 직업교육 관련 법령 중 성인 진로교육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법령을 분석하였다. 교육 관련 법령으로는 「교육기본법」, 「진로교육법」, 「평생교육법」의 내용을, 고용 및 직업교육 관련 법령으로는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교육훈련법」, 「남녀고용평등법」의 진로교육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4-1>과 같다.

〈표 4-1〉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구분	교육 관련 법령			고용 및 직업교육 관련 법령		
	「교육기본법」	「진로교육법」	「평생교육법」	「고용정책 기본법」	「직업교육훈련법」	「남녀고용평등법」
목적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교육제도 운영 등을 규정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 제공, 학생의 소질·적성 실현	평생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기회 제공, 근로자 고용안정 등	직업교육훈련 촉진에 필요한 기본사항 규정	고용에서 남녀평등 기회와 대우 보장, 모성보호, 여성고용 촉진 등
대상	모든 국민	학생	모든 국민	근로자, 사업주, 구직자 등	학생 및 근로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주요 활동 및 내용	학교교육, 특수교육, 영재교육, 유아교육, 직업교육, 과학기술교육 등	진로수업, 진로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진로체험 등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교육 활동	직업능력개발, 인력 양성, 고용관리 및 안정, 직업훈련 등	직업교육훈련기관 설치 운영, 직업교육훈련 계획 및 내용 규정 등	기회보장, 여성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 촉진, 모성보호,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기타 특성	모든 국민의 학습권 및 기회균등 명시	초·중등 교육 위주, 대학 진로교육 관련 1개 조항 삽입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도 존중, 문해교육이 별도 조항으로 추가됨.	고용정책, 일자리 창출, 직업정보 수집관리, 직업능력개발 지원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출처: 「교육기본법」(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50호 2018. 12. 18., 일부개정). URL: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90619&lsiSeq=205788#0000>(검색일: 2020. 9. 15.).
「진로교육법」(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36호 2015. 6. 22., 제정). URL: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51223&lsiSeq=172382#0000>(검색일: 2020. 9. 15.).
「평생교육법」(시행 2020. 6. 4. 법률 제16677호 2019. 12. 3., 일부개정). URL: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604&lsiSeq=211823#0000>(검색일: 2020. 9. 15.).
「고용정책 기본법」(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URL: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526&lsiSeq=218271#0000>(검색일: 2020. 9. 15.).

106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60호. 2018. 12. 18., 일부개정). URL: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90619&lsiSeq=205798#0000>(검색일: 2020. 9. 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0. 9. 8. 법률 제17489호. 2020. 9. 8., 일부개정). URL: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908&lsiSeq=221503#0000>(검색일: 2020. 9. 15.).

관련 법령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교육 관련 법령에서는 성인 진로교육의 실행과 관련한 근거들을 간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성인 대상의 진로교육을 지지할 근거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진로교육법」의 경우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학교 진로교육에 초점을 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 대상으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고, 「평생교육법」의 경우 성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교육을 다루고 있지만 진로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교육 관련 법령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적 관점의 내용들을 갖추고 있어, 성인 진로교육에서 다루는 종합적인 교육 내용을 추가하여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

한편, 고용 및 직업교육 관련 법령에서는 진로교육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취업지원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전형적인 진로교육의 전반을 담고 있는 내용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고용정책 기본법」은 근로자 및 구직자를 초점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은 양성평등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어, 대상으로 볼 때 모든 성인을 아우르기 어렵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고용과 여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취업지원센터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등에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나, 자기이해부터 진로관리에 이르는 전반적인 진로개발역량의 폭넓은 범위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성인 진로교육의 내용을 추가한

법령 개정을 위해서는 교육 관련 법령의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진로교육법」과 「평생교육법」을 개정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예컨대, 성인 진로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볼 때는 현행 「진로교육법」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거나 연계할 수 있으므로 「진로교육법」을 개정하여 성인 대상의 진로교육을 담아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성인 진로교육 대상을 중심으로 볼 때는 현행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성인 교육의 시스템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빠른 확산과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평생교육법」을 개정하여 성인 대상의 진로교육 내용을 평생교육의 범위에서 녹여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성인 진로교육의 대상과 내용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 관련 현행 법령 중 「진로교육법」과 「평생교육법」을 부분 개정하여 성인 진로교육의 확산 및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각 법의 범위와 특색이 다르므로 성인 진로교육 법령 개정이 추구하는 방향과 법 조항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각 법령의 개정안을 도출하고 적합성과 타당성을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 개정의 주요 방향 및 내용

본 절에서는 성인 진로교육의 개념 및 내용에 대한 정리(제2장) 결과와 성인 진로교육 정책 및 현장 수요자 요구 분석(제3장)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 개정의 주요 방향을 정리하였다.

1. 법령 개정의 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은 「진로교육법」을 기반으로 실행되고 있으나, 「진로교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진로교육의 대상이 학생으로 제한되어 있음에 따라 진로교육 정책 및 사업이 대부분 학교 진로교육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직업세계가 복잡해지고 진로 및 취업 환경의 다변화에 따라 성인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정운경, 2020), 성인 대상의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진로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진로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법령으로 「진로교육법」이 이미 제정되었고, 또한 성인이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 전반에 걸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법령으로 「평생교육법」이 이미 제정되었으므로 성인 진로교육을 위한 법령을 새롭게 제정하기에는 법제도의 관점에서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즉,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령의 제·개정 필요성은 확인되고 있으나,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의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 개정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성인 진로교육의 필요와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성인 진로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 성인 진로교육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 포함되어야 한다. 진로교육의 활성화 및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및 실행이 요구되며,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거한 정책적 집행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성인 진로교육에 대한 내용을 관련 법령에 추가함으로써 적극적인 정책 실행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성인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성인 진로교육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론적·실제적으로 성인 진로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함을 확인하였지만 성인 진로교육의 활성화는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성인들이 진로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고, 교육을 실행하는 기관이나 현장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성인 진로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인 진로교육에 대한 내용을 관련 법령에 명문화함으로써 직접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셋째, 성인 진로교육의 지속적인 관리 및 체계적인 실행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인 진로교육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정리되어야 한다. 현재 성인 대상 진로교육은 취업지원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프로그램들이 주로 구성되고 있으며, 교육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성인들의 진로개발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시켜 진로설계 및 재설계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진로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인 진로교육의 내용을 교육 관련 법령에 포함시켜 체계적인 성인 진로교육의 실행을 통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성인들의 진로개발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2. 법령 개정의 주요 방향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의 목적과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실제적인 성인 진로교육 현황과 요구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 개정의 주요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성인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진로교육 기반 마련
- ② 교육적 관점에서의 성인 진로개발역량 강화 지원
- ③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인 진로교육 실행 여건 확보

① 성인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진로교육 기반 마련

현행 「진로교육법」은 학생들에 대한 진로교육을 중점적으로 규정하여 학교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되고 있으나, 학교 교육 단계를 벗어난 성인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중등학교 및 대학교 단계를 벗어난 일반 성인들의 진로개발 요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성과와 효과가 산출될 수 있는 진로교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성인 진로교육 관련 내용이 법령에 추가되어야 한다.

이때 성인 진로교육의 대상은 학교(초·중등 및 대학)에 소속되지 않은 모든 성인을 아우르며, 해당 성인들이 직업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진로탐색, 진로개발, 진로관리 등을 지원하는 것을 성인 진로교육의 영역 및 내용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한편, 학교 진로교육이 직업 및 사회생활에 대한 준비기로서 진로준비에 초점을 두는 것과 달리, 성인 진로교육은 사회와 직업계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성인들이 진로탐색, 진로설계 및 재설계, 진로의사결정, 진로관리 등을 성공적으로 실천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어

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은 성인들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성인 진로교육의 확대 및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성인들은 연령이나 계층, 문화적 배경, 고용상태 등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가지며, 그에 따라 개인 간 또는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의 요구를 보인다. 따라서 성인 대상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은 내용적·방법적으로 다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과 요구에 맞춰 접근성과 선택적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② 교육적 관점에서의 성인 진로개발역량 강화 지원

현행 성인 대상의 진로지원 또는 취업지원 사업과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단기적 취업 성과 위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는데, 교육적·장기적 관점에서 성인들의 진로개발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진로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사회 및 직업세계에서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역량 강화에서부터 최적화된 선택과 적응 능력까지 함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즉, 단기적 취업 성과에만 국한되지 않고 교육적 관점에서 개인의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기적인 진로개발역량 강화 교육이 요구된다.

사회와 직업세계가 복잡해지고 진로취업 환경의 안정성이 낮아짐에 대응하여 다회적인 진로의사결정과 장기적인 진로관리가 요구되고 이를 위한 종합적인 진로개발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다. 현행 성인 대상의 진로취업지원 서비스가 성공적인 취업 준비, 자격취득 등을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성인들이 진로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도가 축적·관리되기 어렵고 진로개발역량의

개선·향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 성인들의 성공적인 진로관리를 위해서는 기초적인 자기이해부터 변화에 대응하는 진로탄력성이나 진로적응성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진로개발역량의 함양과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교육으로는 사회적·직업적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보다 긴 호흡으로 성인들의 진로역량과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전문기관의 성인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도 요구된다. 현행 성인 대상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및 콘텐츠는 당면한 취업 준비에 필요한 기능적 측면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어, 성인들의 평생 진로 전반을 아우르는 콘텐츠가 부족하고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부 및 국가진로교육센터 등의 교육전문기관이 성인 진로와 관련된 전반적인 영역을 재설계하고 교육적 가치를 담보한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며, 교육 및 운영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관리하여 양질의 성인 대상 진로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인 진로교육 실행 여건 확보

현재 성인 진로교육은 법령이나 제도의 기반이 완비되지 않은 측면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에서도 미흡한 측면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다. 성인 진로교육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담당기관이 부재하고,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취업 지원이 실행됨에 따라 연계성 또한 확보되기 어렵다. 따라서 성인들이 다양한 서비스에 참여하되, 단계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고 체계적으로 역량을 관리할 수 있는 성인 진로교육의 환경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성인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단계적 성장과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담보할 수 있도록 교육전문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하에서 성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리하고, 진로특성별·내용영역별·교육대상별 진로교육 로드맵을 구축하여 체계화 및 구체화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행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서비스의 경우 일회적 성격이 강하고 단계 또는 수준에 따른 체계성이나 연계성이 미흡하여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도 후속 프로그램이 연결되지 못해 교육 단절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성인들이 각자의 필요에 맞춰 단계적·지속적으로 진로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인 진로교육 실행 여건을 구축하고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관리·운영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 서비스를 유연하게 선택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접근 및 참여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진로교육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목적과 내용이 상이하고 서비스 간 연계성이 부족하여 종합적인 진로개발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기이해와 진로탐색, 진로설계 등 진로개발역량의 함양과 강화를 위한 진로교육과 자격취득, 취업스킬 확보, 직무역량 강화 등 취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취업지원이 단계적·순환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비스와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한 유기적 체계를 갖추고 상호보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요구된다.

예컨대, 성인들이 진로교육을 통해 자기이해와 진로탐색 등을 실시한 후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업 성과를 획득하고, 직업을 영위하면서 진로 재설계 및 진로변경 등의 요구에 의해 다시 진로교육에 참여하며, 이를 기반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재취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이후 지

속적인 진로관리를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가는 형식의 선순환적인 성인 진로교육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3.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 개정의 주요 방향에 맞추어 법령 개정 시 조항 구성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4-2>와 같다. 단, 전문가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을 위주로 개정 대상이 되는 법령 체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표 4-2> 성인 진로교육 법령 개정 시 조항 구성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목적	이 법은 성인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진로를 선택·계획·준비·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진로교육을 제공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성인 진로교육은 사회와 직업세계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성인들이 자기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 및 재설계, 진로준비, 진로관리 등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요구되는 진로개발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 ② 직업세계와 사회의 다변화에 대응하여 다회의 진로의사결정과 장기적인 진로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함. ③ 성인은 각자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하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 ④ 성인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에 의해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실행되고, 교육전문기관에 의해 양질의 콘텐츠가 개발·보급·운영되어야 함.

구분	내용
내용과 방법	① 성인 진로교육의 주요 영역은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와 준비, 진로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② 성인 진로교육의 주요 방법은 진로수업, 진로상담, 진로검사 및 평가, 진로정보 제공, 취업준비 등의 서비스로 구성됨.
실행 및 운영	① 성인 진로교육은 「진로교육법」에 따른 진로교육기관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시행함. ② 성인 진로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은 상기 진로교육기관 및 평생교육기관에서 개발, 보급하여 운영함. ③ 상기 진로교육기관 및 평생교육기관은 성인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 운영함. ④ 교육부장관은 성인 진로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나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음.

제3절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 개정(안) 구성

본 절에서는 성인 진로교육의 관련 법령 개정의 주요 방향 및 내용을 바탕으로 성인 진로교육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인 진로교육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기존 법령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성인 진로교육 법령에 포함될 주요 내용들과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진로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을 개정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성인 진로교육 법령이 다루어야 할 진로교육의 내용과 활동을 중심으로 볼 때는 현행 「진로교육법」에 성인 진로교육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진로교육을 성인 대상으로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다. 한편, 성인이라는 진로교육의 대상을 중심으로 볼 때는 현행 「평생교육법」에 성인 진로교육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현재 구축된 평생교육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다양한 평생교육의 콘텐츠에 진로교육을 포함시켜 성인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다.

「진로교육법」과 「평생교육법」은 모두 성인 진로교육 실행 및 활성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 개정 시에 양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진로교육법」과 「평생교육법」의 개정(안) 도출을 위해 먼저 연구진이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초안을 구성한 뒤, 2회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수정안을 작성하였다. 1차에서는 법령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2차에서는 다른 법령과 대치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부록 8> 참조). 이후 관계 부처와 수정안에 대한 수차례 검토회의를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형태의 법령 최종안을 완성하였다.

1. 「진로교육법」 개정(안)

「진로교육법」 개정(안)은 현행 「진로교육법」에 포함된 진로교육의 기본 방향과 용어 등을 그대로 따라 학교 진로교육과의 연계성 확보에 용이하며, 기존 진로교육 정책 및 인프라에 성인 진로교육의 내용을 추가하여 실행함으로써 성인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빠르게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진로교육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진로교육의 대상을 학생에서 성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으로 변경하며, 둘째, 성인 대상 진로교육의 내용과 관련된 진로관리의 개념을 포함하며, 셋째, 성인 진로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진로교육법」 개정(안)을 현행 법령과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4-3>과 같다.

<표 4-3> 「진로교육법」 개정(안)

「진로교육법」 (현)	「진로교육법」 개정(안)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인식, 탐색, 준비, 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진로상담”이란 국민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진로교육법」 (현)	「진로교육법」 개정(안)
<p>3.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p> <p>4. “진로정보”란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p> <p>5. “수업”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수업을 말한다.</p>	<p>3. “진로체험”이란 국민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p> <p>4. “진로정보”란 국민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p> <p>5. “진로수업”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4조 및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수업에서 진로와 관련된 수업을 말한다.</p> <p>6. “취업지원”이란 취업·재취업을 앞둔 국민에게 취업정보 및 고용기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p>
<p>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진로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p>	<p>(좌동)</p>
<p>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p> <p>②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p> <p>② 모든 국민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진로교육법」(현)	「진로교육법」 개정(안)
<p>③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p> <p>④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p>	<p>③ 진로교육은 국민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p> <p>④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p>
<p>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p>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발달 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제6조(진로교육 현황조사)</p> <p>제7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p>	(좌동)
<p>제2장 초·중등학교의 진로교육</p> <p>제8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p>	(좌동)

120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진로교육법」 (현)	「진로교육법」 개정(안)
<p>제9조(진로전담교사)</p> <p>제10조(진로심리검사)</p> <p>제11조(진로상담)</p> <p>제12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p> <p>제13조(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p>	
<p>제3장 대학의 진로교육</p> <p>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p>	(좌동)
	<p>제4장 성인의 진로교육 (신설)</p> <p>제15조(성인의 진로교육) ① <u>본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른 진로교육기관, 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이하 “평생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성인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u></p> <p>② <u>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인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p>
<p>제4장 진로교육 지원</p> <p>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이하 "국가진로교육센터"라 한다)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제5장 진로교육 지원</p> <p>제16조(국가진로교육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이하 "국가진로교육센터"라 한다)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진로교육법」(현)	「진로교육법」 개정(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2. 진로정보망 구축·운영 3. 진로심리검사 개발 4. 진로상담 지원 5.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6.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7. 진로전담교사 교육 8.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평가 9.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10.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p>③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2. 진로정보망 구축·운영 3. 진로심리검사 개발 4. 진로상담 지원 5.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6.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7. 진로전담교사 교육 8.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평가 9.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10.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관련 조사 및 연구 수행 11.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관련 연수 개발 및 지원 12.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p>③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p>	<p>제17조(지역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진로교육 및 취업지</p>

「진로교육법」 (현)	「진로교육법」 개정(안)
<p>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의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원 관련 연수 개발·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의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제17조(지역진로교육협의회)</p>	<p>제18조(지역진로교육협의회) (내용 동일)</p>
<p>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과 국민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p> <p>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20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국민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p> <p>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등에 필</p>

「진로교육법」 (현)	「진로교육법」 개정(안)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p> <p>제21조(보호자 등의 참여)</p> <p>제22조(진로교육 콘텐츠)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진로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p> <p>② 교육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청, 교육관련 연구소 등이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p> <p>제23조(시·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p>	<p>제21조(협력 체계 구축 등) (내용 동일)</p> <p>제22조(보호자 등의 참여) (내용 동일)</p> <p>제23조(진로교육 콘텐츠)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진로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p> <p>② 교육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청, 대학, 교육관련 연구소 등이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p> <p>제24조(시·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 (내용 동일)</p>

출처: 「진로교육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36호, 2015. 6. 22., 제정). URL: <https://www.law.go.kr/LSW/lswInfoP.do?efYd=20151223&lsiSeq=172382#0000>(검색일: 2020. 9. 15.).

「진로교육법」의 개정 과정에서 진로교육 및 법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주요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부록 8> 참조). 우선 전문가 A는 「진로교육법」을 개정함으로써 기존 진로교육의 체계에 성인 대상의 진로교육을 추가·연계하여 진로교육의 마인드와 정신을 모든 국민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제시하였고, B는 개정 가능성과 효과성 및 법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진로교육법」 개정의 적합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C는 현재 「진로교육법」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이 누구이든 진

로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진로교육법」에 명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다만, D는 현행 「진로교육법」이 시행 5년 정도를 맞이하여 학교 현장에서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서 개념적으로 전면 개정에 버금가는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성인 진로교육의 내용을 포함하였을 때 제도 시행상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E는 「진로교육법」의 조문이 ‘~할 수 있다’와 같은 임의적 규정이 많아, 진로교육의 확산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여야 한다’와 같은 강행 규정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편, D와 F는 「진로교육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모든 국민’이라는 표현이 헌법 등에서 나타난 범용 표현이기는 하나,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등 대상 범위에서 제한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학습자’라는 표현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개정(안) 작성 시에 부분적으로 반영하였으며, 관계 부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의 최종 개정(안)을 <표 4-3>과 같이 산출하였다.

2. 「평생교육법」 개정(안)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현행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활동의 하나로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을 추가하여, 성인 대상의 교육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을 활용하기 용이하며, 성인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여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빠르게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평생교육의 활동 유형의 직업능력 향상교육에 진로개발역량을 추가하여 범위를 넓히고, 둘째, 성인 진로교

육의 내용을 담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현행 법령과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4-4>와 같다.

〈표 4-4〉 「평생교육법」 개정(안)

「평생교육법」 (현)	「평생교육법」 개정(안)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좌동)</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p> <p>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p> <p>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p> <p>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및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p> <p>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p> <p>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p>

「평생교육법」 (현)	「평생교육법」 개정(안)
<p>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p> <p>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p> <p>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p>	<p>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p> <p>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p> <p>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p> <p>4. “<u>직업능력 및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 교육</u>”(이하 “<u>성인 진로교육</u>”이라 한다)은 <u>성인들이 진로를 인식, 탐색, 준비, 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u></p>
<p>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p> <p>제4조(평생교육의 이념)</p> <p>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p> <p>제6조(교육과정 등)</p> <p>제7조(공공시설의 이용)</p> <p>제8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p>	<p>(좌동)</p>
<p>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p>	<p>(좌동)</p>

「평생교육법」 (현)	「평생교육법」 개정(안)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제11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제1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제15조(평생학습도시)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17조(지도 및 지원)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19조의 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19조의 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제20조의 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제21조의 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제21조의 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좌동)

128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평생교육법」 (현)	「평생교육법」 개정(안)
제22조(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제23조(학습계좌)	
제4장 평생교육사 제24조(평생교육사) 제24조의 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제25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제27조(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좌동)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제29조의 2(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4조(준용 규정)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8조(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좌동)

「평생교육법」 (현)	「평생교육법」 개정(안)
제38조의 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변경등록 등)	
제38조의 3(신고 등의 처리절차) 제6장 문해교육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제39조의 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제4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제40조의 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좌동)
	제7장 성인 진로교육 (신설) 제41조(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① 본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진로교육법」 제15조와 제16조에 따른 진로교육기관은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인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인정	제8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인정
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	제42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 (내용 동일)
제8장 보칙	제9장 보칙

출처: 「평생교육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77호. 2019. 12. 3., 일부개정). URL: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604&lsiSeq=211823#0000>(검색일: 2020. 9. 15.).

「평생교육법」 개정 과정에서 청취한 진로교육 및 법률 관련 전문가들의 주요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부록 8 참조>). 우선 전문가 D와 E, G는 「평생교육법」을 개정하는 것이 기존 성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평생교육 체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진로교육 대상이 되는 국민들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이기 용이하여 법령의 실효성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F는 성인 진로교육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31조 제5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는 「평생교육법」 개정이 적절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다만, C와 H는 진로교육의 본격적인 내용을 「진로교육법」이 담고 있으므로 「평생교육법」에 성인 진로교육 관련 내용을 담아 개정하였을 때 해석과 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C는 「평생교육법」을 개정하더라도 성인 대상 진로교육이 중요함을 선언적인 수준에서만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B는 「평생교육법」 제2조 1항의 정의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직업능력 향상교육’과 진로교육의 중복 또는 포함 관계를 분명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평생교육법」을 개정한다면 전반적인 성인 진로개발역량 강화 지원이라는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석 및 적용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평생교육법」 개정(안) 작성 시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부분적으로 반영하였으며, 관계 부처의 검토 의견 또한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의 최종 개정(안)을 <표 4-4>와 같이 산출하였다.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결론

제2절 시사점

제5장 |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결론

본 연구는 주로 취·창업 지원의 일부로서 추진되어 온 성인 진로교육의 한계를 지적하고, 성인기의 진로교육과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반이 될 법령 개정안의 마련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성인 진로교육의 개념 및 영역을 탐구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련 정책 사업과 현장의 성인 진로교육 관련 요구를 분석하고, 성인 진로교육의 근간이 될 법령 개정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먼저 성인 진로교육의 개념과 영역 탐구를 통해 성인 진로교육의 정의와 대상, 목표체계, 활동 유형 등을 개념화하였다(<표 5-1> 참조).

〈표 5-1〉 성인 진로교육의 개념과 영역

구분	내용
개념(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성인이 자기주도적으로 평생에 걸쳐 진로를 선택·계획·준비·관리하는 진로개발역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활동·프로그램·서비스 모든 사람과 전 생애주기에서 개인의 목표, 맥락과 연관된 적성, 능력, 가치관, 태도, 학습, 직업, 경험을 모두 포괄하는 진로지도 개념 지향

구분		내용
영역	대상	모든 국민이 생애 진로교육의 수혜자로서 특정 연령대만이 아닌 성인 초기부터 은퇴 이후까지의 성인기 모든 연령을 포함
	목표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세계 이해, 진로탐색, 진로디자인과 준비, 진로관리
	활동 유형	진로교육(수업), 진로상담, 진로검사 및 평가, 진로정보 제공

또한 부처 및 지자체의 관련 정책 사업을 분석하여 대부분의 성인 진로교육 관련 정책 사업이 취업지원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기적인 취업지원보다 교육적이고 장기적인 진로교육에 대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관심도가 낮았음을 확인하였다. 전문성과 목표성, 체계성 등이 결핍되고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는 성인 진로교육의 현황에 아쉬움을 느끼는 현장 전문가와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법령 개정을 위한 3가지 쟁점을 도출하였다. 1) 성인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되는 진로교육 기반 마련 필요, 2) 교육적 관점에서의 성인 진로개발역량 강화 지원 필요, 3)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성인 진로교육 실행 여건 확보 필요

이렇게 도출된 쟁점을 바탕으로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 개정의 방향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성인 「진로교육법」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 목적: 성인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진로를 선택·계획·준비·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데 기여
- 기본 방향: 1) 사회와 직업세계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성인들이 자기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 및 재설계, 진로준비, 진로관리 등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요구되는 진로개발역량 강화, 2) 성인이 각자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하는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 부여, 3) 성인 진로교육을 위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에 의해 유기적인 체계를 구

축 및 양질의 콘텐츠 개발·보급·운영

- 운영체계: 1) 「진로교육법」에 따른 진로교육기관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실행, 2) 진로교육기관에서 성인 진로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연수 개발 및 지원, 3) 교육부장관의 운영 지원
- 또한 다음과 같이 「진로교육법」과 「평생교육법」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 「진로교육법」 개정(안): 진로교육의 대상을 학생에서 성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으로 변경하며, 성인 대상의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성인 진로교육의 내용을 담은 조항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를 개정하고, 제15조를 추가함.
 - 「평생교육법」 개정(안): 현행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활동의 하나로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직업능력 및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으로 변경함. 이에 따라 성인 진로교육의 정의를 추가하여 제2조를 개정하며, 성인 진로교육의 내용을 담은 조항으로 제41조를 추가함.

제2절 시사점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성인 진로교육의 필요성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심부처가 부재한 채로 운영되던 성인 진로교육에 목표성과 체계성을 부여할 수 있는 성인 진로교육 목표체계의 안과 유형 등 성인 진로교육의 영역을 정의하였다. 또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법령 개정을 위한 쟁점을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인 진로교육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성인 진로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 확보 및 진로교육 수혜자를 전체 ‘국민’으로 확대**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성인 진로교육 수행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국제 협의체들과 개인 학자들을 통해 오랜 기간 주장되고 확인되어 왔음을 파악하였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가의 경우 이러한 생애진로 관점에 근거한 전 연령에 대한 진로교육 목표체계가 수립되어 있다. 생애진로 관점에 기반한 진로지도, 평생지도는 모든 사람의 진로개발 지원을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진로교육법」 상에서는 진로교육의 대상, 즉 수혜자가 ‘학생’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체 ‘국민’을 아우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렇듯 진로교육 대상이 학생에게 국한하고 있는 점은 문제로서 지적된 바 있다(최영준, 2016). 이에 「진로교육법」 상에서 성인 진로교육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진로교육의 수혜자를 전체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도 필요할 것이다.

- **성인 진로교육 추진을 위한 성취 및 목표체계 수립·개정의 필요성 제시 (진로관리 포함)**

성인에 대한 진로교육의 영역과 내용은 생애지도 관점에 보았을 때 전 연령을 아울러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요소를 포함한다. 그러나 성인과 학생은 입직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지 여부와 생애 발달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성인 진로교육은 입직·전직·창업 등과 연계된 효과적인 직업생활에 대한 진로관리 영역이 특히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학생에 대한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체계만 수립되어 입직 전 단계의 진로디자인과 준비 단계까지만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성인 진로교육 정책 수행 시 성인 진로교육을 고려한 목표 및 성취기준 체계 수립 또는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 **성인 진로교육 실천을 위해 대상에 적절한 진로교육 관련 용어 사용의 필요성 제기**

기존에는 진로교육과 관련된 용어들이 학교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사용하였을 때는 현실적으로 어색하거나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진로체험’의 경우는 예외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성인에 대한 진로교육 유형으로 포함하기 다소 어려울 것이다. 또한 ‘진로교육’은 성인이 학생처럼 수업 형식의 틀이나 교육 과정에 기반한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는 대학생이나 평생교육기관을 통한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용어 사용의 대상이 한정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가 현 시점의 학교 진로교육 중심의 「진로교육법」을 기초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니는 한계점이다. 이에 향후 성인 진로교육의 실천에서는 성인과 학생의 대상별 차이점을 고려한 진로교육 관련 용어 사용이 필요할 것이다.

• **「진로교육법」과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한 성인 진로교육 법령(안) 제시 및 각 법령의 장점과 한계 제시**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 개정 방안 도출을 통해 새로운 성인 「진로교육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법령 중 「진로교육법」과 「평생교육법」을 개정하는 것이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진로교육법」의 개정안은 기존 진로교육의 내용과 체계 안에서 성인 대상의 진로교육을 활성화

화시켜,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을 실현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진로교육을 운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평생교육법」의 개정안은 기존에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미흡했던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인프라와 시스템을 활용하여 접근성 및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른 성인 진로교육의 확산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각 법령의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제시한 장점과 한계를 확인함으로써 최종적인 입법 단계에서 현실적인 여건과 성인 진로교육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령 개정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의의가 있다. 다만, 성인 진로교육의 내용과 대상 특성을 모두 고려함에 따라 성인 진로교육 관련 법령 개정 방안을 하나의 안으로 도출하지 못하고 「진로교육법」과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제시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몇몇 전문가들은 법령 개정 관련 논의 과정에서 「진로교육법」을 주로 개정하되 「평생교육법」에 성인 진로교육이 필요함을 삽입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으나, 양 법령을 모두 개정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측면에서 결론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던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종 입법 단계에 들어가기 전, 진로교육 관련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택 또는 결정할 필요가 있다.

• 성인 진로교육 법령 시행 이후 수요자 중심 운영체계를 위한 방안 제언

부처별로 제한적으로만 협력할 뿐 독자적으로 지원되던 성인 진로교육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체 구축 및 부처별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역할 분담 체계를 제언하였다.

[그림 5-1] 부처 간 협의체 구축 및 부처별 특성에 따른 역할 분담 체계

구분	자기이해와 사회적역량개발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	진로탐색	진로디자인과 준비	진로관리
담당	교육부	이론: 교육부 실습: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또한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공공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특정 영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예컨대 진로지원 특화센터, 취업지원 특화센터, 인문학 소양 양성 특화센터 등 필요와 요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URL: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526&lsiSeq=218271#0000>(검색일: 2020. 9. 15.).
- 고용노동부(2019). 2019년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 고용노동부(2019). 2019년판 고용노동백서. 160-190.
- 고용노동부(2019. 5. 23.). ‘내 삶을 바꾼 「취업성공패키지」’, 10년간 115만명 취업.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2019. 9. 26.). 진로와 취업이 고민인 청년, 우리동네 대학일자리센터에서 해결하세요.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2020. 1. 1.).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1만 4천여 개 훈련 과정 선정.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2020. 4. 7.).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에 기업주도성과 유연성을 강화하는 신규모델 도입.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URL: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disaster/list12.do>(검색일: 2020. 05. 26.).
- 교육과학기술부(2008). 「제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08~2012)」.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
- 「교육기본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50호. 2018. 12. 18., 일부개정). URL: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90619&lsiSeq=205788#0000>(검색일: 2020. 9. 15.).

142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 교육부(2016). 2015 학교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URL: http://www.career.go.kr/cnet/front/commbbs/courseMenu/commBbsView.do?BS_SEQ=131516(검색일: 2020. 05. 25.).
- 교육부(2019). 2020년 평생교육 마우처 지원 기본계획.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
- 교육부(2020). 2020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
- 교육부(2020). 2020년 매치업(Match業) 사업 기본계획(안).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
- 교육부(2020). 2020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안).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0. 1. 15.). 2020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및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설명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8). 교육통계서비스-2018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URL: https://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18&menuSeq=3653&publSeq=24&menuCd=79797&itemCode=02&menuId=0_3&language=(검색일: 2020. 05. 19.).
- 국가법령정보센터(2020a). 「공직 선거법」 제2장 제15조, 2020. 3. 25. 개정. URL: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6091&efYd=20200325#0000>(검색일: 2020. 05. 19.).
- 국가법령정보센터(2020b). 「민법」 제2장 제1절 제4조, 2017. 10. 31. 개정. URL: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8475&efYd=20180201#J4:0>(검색일: 2020. 02. 25.).
- 국가법령정보센터(2020c). 「소년법」 제1장 제2조, 2018. 9. 18. 개정. URL: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487&efYd=20180918#J2:0>(검색일: 2020. 03. 04.).
- 국가법령정보센터(2020d). 「청년기본법」 제1조 제3조, 2020. 2. 4. 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3951&efYd=20200805#0000>(검색일: 2020. 09. 01.).
- 국가법령정보센터(2020e). 「청소년보호법」 제1장 제2조, 2020. 3. 24. 개정.
URL: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5865&efYd=20200324#0000>(검색일: 2020. 05. 19.).
- 국가법령정보센터(2020f). 「형법」 제2장 제1절 제9조, 2018. 12. 18. 개정.
URL: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820&efYd=20181218#J9:0>(검색일: 2020. 02. 25.).
- 국가법령정보센터(2020g). 「진로교육법」 제1장 제2조, 2015. 06. 22. 제정.
URL: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2382&efYd=20151223#0000>(검색일: 2020. 05. 25.).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9). NILE 브로슈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URL: https://www.gwangju.go.kr/index_corona.jsp(검색일: 2020. 08. 26.).
- 광주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 URL: <http://gwangju.work.go.kr/>(검색일: 2020. 08. 26.).
- 권대봉(2006). 성인교육방법론. 서울: 학지사.
- 권두승·조아미(2006). 성인학습 및 상담. 서울: 교육과학사.
- 권태희·서미경·임현선·이성재·정연정(2018). 고용서비스 사업 심층평가 - 공공고용서비스 사업의 품질개선 방안 - (여성일자리 중심으로). 한국고용정보원.

- 권혜자(2017). 취업성공패키지의 유형별 취업성과와 중고령자 정책 시사점. 고용이슈 2017년 5월호, 10(3). 한국고용정보원.
- 김도협(2015). 효율적 진로교육을 위한 새로운 법제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법학연구, 27(1), 25-52.
- 김시진·김정원(2010). 프로틴 경력태도, 무경계 경력태도 및 주관적 경력성공의 관계분석. 대한경영학회지, 23(4), 1899-1915.
- 김은석·이영민·이효남·이만기·천영민·이운선·서현주·조아름(2017). 생애 경력개발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김종상·김남조(2018). 진로준비행동, 직업선택과정에서의 계획된 우연기술의 역할, 진로 적응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여행사 종사원들에 대한 심층면접방법을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30(1), 53-7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9. 8. 법률 제 17489호. 2020. 9. 8., 일부개정). URL: <https://www.law.go.kr/LSW/lInfoP.do?efYd=20200908&lsiSeq=221503#0000>(검색일: 2020. 9. 15.).
- 대구시청 홈페이지. URL: <http://www.daegu.go.kr/>(검색일 2020. 08. 28.).
- 대구시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URL: <https://www.dgonestop.kr/>(검색일 2020. 08. 28.).
- 대전시청 홈페이지. URL: <https://www.daejeon.go.kr/>(검색일: 2020. 08. 26.).
-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홈페이지. URL: <https://www.daejeonsenior.or.kr/>(검색일: 2020. 08. 28.).
- 대학저널기사(2020. 3. 12). 매치업(Match業), 2개 분야 신규 선정... 최대 3억 2천만 원 지원. URL: <http://www.d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791>(검색일: 2020. 06. 26.).

- 부산시청 홈페이지. URL: <https://www.busan.go.kr>(검색일 2020. 08. 31.).
-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URL: <https://www.busanjob.net/>(검색일: 2020. 08. 31.).
- 사회관계장관회의(2018.11.16.).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670870>(검색일: 2020.2.13.)
- 서울경제기사(2019. 6. 9.). 김광현 창업진흥원장 “온라인 창업멘토링시스템 하반기 공개”. URL: <https://www.sedaily.com/NewsView/1VKCO7U9CW>(검색일: 2020. 06. 26.).
- 서울경제tv기사(2020. 1. 29.). “소진공 재창업 교육, 판로·매출 확대... 재기 성공”. URL: <https://www.sentv.co.kr/news/view/567611>(검색일: 2020. 06. 26.)
- 서울시청 홈페이지. URL: <https://www.seoul.go.kr>(검색일: 2020. 09. 01.).
- 서울시50플러스포털 홈페이지. URL: <https://www.50plus.or.kr>(검색일: 2020. 09. 0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0). 『2020년 재창업패키지』 사업시행 및 교육기관 모집·재지정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URL: http://www.sbiz.or.kr/sup/ssup_c01/1212726_1463.jsp?gubun=policycomeback (검색일: 2020. 07. 01.)
- 세종시청 홈페이지. URL: <https://www.sejong.go.kr/>(검색일 2020. 09. 01.).
- 세종시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URL: <http://sejong.work.go.kr/>(검색일: 2020. 09. 01.).
- 여성가족부(2020. 1. 12.). 경력단절여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취·창업 도움 받으세요.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온라인경력개발센터(꿈날개) 운영. URL: http://www.mogef.go.kr/sp/geq/sp_geq_f013.do(검색일: 2020. 07. 02.).
- 온라인청년센터(지자체청년정책). URL: <https://www.youthcenter.go.kr/jynEmpSptNew/jynEmpSptList.do>(검색일: 2020. 07. 02.).
- 울산시청 홈페이지. URL: <http://www.ulsan.go.kr/>(검색일: 2020. 09. 02.).
- 울산시내일설계지원센터 홈페이지. URL: <http://www.usnoinjob.org/>(검색일: 2020. 09. 02.).
- 유현실(2013). 진로탄력성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성인 진로상담에 대한 시사점. *상담학연구*, 14(1), 423-439.
- 이영대·임연·이지연·최동선·김나라(2004). 생애단계별 진로교육의 목표 및 내용 체계 수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재열(2019).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 특성과 진로개발 관계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원·송보라·이주연·이지향·이기학. (2014). 성인의 생애주기별 진로적응 과업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4), 1073-1108.
- 이지연·김재희·이서정(2017). 해외 진로개발 정책과 우리나라 진로교육의 발전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효상(2019). 10년차 직장인 이직횟수 '평균4회'. *월간리크루트*(2019.5.27.) <http://www.hkreru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25> (검색일: 2020. 09. 15.).
- 인천시청 홈페이지. URL: <https://www.incheon.go.kr/>(검색일: 2020. 09. 02.).
- 인천일자리포털 홈페이지. URL: <https://www.incheon.go.kr/job/>(검색일: 2020. 09. 03.).

- 임정연·이영민(2015). 순차분석을 활용한 베이비붐 세대의 직업이동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3), 146-159.
- 잡코리아(2020. 04. 27.). 신입사원 77% '이직경험'...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 http://www.jobkorea.co.kr/GoodJob/Tip/View?News_No=16685&schCtgr=0&schTxt=%EC%9D%B4%EC%A7%81%EA%B2%BD%ED%97%98&Page=1(검색일: 2020. 09. 14.).
- 장석민(2014). 진로교육의 기본개념과 철학 및 실천방향 탐색. 미래교육학연구, 27, 29-56.
- 정부24 홈페이지. URL: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765>(검색일: 2020. 07. 02.).
- 정윤경(2020). 생애 진로개발을 위한 성인 진로교육 지원 과제. The HRD Review, 23(1), 48-67.
- 정윤경·이윤진·방혜진(2018). 성인 평생학습자의 진로교육 지원 방안.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정철영·이유우·김태환·최로미·이승엽·박신희·박선영(2019). 진로교육 성과 평가 관련 선행연구 실태분석. 진로교육연구, 32(4), 331-357.
- 조대연·현영섭(2008). 미국, 캐나다, 호주의 진로교육 전문가 역량 비교 분석. HRD 연구, 10(3), 47-64.
- 조성연·홍지영(2010). 진로상담: 성인 학습자의 인구학적 변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의 관계연구. 상담학연구, 11(3), 1099-1115.
- 조현재(2016). 학습된 무기력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미래교육연구, 6(2), 47-66.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19).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차보고서.
- 중소벤처기업부(2020).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2020). 2020년도 부처별 창업지원사업. 중소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2020. 1. 13.).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및 민간 운영사 찾
는다.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0. 1. 30.). 기술 기반 재창업자 육성을 위한 ‘재도전 성
공패키지’ 참여자 모집.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0. 2. 5.). 혁신형 소상공인 창업의 요람, 신사업창업사
관학교 교육생 모집. 보도자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60호. 2018. 12. 18.,
일부개정). URL: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90619&lsiSeq=205798#0000>(검색일: 2020. 9. 15.).

「진로교육법」(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36호. 2015. 6. 22., 제정). URL: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51223&lsiSeq=172382#0000>(검색일: 2020. 9. 15.).

진미석·윤형한(2003). 성인의 진로개발체제 구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영준(2016). 「진로교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평생학습사회, 12(3),
59-79.

「평생교육법」(시행 2020. 6. 4. 법률 제16677호. 2019. 12. 3., 일부개정).
URL: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604&lsiSeq=211823#0000>(검색일: 2020. 9. 15.).

한국경제기사(2019. 5. 9). 소진공, 소상공인 맞춤형 재창업 패키지 사업 교
육기관 47곳 선정. URL: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5097408i>(검색일: 2020. 07. 03.).

한국산업인력공단(2019).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편방안
연구. (사)한국고용복지연계연구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0). 2020 사업설명회 자료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진로교육학회(2017).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경기: 교육과학사.
- 헤럴드경제(2020. 1. 12). “경단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취·창업 도움 받으세요”. URL: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110000638>(검색일: 2020. 07. 03.).
- 황광훈(2019). 청년층의 이직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22(1), 137-172.

〈국의 문헌〉

- A. Krajnc(1989). Lifelong education for adults: An international handbook. Elsevier. pp.19-21.
- An Official Pennsylvania Government(2020). Overview of Career Development Theories. URL: <https://www.education.pa.gov/Documents/K-12/Career%20and%20Technical%20Education/CEWStandards/Resources/Pedagogy/Overview%20of%20Holland%20Bandura%20and%20Super.pdf>(검색일: 2020. 05. 26.).
- Arthur, M.B.(1994). The boundaryless career: A new perspective for organizational Inquir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5(4), 295-306.
- Australian Government(2020). School to work transitions. URL: <https://www.education.gov.au/school-work-transitions>(검색일: 2020. 05. 19.).
- CEDEFOP(2020). Lifelong Guidance. URL: <https://www.cedefop.europa.eu/en/events-and-projects/projects/lifelong-guidance>(검색일: 2020. 05. 22.).

150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08). Council Resolution on better integrating lifelong guidance into lifelong learning strategies. URL: https://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docs/pressdata/en/educ/104236.pdf(검색일: 2020. 05. 19.).

Education, C. A Position Paper on Career Development and Preparation in California(1974). Sacramento, CA: California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ELGPN(2020a). Career development. URL: <http://www.elgpn.eu/elgpndb/search/metadata/view/188>(검색일: 2020. 05. 22.).

ELGPN(2020b). Career education. URL: <http://www.elgpn.eu/elgpndb/search/metadata/view/189>(검색일: 2020. 05. 19.).

ELGPN(2020c). Career Guidance. URL: <http://www.elgpn.eu/elgpndb/search/metadata/view/190>(검색일: 2020. 05. 22.).

Eurostat(2020). Adult Education Survey. URL:<https://ec.europa.eu/eurostat/web/microdata/adult-education-survey>(검색일: 2020. 05. 19.).

Government of Singapore(2020). Education and Career Guidance. URL: <https://www.skillsfuture.sg/Programmes-For-You/Initiatives/Education-and-Career-Guidance>(검색일: 2020. 05. 19.).

Hall, D. T.(2004). The protean career: A quarter-century journe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5(1), 1-13.

Havighurst, R. J. & Glasser, R.(1972). An exploratory study of reminiscence. *Journal of gerontology*.

Hooley, T., Watts, A. G., Sultana, R. G. & Neary, S.(2013). The 'Blueprint'

- framework for career management skills: a critical exploration.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41(2), 117–131.
- Knowles, M. S.(1980). *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 Krajnc, A.(1989). *Andragogy*. In *Lifelong Education for Adults* (pp. 19–21). Pergamon.
- Levinson, D. J.(1986). A conception of adult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41(1), 3.
- London, M. & Noe, R. A.(1997). London’s career motivation theory: An update on measurement and research.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1), 61–80.
- MCEECDYA(2010). *The Australian Blueprint for Career Development*, prepared by Miles Morgan Australia, Commonwealth of Australia, Canberra. URL: https://docs.education.gov.au/system/files/doc/other/australian_blueprint_for_career_development.pdf(검색일: 2020. 05. 25.).
- McLeod(2013). Erik Erikson. URL: https://docuri.com/download/erik-erikson-psycho-social-stages-simply-psychology_59c1e23ff581710b286a64c6_pdf(검색일: 2020. 05. 26.).
- Moore, Allen B.(1973). *Career Education: The Role of Adult Education*. State Univ., Columbus. Center for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 NCDA(2011: 5–7). *Career Development: A Policy Statement of the National Career Development Association*. <https://www.ncda.org/aws/NCDA/pt/fli/4728/false>(검색일: 2020. 05. 25.).
- NCDA(2020). *National Career Development Guidelines(NCDG) Framework*

Understanding the NCDG Framework. URL: https://www.ncda.org/aws/NCDA/asset_manager/get_file/3384/ncdguidelines2007.pdf
(검색일: 2020. 05. 25.).

Noe, R. A., Noe, A. W., & Bachhuber, J. A.(1990). An investigation of the correlates of career motiv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7(3), 340–356.

OECD(2004). *Career guidance and public policy: Bridging the gap*.

OECD(2020). About PIAAC. URL: <http://www.oecd.org/skills/piaac/about/#d.en.481111>(검색일: 2020. 02. 25.).

Swain, J.(2018). A hybrid approach to thematic analysis in qualitative research: Using a practical example. *Sage Research Methods Cases in Sociology*. <https://dx.doi.org/10.4135/9781526435477>
(2020. 7. 30.).

Savickas, M. L.(1997). Career adaptability: An integrative construct for life-span, life-space the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3), 247–259.

Super, D. E.(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3), 282–298.

Super, D. E. & Knasel, E. G.(1981). Career development in adulthood: Some theoretical problems and a possible solution.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9(2), 194–201.

Super, D. E.(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Brown, D. & Brooks, L. San Fransisco: Jossey–Bass Publisher.

- U. 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2006). An Act To amend the Carl D. Perkins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Act of 1998 to improve the Act. URL: <https://www.govinfo.gov/content/pkg/BILLS-109s250enr/pdf/BILLS-109s250enr.pdf>(검색일: 2020. 05. 19.).
- UNESCO(2016). Recommendation on adult learning and education, 2015. URL: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245179> (검색일: 2020. 05. 28.).
- UNESCO(2020a). Adult education. URL: <http://uis.unesco.org/en/glossary-term/adult-education>(검색일: 2020. 05. 19.).
- UNESCO(2020b). Investing in career guidance. URL: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1414>(검색일: 2020. 4. 1.).
- Watts, A. G.(2009). The relationship of career guidance to VET. National Institute for Careers Education and Counselling(OECD Report). Cambridge: OECD.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education/skills-beyond-school/44246616.pdf>(검색일: 2020. 05. 19.).

부 록

- 부록 1 지자체별 청년층 지원정책
- 부록 2 지자체별 중장년층 지원정책
- 부록 3 지자체별 고령자 지원정책
- 부록 4 센터 실무자 FGI 질문지
- 부록 5 수요자 설문조사 질문지
- 부록 6 FGI 문항 개발
- 부록 7 설문조사 문항 개발
- 부록 8 「진로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개정안의
구성

<부록 1> 지자체별 청년층 지원정책

	사업명	성인 진로교육 목표체계				취·창업 지원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 세계 이해	진로 탐색	진로 디자인과 준비		진로 관리
서울 특별시 (29)	청년인생설계학교	△		△	△		
	청년 프로젝트 투자사업			△		○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					
	청년 활력 프로그램 운영	△		△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운영	△		△	△	○	
	체류형 귀농지원사업		○			○	
	청년활동지원					○	
	기술교육원 청년 대상 직업훈련 확대		○	△		○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	△	○	
	서울일자리+센터 통합지원서비스 강화	△	○	△	△	△	○
	사회혁신 청년활동가		△	△	△		○
	청각장애인 취업면접 지원						○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			△		○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		△		○
	여성복지시설 현장활동가		△		△		○
	서울 MICE 뉴딜일자리		△		△		○
	청년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	△			○
	청년교류공간	△					
	취업날개 서비스 지원						○
	서울형 뉴딜일자리				△		○
공공근로일자리		△				○	

158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성인 진로교육 목표체계					취·창업 지원	
	사업명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 세계 이해	진로 탐색	진로 디자인과 준비		진로 관리
	마장축산물시장부처스 육성(지역주도청년일자리-1)		△		△		○
	도시청년 이동식플라워마켓 창업지원(청년일자리-2)		△		△		○
	유망예술지원사업		△			△	○
	문화예술매개자 육성		○		△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						○
	핵심사업 홍보콘텐츠 제작 참여 청년 스타트업		△				○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사업						○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						○
부산광역시 (28)	청년 두드림 센터	△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	○	○	○		○
	창업기업 인턴 지원						○
	취업준비망			△	△		
	부산청년일자리 해커톤 아이디어 경진대회				△		○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형 훈련 사업		○		△		○
	대학 학과별 맞춤형 취업지원		○		△		○
	B-스타트UP 청년인재 발굴 매칭 사업		△		△		○
	부산청년 파란일자리 사업		△		△		○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			○
	부산일자리정보망				△		

사업명	성인 진로교육 목표체계					취·창업 지원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 세계 이해	진로 탐색	진로 디자인과 준비	진로 관리	
부산 공공기관 지역인재 육성 및 취업지원		△	△			○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부산청년 옹기종기 사업)	△					
부산청년 청고마비 사업 (청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
부산청년주간 운영			△			
동남권 대학생 CAM 기술 경진대회						○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	○
부산청춘 드림카						○
청년문화 네트워크				△		○
청년 해외취업 지원		△		△		○
메이커스튜디오(Maker Studio) 운영						○
기술창업지원						○
창업지원주택 건립						○
청년농업인 양성교육					○	○
부산창업카페 운영	△		△			
엔젤스타트업카페 운영						○
크리에이티브 샵 운영						○
부산청춘 희망카						○
인천광역시 (25)	1석5조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					○
	「인천 Young MICE 리더」 육성		○		△	○
	구직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

160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사업명	성인 진로교육 목표체계					취·창업 지원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 세계 이해	진로 탐색	진로 디자인과 준비	진로 관리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	○	○	○	○		○
부업대학생 운영		△				
인천 청년 면접지원 서비스						○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		△			
진로심리상담센터 운영 지원	△	△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청운대 인천캠퍼스				△		○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 운영				△		○
e스포츠 등 게임콘텐츠 산업 육성		○	△			○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및 지원 사업		○		△		○
청년예술인 생애처음 지원사업						○
2019 국제기구-MICE 커리어 페어		○				
인천 마이스업체 청년 인턴십 운영		△	△			○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 환경개선 지원						○
국제기구 청년인턴십(직업체험) 프로그램			△			○
예비디자이너 창업랩 '창작하는대로' 운영						○
청년창업 챌린지					△	○

	성인 진로교육 목표체계					취·창업 지원	
	사업명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 세계 이해	진로 탐색	진로 디자인과 준비		진로 관리
	인천관광 콘텐츠 공모					○	
	인천콘텐츠코리아랩					○	
	창업카페 운영	△		△			
	창업 동아리 지원			△		○	
	청년창업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	
대구광역시 (36)	대구청년 도시탐험대			△		○	
	대구청년 소셜리빙랩			△		○	
	대구청년 응원카페 상생사업	△					
	대구청년 NGO 활동 확산사업		○	△		○	
	대학생 국내인턴 사업		△	△		○	
	지역대학 협력강화 사업 [대학 리빙랩(주민연합형) 지원사업]			△		○	
	청년 내일(My job & Tomorrow) 학교		○	△			
	청년사업장 & 청년 잇기 프로젝트 'YES! 매칭'			△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대구형 청년수당)					○	
	취업새내기 지원사업 희망웃장					○	
	미래산업 맞춤형 로봇엔지니어 양성사업		○		△	○	
	신진예술가 육성 Ten-Topic Project					△	○
	차세대 문화예술기획자 양성		○		△	○	
	청년예술가 육성 지원				△	○	

162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사업명	성인 진로교육 목표체계					취·창업 지원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 세계 이해	진로 탐색	진로 디자인과 준비	진로 관리	
2019년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		○
기능기술인력 청년 취업 지원사업						○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
스타기업 히어로 양성사업		○		△		○
대학생 해외인턴 지원사업			△			○
청해진대학 지원사업		○	△			○
C-Seed 청년 스타트업 육성사업				△		○
대구스타트업리더스포럼					△	○
의료분야 연구자 창업 지원사업					△	○
C-corridor						○
053창업카페	△				○	
4차 산업혁명 청년체험단			△			○
기업애로해결 디자인코디네이터 양성사업		○		△		○
데이터기반 기술 지역주도형 스타트업 발굴						○
의료창업 및 취업지원 사업						○
재창업 지원사업					○	○
전통시장 창업 인큐베이팅 팝업스토어(누구나가게) 운영						○
청년 팝업레스토랑				△		○
콘텐츠코리아랩[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		○

	성인 진로교육 목표체계					취·창업 지원	
	사업명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 세계 이해	진로 탐색	진로 디자인과 준비		진로 관리
	업사이클아트 청년 창업 프로젝트						○
	청년 소셜벤처 육성사업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 주요 지원사업						○
	워킹맘 자녀 청년여성 멘토링 사업		△				○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	○	○	△	○		○
	GTEP: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		○		△		○
	청년JOB희망팩토리 사업	△	○	△	△		
	NEET 청년 발굴 및 지원	△					
	新광주형 청년내일채움 공제 지원						○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사업		△	△			○
	청년고용 우수 중소기업 지원						○
광주광역시 (20)	청년창업·청년취업 winwin 프로젝트						○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		△		△		○
	청년문화 일자리 지원사업				△		○
	마을청년활동가 운영		△	△			○
	청년 체육 인재 육성				△	△	○
	예비 청소년지도자 발굴·육성						○
	청년문화기획자 양성학교 운영		△				○
	글로벌 청년취업 지원		△		△		○
	공유재산활용 사회실험 청년창업 지원		△				○

164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성인 진로교육 목표체계					취·창업 지원	
	사업명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 세계 이해	진로 탐색	진로 디자인과 준비		진로 관리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약정						○
	광주청년창업펀드 운영 지원						○
	청년창업 특례보증						○
대전광역시 (28)	청년취업 희망카드						○
	청년진로 콘서트			○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청년 필(Feel)살기”			△			○
	청년의 학교 운영			○			○
	2019 청기올려 사업		△	△			○
	대전형 코업(co-op)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청년인턴)		△	△			○
	대전일자리카페 “꿈터” 운영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
	청년 일자리 매칭지원 내손을 잡아					△	○
	청년인력관리센터 운영					△	○
	대학 일자리센터 운영	○	○	○	○		○
	청년 거점 공간 운영	△					
	일자리 종합 박람회		△		△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
	대전형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						○
	청년예술인 정착 및 양성프로젝트					△	○

	성인 진로교육 목표체계					취·창업 지원	
	사업명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 세계 이해	진로 탐색	진로 디자인과 준비		진로 관리
	청년예술인 창작 및 대관료 지원						○
	예술창작활동 지원						○
	차세대 아티스타 지원						○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근로자 채용		△				○
	맞춤형 코디네이터 운영		△	△			○
	대전드림(Dream) 과학인재양성		△	△	△		○
	취업연계 IP지역인재양성		○		△		○
	청년 해외교류 지원 사업	△		△			○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					○
	해외취업 멘토링 콘서트			○	△		
	고교창업 인재육성 특성화사업						○
	청년창업 지원카드						○
울산광역시 (13)	지역기업-청년교류 활성화 사업			○			○
	울산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청년 취업지원 캠프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함께놀자공동체				△		○
	희망이음 프로젝트 울산 서포터즈		△	○			○
	2030 U-Dream		○	△			○
	울산청년 일+행복 카드 지원사업						○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일						○

166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성인 진로교육 목표체계					취·창업 지원
	사업명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 세계 이해	진로 탐색	진로 디자인과 준비	
	자리 지원사업					
	캠퍼스 리크루트 투어			△		
	지식기술 청년 창업지원 사업					○
	청년CEO 육성사업			△		○
	톡톡스트리트 운영					○
	톡톡팩토리 운영					○
세종 특별 자치시 (10)	2019년여성장애인교육 지원사업	△				
	찾아가는 일자리 채용설명회				△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	○
	아트컬리지 문화기획학교 운영		○			○
	세종시 일자리창출 코디네이팅			△		○
	지역청년 인적자원 특화 취·창업 지원		△		△	○
	선도적 농업리더 영농정착 지원사업					○
	청사진 프로젝트		△		△	○
	2019 세종농업 영리더 아카데미 과정		○			○
	세종 청년창업 챌린지랩 운영					○

<부록 2> 지자체별 중장년층 지원정책

	사업명	성인 진로교육 목표체계					취·창업 지원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 세계 이해	진로 탐색	진로 디자인과 준비	진로 관리	
서울 특별시 (10)	50+보람일자리			△			△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				△
	서울50+인턴십(파트타임형)		△	△			△
	서울50+뉴딜인턴십(풀타임형)		△	△			△
	굿잡5060					△	
	50+적합일자리						△
	JUMP-UP 5060		△				△
	공유사무실						△
	50+단체지원						△
	양코르전직지원			△			
부산 광역시 (7)	조선기자재 교육훈련센터	△					
	부산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	△				△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자금(일자리혁신자금)						△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형훈련기관	△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운영						△
	부산일자리종합센터운영						△
부산시 일자리박람회 개최						△	
인천 광역시	중장년 특수용접 양성과정	△	△				

168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사업명	성인 진로교육 목표체계				취·창업 지원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 세계 이해	진로 탐색	진로 디자인과 준비		진로 관리
(14)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	△	△				△
	온라인 취업매칭 platform 구축 프로젝트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				△
	모두 zone (좋은) 신중년 일자리 사업		△				△
	산단별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도입	△					
	생활자금지원	△					
	강화일자리잡다 강화산단론칭프로젝트	△					△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사업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					△
	관광안내소 운영						△
	공원녹지산림분야 공공일자리 운영						△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	△	△				
	부리산업 평생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대구광역시 (7)	구인구직지원상담					
심층상담실							△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
중장년 일자리 소통 커뮤니티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				△
신중년 Biz 컨설팅 일자			△				△

	사업명	성인 진로교육 목표체계				취·창업 지원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 세계 이해	진로 탐색	진로 디자인과 준비	
	리 창출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			△
광주광역시 (2)	더불어 일자리 지원		△			△
	중장년기술창업센터			△		△
대전광역시 (4)	50+인생 재설계(전환지원)			△		
	50+경력개발(성장지원)	△		△		
	50+문화조성(조화로운삶지원)	△				
	50+특강			△		
울산광역시 (20)	중장년층 재취업 훈련사업		△	△		△
	신중년 구인발굴단 운영					△
	신중년 경력활용 주거환경 개선사업		△			△
	신중년 경력활용 병원아동돌봄서비스사업		△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
	중장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
	신중년활력 UP교육	△		△		
	신중년 IT교육	△		△		
	지역활동가교육	△		△		
일+참여교육	△		△			

170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성인 진로교육 목표체계					취·창업 지원
	사업명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 세계 이해	진로 탐색	진로 디자인과 준비	
	창업일자리교육	△		△		
	직업 능력 개발 교육	△		△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					
	신중년 일자리 협력망 구축사업					
	채용설명회					△
	은퇴설계박람회 지원					△
	구인처 및 구직자 개발 연계사업					△
	찾아가는 일자리 이동상담					△
	찾아가는 노후 설계 교육					△
세종특별자치시 (10)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			△
	신중년 경력형일자리사업		△			△
	취업준비교육			△		△
	정보화교육	△		△		
	생애재설계교육			△		
	제3섹터창업교육	△		△		
	직종교육			△		
	위탁교육			△		
	평생교육			△		
	사회적일자리사업		△			

<부록 3> 지자체별 고령자 지원정책

	사업명	성인 진로교육 목표체계				취·창업 지원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 세계 이해	진로 탐색	진로 디자인과 준비	
서울 특별시 (12)	시니어인턴십		△			△
	시니어클럽			△		△
	이야기할머니사업	△				△
	시니어직업능력학교			△		△
	내일행복학교	△		△		
	찾아가는교육			△		
	노인대학운영지원			△		
	어르신아카데미운영(공모사업)			△		
	공익활동	△	△			△
	사회서비스형		△			△
	시장형사업단		△			△
	취업알선형사업단		△			△
부산 광역시 (6)	공익활동	△	△			△
	사회서비스형		△			△
	시장형		△			△
	취업알선형		△			△
	시니어인턴십		△			△
	고령자친화기업		△			△
인천 광역시 (8)	공익활동	△	△			△
	재능나눔활동		△			△
	시장형사업단		△			△
	인력파견형사업단		△			△

172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사업명	성인 진로교육 목표체계				취·창업 지원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 세계 이해	진로 탐색	진로 디자인과 준비	
	고령자친화기업		△			△
	시니어인턴십		△			△
	기업연계형		△			△
	공공근로사업					△
대구광역시 (4)	공익활동형	△	△			△
	시장형		△			△
	취업알선형		△			△
	사회서비스형		△			△
광주광역시 (4)	공익활동형	△	△			△
	시장형		△			△
	취업알선형		△			△
	사회서비스형		△			△
대전광역시 (4)	공익활동	△	△			△
	사회서비스형		△			△
	시장형		△			△
	취업알선형		△			△
울산광역시 (11)	울산60+ 스마트폰활용 지도사 자격증 과정			△		
	울산60+ 시니어 통합안진교육 전문가과정			△		
	울산60+ 수납전문가 2급 자격증과정			△		
	울산60+ 향기디자이너 양성과정			△		
	울산60+ 죽공예 전문가			△		

	사업명	성인 진로교육 목표체계				취·창업 지원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 세계 이해	진로 탐색	진로 디자인과 준비	
	양성과정					
	울산60+ 시니어 1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		
	베이비붐 및 노인세대 행복만들기	△				
	공익활동	△	△			△
	사회서비스형		△			△
	시장형		△			△
	취업알선형		△			△
세종 특별 자치시 (4)	공익활동	△	△			△
	사회서비스형		△			△
	시장형		△			△
	취업알선형		△			△

<부록 4> 센터 실무자 FGI 질문지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 FGI

기관명		담당 직무	
응답자 성별	1. 남 2. 여	응답자 연령대	1. 20~30대 2. 40대 3. 50대 4. 60대 이상
지역	(시/도)	지역 규모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도서읍면산간지역

1. 센터 현황

1-1. 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2. 센터의 부서조직 및 인력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센터 조직도와 업무분장표를 제시해 주세요.

1-3.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주요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별 및 연령,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배경, 주요 방문 목적, 주요 취업 희망 분야 등)

1-4. 센터 방문자들이 주로 요구하는 교육은 무엇입니까?

2.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 현황

- 2-1. 센터에서 핵심적으로 센터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2-2. 센터 방문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는 무엇이며, 해당 서비스는 정부부처의 어떤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까?

- 2-3. 센터 방문자들이 이용하는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4. 센터 방문자들이 진로 및 취업 서비스 이용 중 아쉬움을 표하는 부분이나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2-5. 센터 차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정부부처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성인 진로 서비스에 대한 요구 및 필요성

<이제부터의 질문은 취업지원을 제외한, 진로 서비스 관점에서 응답해 주세요.>

176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 진로 서비스: 이용자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주변 환경을 탐색하며 평생에 걸친 진로를 설계하고, 선택을 하기 위한 역량을 쌓도록 돕는 것을 의미함.	
※ 진로 서비스의 목표 -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 일과 직업세계 이해 - 진로탐색 - 진로디자인과 준비 - 진로관리	※ 진로 서비스의 유형 - 진로 프로그램 - 진로상담 - 진로정보 - 진로검사 및 평가

3-1. 성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진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목표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2. 귀하의 소속 센터에서는 목표에 따라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시를 부탁드립니다.

목표	제공 여부	예시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세계 이해		
진로탐색		
진로디자인과 준비		
진로관리		

3-3. 귀하의 소속 센터에서는 다음 유형의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절차 및 방식으로 제공하고 계십니까?

구분	제공 여부	절차 및 방식	주 이용 집단
진로 프로그램			
진로상담			
진로정보			
진로검사 및 평가			

3-4.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5. 현재는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할 계획이시라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실 예정입니까?

3-6. 진로 관련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성인 집단은 누구이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
까?

4. 성인 진로교육 운영체계

4-1. 3번에서 응답한 성인 대상 진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처가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2. 성인 대상 진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예: 센터 등)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178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4-3. 기존에 있는 조직이 성인 대상 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떤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라 보십니까?

5. 성인 진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정책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6. 성인 진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자유로운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5> 수요자 설문조사 질문지

성인진로지원 설문조사

본 설문은 성인 대상 진로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성인들이 필요로 하는 진로 서비스와 그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현장의 요구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 000-000-0000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교육시설 이용 경험】

SC1. 귀하께서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교육시설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공 교육시설: 정부 및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공공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비영리 교육시설.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과 관련 정보의 제공, 진로교육·상담·지도, 취업교육·상담·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예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평생교육센터/평생학습센터, 대학취업지원센터, 주민센터, 시민대학

- 1) 한 번도 이용한 적 없다 (→문4로 이동) (⇒ 50명으로 제한)
- 2) 이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이용 중이다 (→SC2로 이동) (⇒ 150명으로 제한)

SC2. 귀하께서는 이용하신 시설은 무엇입니까?

가장 최근에 이용하신 시설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1로 이동)

- 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50명으로 제한)
-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50명으로 제한)
- 3) 평생교육센터/평생학습센터 (⇒ 50명으로 제한)
- 4) 그 외(대학취업지원센터, 주민센터, 시민대학 등) (⇒ 30명으로 제한)

문1. 귀하께서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교육시설을 언제 이용하셨습니다?

- 1) 2020년(→문3으로 이동)
- 2) 2019년(→문3으로 이동)
- 3) 2018년(→문2로 응답 후 문3으로 이동)
- 4) 2017년 이전(→문2로 응답 후 문3으로 이동)

180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문2. 과거에 이용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접근성이 떨어져서
- 2)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 3) 담당자/강사의 전문성이 높지 않아서
- 4) 기타 ()

문3. 교육·학습·상담 등을 목적으로 아래의 시설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 보셨다면 만족도를 평가하고, 답지에 없는 시설은 기타에 적어서 응답해 주세요.

시설 유형	이용 경험 유무		('예'에 응답한 경우만)					
			접근성		담당자의 전문성		교육 서비스의 다양성	
	예	아니요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평생교육센터/평생학습센터								
대학취업지원센터								
주민센터								
시민대학								
기타 ()								

문4. 교육·학습·상담 등을 목적으로 민간 교육시설을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민간 교육시설: 학원, 교육 컨설팅 업체, 민간 교육훈련 기관 등

- 1) 그렇다 (→문5 응답 후 문6으로 이동)
- 2) 아니다 (→문6으로 이동)

문5. 민간 교육시설을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 2) 접근성이 좋아서
- 3)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 4) 담당자/강사의 전문성이 높아서
- 5) 기타 ()

【진로 재설계의 필요성】

문6. 귀하께서는 어느 연령대까지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하십니까?

- 1) 40~50대 2) 60대 3) 70대 4) 80대 이상

문7. 그 연령대까지 한 곳의 일자리(재직 중이라면 현재의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1) 그렇다 (▶문9로 이동) 2) 아니다 (▶문8에 응답 후 문9로 이동)

문8. 언젠가 필요해질 진로의 재설계(예: 이직 등)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모두 선택)

- | | |
|-------------------|---------------------------------|
| 1) 진로상담·멘토링·조언 | 2) 검사 등을 통한 진로적성/흥미 탐색 |
| 3) 진로 프로그램 참여 | 4) 직업·학과·교육훈련 정보 등 진로정보 탐색 |
| 5) 외국어 공부 | 6) 학위 공부 |
| 7) 자격증 공부 | 8) 구인정보 검색 |
| 9) 관련 분야 인맥 구성 | 10) 취·창업교육 |
| 11)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음 | 12) 기타 () |

【성인 대상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

문9. 공공 교육시설을 통해 다음의 진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 보셨다면 만족도를 평가하고, 답지에 없는 서비스는 기타에 적어서 응답해
주세요. (※ SC1의 1번 응답자 ⇨ 문항 건너뛰)

진로 서비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주변 환경을 탐색하며 평생에 걸친 진로를 설계하고, 선택을 하기 위한 역량을 쌓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서비스. 진로교육, 진로상담, 진로심리검사 및 평가, 진로정보 제공 등을 포함함.

182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항목	이용 경험 유무		(☞ '예'에 응답한 경우만)				
	예	아니 요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직업세계의 변화에 적응하고,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대응할 역량을 기르는 교육							
희망하는 진로를 찾아 생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조언·멘토링 등							
적성, 흥미, 역량 등의 진로심리검사 및 평가							
직업, 노동시장, 진로경로, 교육훈련과정 등의 정보							
기타()							

문10. 현재 공공 교육시설에서 성인들을 위한 다음 항목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
원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족	매우 불만 족
자아이해,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역량 개발 (직업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기이해, 타인과의 상호작용, 네트워크 능력 등)					
직업세계의 이해 및 직업의식 형성 (직업 및 노동시장과 관련한 흐름과 동향 등의 파악·이해, 직업의식 고취 등)					
직업·진로정보 탐색 및 교육기회 탐색 (직업정보 및 취업·이직·전직 관련 정보 등의 탐색·수집·활용 방법 및 관련 역량 증진 등)					
진로의사결정능력 개발 및 진로설계능력 강화 (직업생활의 시기와 단계, 이직·전직·창업·퇴직 등의 변화 요인을 고려한 진로계획 수립 및 실행 준비 등)					
진로관리 및 실제적 변화 대응 능력 향상 (직업세계의 적응 및 위기·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진로적응성·진로탄력성 강화 및 자기주도적 진로관리 역량 및 전략 형성 등)					

문11. 향후 성인들을 위한 다음 항목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84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항목	필요성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자아이해,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역량 개발 (직업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기이해, 타인과의 상호작용, 네트워크 능력 등)					
직업세계의 이해 및 직업의식 형성 (직업 및 노동시장과 관련한 흐름과 동향 등의 파악·이해, 직업의식 고취 등)					
직업·진로정보 탐색 및 교육기회 탐색 (직업정보 및 취업·이직·전직 관련 정보 등의 탐색·수집·활용 방법 및 관련 역량 증진 등)					
진로의사결정능력 개발 및 진로설계능력 강화 (직업생활의 시기와 단계, 이직·전직·창업·퇴직 등의 변화 요인을 고려한 진로계획 수립 및 실행 준비 등)					
진로관리 및 실제적 변화 대응 능력 향상 (직업세계의 적응 및 위기·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진로적응성·진로탄력성 강화 및 자기주도적 진로관리 역량 및 전략 형성 등)					

문12. 어떤 시설을 통해 진로지원 및 서비스가 제공될 때 귀하께서 가장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1) 온라인 | 2) 주민센터 | 3) 평생교육센터 |
| 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5)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6) 시민대학 |
| 7) 민간 교육시설 | 8) 기타 () | |

문13. 위에서 해당 시설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접근이 편리해서 2) 잘 알려져 있어서 3)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4)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5) 기타 ()

문14. 앞에서 제시한 공공의 교육시설과는 독립적으로 성인을 위한 진로지원 및 서비스를 전담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 1) 그렇다 2) 아니다

BG. 응답자 특성

성별	1. 남 2. 여	연령대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6. 70대 이상
거주 지역	(시/도)	거주 지역 규모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지역 4. 도서·산간지역
재직 여부	1. 풀타임 근무 중 2. 일용직/파트타임/시간제 근무 중 3. 무직 상태임	구직 준비 여부	1. 구직 준비 중 2. 아님

※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6> FGI 문항 개발

초안	수정안	전문가 의견
1. 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센터 방문자들의 특징이나 주요 요구와 관련되는 특성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1. 센터 현황 1-1. 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4. 센터 방문자들이 주로 요구하는 교육은 무엇입니까?	A - 1번 문항을 지역/환경적 특성, 방문자 특성, 주요 요구의 세 문항으로 구분 B - 문항의 순서를 센터 상황 -> 방문자로 이어지도록 수정 C. 연구진 - 지역별 센터 이용자들의 주요 요구 분석
2. 센터의 부서 및 인력구성은 어떻게 이뤄져 있습니까?	1-2. 센터의 부서조직 및 인력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센터 조직도와 업무분장표를 제시해 주세요.	A - 센터 조직도와 업무분장표를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
3. 센터에서 핵심적으로 성인들에게 제공하는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 현황 2-1. 센터에서 핵심적으로 센터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 -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 현황을 먼저 제시한 뒤, 필요한 서비스와 대상을 묻는 것이 답변하기 용이함.
4.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주요 특징은 무엇입니까?(성별 및 연령,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배경, 주요 방문 목적 등)	1-3.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주요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별 및 연령,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배경, 주요 방문 목적, 주요 취업 희망 분야 등)	A - 4번 문항이 1번 문항과 겹치는 부분이 있음. C - 센터 이용자의 주요 취업 희망 분야 등의 분석 필요
5. 센터 방문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는 무엇이며, 해당 서비스는 정부부처의 어떤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까?	2-2. 센터 방문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는 무엇이며, 해당 서비스는 정부부처의 어떤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까?	D - 정부의 정책에 대한 예시를 좀 더 많이 들어주면 좋을 듯함. C - 부처별 지원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 있음.
6. 방문자들이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 중 아쉬움을 표하는 부분이나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3. 센터 방문자들이 이용하는 진로 및 취업지원 서비스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4. 센터 방문자들이 진로 및 취업 서비스 이	B - 가장 반응도가 높은 서비스를 확인한 뒤 그 이유를 묻고, 그 뒤로 개선점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연구진 - 정부부처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

초안	수정안	전문가 의견
	<p>용 중 아쉬움을 표하는 부분이나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p> <p>2-5. 센터 차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정부부처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에 대한 질문 추가</p>
<p><이제부터의 질문은 취업지원을 제외한, 진로지도 관점에서 응답을 해주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진로지도: 학습자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주변 환경을 탐색하며 평생에 걸친 진로를 설계하고, 선택하기 위한 역량을 쌓도록 돕는 것을 의미. 진로 관련 조언, 상담, 역량평가, 멘토링, 교수학습 등을 포함.</p> </div> <p>7. 성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진로 서비스에는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p>7-1. 귀하께서 소속되신 센터에서는 성인들에게 어떤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십니까?</p> <p>7-2. 귀하께서 소속되신 센터에서는 성인들에게 어떤 절차 및 내용으로 진로상담을 운영하고 계십니까?</p> <p>7-3. 귀하께서 소속되신 센터에서는 성인들에게 어떤 종류의 진로체험을 운영/제공하고 계십니까?</p> <p>7-4. 위의 진로 관련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성인 집단은 누구이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p>	<p>3. 성인 진로 서비스에 대한 요구 및 필요성 <이제부터의 질문은 취업지원을 제외한, 진로 서비스 관점에서 응답해 주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진로 서비스: 학습자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주변 환경을 탐색하며 평생에 걸친 진로를 설계하고, 선택하기 위한 역량을 쌓도록 돕는 것을 의미함.</p> <p>※진로 서비스의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 일과 직업세계 이해 - 진로탐색 - 진로디자인과 준비 - 진로관리 <p>※진로 서비스의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수업 - 진로상담 - 진로정보 - 진로검사 및 평가 </div> <p>3-1. 성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진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목표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p> <p>3-2. 귀하의 소속 센터에서는 목표에 따라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시를 부탁드립니다.</p>	<p>A - 공급자적 시각이 담긴 진로지도보다는 문항의 내용대로 '진로 서비스' 관점에서 응답하도록 하는 것 검토</p> <p>B - 진로지도와 진로교육이 혼재되고 있으므로 초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 있음. 박스 안의 내용도 그에 따라 수정 필요. 성인 진로의 필요성을 묻고, 어떤 영역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으로 구성 필요. 성인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 필요. 성인 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주요 연령대와 집단 특성 등에 대한 질문을 한 뒤, 가장 필요로 하는 집단에 대한 질문으로 가는 것이 적절해 보임.</p> <p>연구진 - 진로교육 목표체계에 준한 영역과 진로 서비스의 유형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듯함. 3-1 이후의 문항도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함.</p>

188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초안	수정안	전문가 의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목표</th> <th style="text-align: center;">제공 여부</th> <th style="text-align: center;">예시</th> </tr> </thead> <tbody> <tr> <td>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td> <td></td> <td></td> </tr> <tr> <td>일과 직업세계 이해</td> <td></td> <td></td> </tr> <tr> <td>진로탐색</td> <td></td> <td></td> </tr> <tr> <td>진로디자인과 준비</td> <td></td> <td></td> </tr> <tr> <td>진로관리</td> <td></td> <td></td> </tr> </tbody> </table> <p>3-3. 귀하의 소속 센터에서는 다음 유형의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절차 및 방식으로 제공하고 계십니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제공 여부</th> <th style="text-align: center;">절차 및 방식</th> <th style="text-align: center;">주 이용 집단</th> </tr> </thead> <tbody> <tr> <td>진로수업</td> <td></td> <td></td> <td></td> </tr> <tr> <td>진로상담</td> <td></td> <td></td> <td></td> </tr> <tr> <td>진로정보</td> <td></td> <td></td> <td></td> </tr> <tr> <td>진로검사 및 평가</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3-4.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p> <p>3-5. 현재는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할 계획이시라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실 예정입니까?</p> <p>3-6. 진로 관련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성인 집단은 누구이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p>	목표	제공 여부	예시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세계 이해			진로탐색			진로디자인과 준비			진로관리			구분	제공 여부	절차 및 방식	주 이용 집단	진로수업				진로상담				진로정보				진로검사 및 평가				
목표	제공 여부	예시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개발																																								
일과 직업세계 이해																																								
진로탐색																																								
진로디자인과 준비																																								
진로관리																																								
구분	제공 여부	절차 및 방식	주 이용 집단																																					
진로수업																																								
진로상담																																								
진로정보																																								
진로검사 및 평가																																								

초안	수정안	전문가 의견
<p>8. 7-4번에서 응답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처, 센터가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p>	<p>4. 성인 진로교육 운영체계</p> <p>4-1. 위에서 응답한 성인 대상 진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처가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p> <p>4-2. 성인 대상 진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예: 센터 등)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p> <p>4-3. 기존에 있는 조직이 성인 대상 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떤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보십니까?</p>	<p>A -부처, 센터 외에도 새로운 조직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도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p>
<p>9. 성인 진로교육/지도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정책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p>	<p>5. 성인 진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정책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p>	
	<p>6. 성인 진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자유로운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p>	<p>C - 자유로운 의견 기술란 제공(아쉬운 부분, 개선점 등으로 한정하지 않는 칸)</p>

<부록 7> 설문조사 문항 개발

초안	수정안	전문가 의견
<p>1. 귀하께서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교육시설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평생교육센터, 대학취업지원센터, 문화센터, 주민센터, 시민대학 등)</p> <p>1) 한 번도 이용한 적 없다(3번 문항으로) 2) 과거에 이용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 3) 현재 이용 중이다.</p>	<p>SC1. 귀하께서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교육시설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공공 교육시설: 정부 및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공공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비영리 교육시설.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과 관련 정보의 제공, 진로교육·상담·지도, 취업교육·상담·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예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평생교육센터/평생학습센터, 대학취업지원센터, 주민센터, 시민대학</p> </div> <p>1) 한 번도 이용한 적 없다(→문4로 이동) 2) 이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이용 중이다 (→SC2로 이동)</p> <p>SC2. 귀하께서는 이용하신 시설은 무엇입니까? 가장 최근에 이용하신 시설을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문1로 이동)</p> <p>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3) 평생교육센터/평생학습센터 4) 그 외(대학취업지원센터, 주민센터, 시민대학 등)</p> <p>문1. 귀하께서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교육시설을 언제 이용하셨습니다? 1) 2020년(→문3으로 이동) 2) 2019년(→문3으로 이동) 3) 2018년(→문2로 응답 후 문3으로 이동) 4) 2017년 이전(→문2로 응답 후 문3으로 이동)</p>	<p>A: 1번 문항 아래에 각 센터에 대한 설명 추가함. 2) 과거에 이용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경우도 그 이유를 물어 보는 것이 어떨까 함.</p> <p>B: 문항 1번의 경우 2번 답지는 '2) 이용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이용하지 않는다.'로 수정해야 할 것</p> <p>D: 고용센터나 새일센터, 취업지원센터는 교육시설이 아닌 '취업지원기관'이라 함. 만약 교육시설로 통칭하려면 '공공 교육 시설이란 ○○○○ 등의 다양한 교육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시설을 의미한다는 정의 제시</p>

초안										수정안								전문가 의견	
2. 어떤 시설을 이용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설의 어떤 부분에 대해 만족/불만족 하셨습니까?										문3. 교육·학습·상담 등을 목적으로 아래의 시설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 보셨다면 만족도를 평가하고, 답지에 없는 시설은 기타에 적어서 응답해 주세요.								B: '어떤 시설을 이용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설의 어떤 부분에 대해 만족/불만족 하셨습니까?'를 '...이용해 보셨습니까? 있다면 만족도를 평가하고, 답지에 없는 시설은 기타에 적어주세요'로 수정 D: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경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각 시설 이용 여부, 각 시설 내 주요 서비스별(실업급여, 교육훈련, 집단프로그램, 취업상담 등) 이용 여부 및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한 만약 가능하면 추가로 만족/불만족의 이유를 주관식으로 응답 연구진: 2번 문항과 5번 문항을 통합하는 것이 반복되는 듯한 느낌을 줄일 수 있을 듯함.	
		이용 경험 유무		접근성		교육 서비스의 질		교육서비스의 다양성			시설 유형	이용 경험 유무	(※'예'에 응답한 경우만)						
		예	아니요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예	아니요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만족	불만족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평생교육센터																			
대학취업지원센터																			
문화센터																			
주민센터																			
시민대학																			
기타()																			
3.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그런 곳이 있는지 몰라서 2) 접근성이 떨어져서 3)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4)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져서 5) 이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문2. 과거에 이용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접근성이 떨어져서 2)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3) 담당자/강사의 전문성이 높지 않아서 4) 기타()								A: 6)은 일반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교육센터, 대학취업지원센터, 문화센터, 시민대학 등을 국공립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을지 의문.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을 이용한다고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가 있을 수 있어 응답하기에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음.	

192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초안	수정안	전문가 의견
<p>6) 민간 기관을 이용하고 있어서(4번 문항으로)</p> <p>7) 기타()</p> <p>※ 6)을 선택한 응답자 제외하고 모두 5번 문항으로</p>		<p>B: 3번 문항은 '2번에 제시된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면...'으로 수정. 기타와 민간 기관이 수렴되거나 동일한 기관일 것으로 예상됨.</p> <p>연구진: 과거에 이용했지만 하지 않는 성인의 응답이 본 연구의 목적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p>
<p>문4. 교육·학습·상담 등을 목적으로 민간 교육시설을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p> <p>민간 교육시설: 학원, 교육 컨설팅 업체, 민간 교육 훈련 기관 등</p> <p>1) 그렇다(▶문5 응답 후 문6으로 이동)</p> <p>2) 아니다(▶문6으로 이동)</p> <p>문5. 민간 교육시설을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p> <p>1)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2) 접근성이 좋아서</p> <p>3)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p> <p>4) 담당자/강사의 전문성이 높아서</p> <p>5) 기타()</p>	<p>문항 유지</p>	
<p>5. 공공의 교육시설을 통해 다음의 진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p>	<p>문9. 공공 교육시설을 통해 다음의 진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 보셨다면 만족도를 평가하고, 답지에 없는 서비스는 기타에 적어서 응답해 주세요. (* SC1의 1번 응답자 문항 건너뛴)</p>	<p>B: 기타의 괄호 안에는 밑줄을 그어서 기술할 수 있음을 표시할 것. 진로상담, 진로정보, 진로설계 지원이라는 답지를 응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사용</p> <p>C: 전문용어들(예: 진로상담, 진로정</p>

초안	수정안	전문가 의견																																																																																																																					
<table border="1" data-bbox="459 518 878 802"> <thead> <tr> <th rowspan="2"></th> <th colspan="2">이용 경험 유무</th> <th colspan="5">만족도</th> </tr> <tr> <th>예</th> <th>아니요</th> <th>매우 만족</th> <th>만족</th> <th>보통</th> <th>불만족</th> <th>매우 불만족</th> </tr> </thead> <tbody> <tr> <td>진로 프로그램</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진로상담</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진로정보</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진로설계 지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이용 경험 유무		만족도					예	아니요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진로 프로그램								진로상담								진로정보								진로설계 지원								기타()								<table border="1" data-bbox="907 432 1346 890"> <thead> <tr> <th rowspan="3">항목</th> <th colspan="2">이용 경험 유무</th> <th colspan="5">만족도</th> </tr> <tr> <th colspan="2">예</th> <th colspan="5">아니요</th> </tr> <tr> <th>예</th> <th>아니요</th> <th>매우 만족</th> <th>만족</th> <th>보통</th> <th>불만족</th> <th>매우 불만족</th> </tr> </thead> <tbody> <tr> <td>직업세계의 변화에 적응하고,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대응할 역량을 기르는 교육</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희망하는 진로를 찾아 생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조언·멘토링 등</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적성, 흥미, 역량 등의 진로심리검사 및 평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직업, 노동시장, 진로 경로, 교육훈련과정 등의 정보</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기타()</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항목	이용 경험 유무		만족도					예		아니요					예	아니요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직업세계의 변화에 적응하고,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대응할 역량을 기르는 교육								희망하는 진로를 찾아 생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조언·멘토링 등								적성, 흥미, 역량 등의 진로심리검사 및 평가								직업, 노동시장, 진로 경로, 교육훈련과정 등의 정보								기타()								<p>보, 진로설계 지원 등)은 풀어서 사용 D: '진로 서비스'가 응답자에게 모호할 수 있으므로 진로 서비스가 무엇을 포함하는지 제시 필요 연구진: 2번 문항과 5번 문항을 통합하는 것이 반복되는 듯한 느낌을 줄일 수 있을 듯함.</p>
		이용 경험 유무		만족도																																																																																																																			
	예	아니요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진로 프로그램																																																																																																																							
진로상담																																																																																																																							
진로정보																																																																																																																							
진로설계 지원																																																																																																																							
기타()																																																																																																																							
항목	이용 경험 유무		만족도																																																																																																																				
	예		아니요																																																																																																																				
	예	아니요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직업세계의 변화에 적응하고,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대응할 역량을 기르는 교육																																																																																																																							
희망하는 진로를 찾아 생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조언·멘토링 등																																																																																																																							
적성, 흥미, 역량 등의 진로심리검사 및 평가																																																																																																																							
직업, 노동시장, 진로 경로, 교육훈련과정 등의 정보																																																																																																																							
기타()																																																																																																																							
<p>6. 아래의 목표를 위해 공공 교육시설의 진로 서비스를 이용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진로 목표체계 보기로 제시)</p>	<p>문10. 현재 공공 교육시설에서 성인들을 위한 다음 항목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table border="1" data-bbox="907 1007 1346 1209"> <thead> <tr> <th rowspan="2">항목</th> <th colspan="5">만족도</th> </tr> <tr> <th>매우 만족</th> <th>만족</th> <th>보통</th> <th>불만족</th> <th>매우 불만족</th> </tr> </thead> <tbody> <tr> <td>자아이해,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역량 개발 (직업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기이해, 타인과의 상호작용, 네트워크 능력 등)</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항목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자아이해,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역량 개발 (직업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기이해, 타인과의 상호작용, 네트워크 능력 등)						<p>D: 제시된 항목이 응답자들에게 생소하거나 '아니요'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음. 연구진: 응답자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풀어서 설명</p>																																																																																																				
항목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자아이해,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역량 개발 (직업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기이해, 타인과의 상호작용, 네트워크 능력 등)																																																																																																																							

194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초안	수정안	전문가 의견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909 414 1124 491" rowspan="2">항목</th> <th colspan="5" data-bbox="1124 414 1348 443">만족도</th> </tr> <tr> <th data-bbox="1124 443 1169 491">매우 만족</th> <th data-bbox="1169 443 1214 491">만족</th> <th data-bbox="1214 443 1258 491">보통</th> <th data-bbox="1258 443 1303 491">불만족</th> <th data-bbox="1303 443 1348 491">매우 불만족</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909 491 1124 619">직업세계의 이해 및 직업의식 형성 (직업 및 노동시장과 관련한 흐름과 동향 등의 파악, 이해, 직업의식 고취 등)</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data-bbox="909 619 1124 762">직업·진로정보 탐색 및 교육기회 탐색 (직업정보 및 취업·이직·전직 관련 정보 등의 탐색·수집·활용 방법 및 관련 역량 증진 등)</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data-bbox="909 762 1124 906">진로의사결정능력 개발 및 진로설계능력 강화 (직업생활의 시기와 단계, 이직·전직·창업·퇴직 등의 변화 요인을 고려한 진로계획 수립 및 실행 준비 등)</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data-bbox="909 906 1124 1094">진로관리 및 실제적 변화 대응 능력 향상 (직업세계의 적응 및 위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진로적응·진로탄력성 강화 및 자기주도적 진로관리 역량 및 전략 형성 등)</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항목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직업세계의 이해 및 직업의식 형성 (직업 및 노동시장과 관련한 흐름과 동향 등의 파악, 이해, 직업의식 고취 등)						직업·진로정보 탐색 및 교육기회 탐색 (직업정보 및 취업·이직·전직 관련 정보 등의 탐색·수집·활용 방법 및 관련 역량 증진 등)						진로의사결정능력 개발 및 진로설계능력 강화 (직업생활의 시기와 단계, 이직·전직·창업·퇴직 등의 변화 요인을 고려한 진로계획 수립 및 실행 준비 등)						진로관리 및 실제적 변화 대응 능력 향상 (직업세계의 적응 및 위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진로적응·진로탄력성 강화 및 자기주도적 진로관리 역량 및 전략 형성 등)						
항목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직업세계의 이해 및 직업의식 형성 (직업 및 노동시장과 관련한 흐름과 동향 등의 파악, 이해, 직업의식 고취 등)																																					
직업·진로정보 탐색 및 교육기회 탐색 (직업정보 및 취업·이직·전직 관련 정보 등의 탐색·수집·활용 방법 및 관련 역량 증진 등)																																					
진로의사결정능력 개발 및 진로설계능력 강화 (직업생활의 시기와 단계, 이직·전직·창업·퇴직 등의 변화 요인을 고려한 진로계획 수립 및 실행 준비 등)																																					
진로관리 및 실제적 변화 대응 능력 향상 (직업세계의 적응 및 위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진로적응·진로탄력성 강화 및 자기주도적 진로관리 역량 및 전략 형성 등)																																					
	<p>(신규) 문11. 향후 성인들을 위한 다음 항목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초안	수정안						전문가 의견	
	항목	필요성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자아이해,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역량 개발 (직업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기이해, 타인과의 상호작용, 네트워크 능력 등)							
	직업세계의 이해 및 직업의식 형성 (직업 및 노동시장과 관련한 흐름과 동향 등의 파악·이해, 직업의식 고취 등)							
	직업·진로정보 탐색 및 교육기회 탐색 (직업정보 및 취업·이직·전직 관련 정보 등의 탐색·수집·활용 방법 및 관련 역량 증진 등)							
	진로의사결정능력 개발 및 진로설계능력 강화 (직업생활의 시기와 단계, 이직·전직·창업·퇴직 등의 변화 요인을 고려한 진로계획 수립 및 실행 준비 등)							
진로관리 및 실제적 변화 대응능력 향상 (직업세계의 적응 및 위기·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진로적응성·진로탄력성 강화 및 자기주도적 진로관리 역량 및 전략 형성 등)								

196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초안	수정안	전문가 의견
7. 민간 교육기관을 통해 다음의 진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진로 서비스 유형 보기 제시)	문항 삭제	A. 연구진: 질문이 반복되고 특정 답을 유도하는 듯한 느낌을 방지하기 위해 문항 삭제
8. 아래의 목표를 위해 민간 교육시설의 진로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진로 목표체계 보기로 제시)	문항 삭제	A. 연구진: 질문이 반복되고 특정 답을 유도하는 듯한 느낌을 방지하기 위해 문항 삭제
9. 어떤 시설을 통해 진로 서비스가 제공될 때 가장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온라인 2) 주민센터 3) 평생교육센터 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 여성새로일하기센터 6) 시민대학 7) 민간 교육시설 8) 기타()	문12. 어떤 시설을 통해 진로지원 및 서비스가 제공될 때 귀하께서 가장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온라인 2) 주민센터 3) 평생교육센터 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5) 여성새로일하기센터 6) 시민대학 7) 민간 교육시설 8) 기타()	
10. 위에서 해당 시설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접근이 편리해서 2) 잘 알려져 있어서 3)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4)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5) 기타()	문13. 위에서 해당 시설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접근이 편리해서 2) 잘 알려져 있어서 3)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4)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5) 기타()	
11. 위의 센터 외에 진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1) 그렇다(12번으로) 2) 아니다(13번으로)	문14. 앞에서 제시한 공공의 교육시설과는 독립적으로 성인을 위한 진로지원 및 서비스를 전담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B: 문항 및 보기 수정
12. 귀하께서는 어느 연령대까지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하십니까?	문6. 귀하께서는 어느 연령대까지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하십니까?	

198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초안	수정안	전문가 의견																																																
1) 진로상담/컨설팅 2) 진로심리검사(성인용) 3) 경력관리 프로그램 지원 4) 교육비/학비 지원 5) 진로 및 취·창업교육 강화 6) 직업정보 제공 7) 기타()		연구진: 8번과 겹치는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삭제																																																
BG 1. 응답자 특성 <table border="1" data-bbox="456 775 878 912"> <thead> <tr> <th>성별</th> <th>1. 남</th> <th>2. 여</th> <th>연령대</th> <th>1. 20대</th> <th>2. 30대</th> <th>3. 40대</th> <th>4. 50대</th> <th>5. 60대</th> </tr> </thead> <tbody> <tr> <td>거주 지역</td> <td colspan="2">(시/도)</td> <td>거주 지역 규모</td> <td colspan="5">1. 대도시 2. 중소도시 3. 도서읍면산간지역</td> </tr> </tbody> </table>	성별	1. 남	2. 여	연령대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거주 지역	(시/도)		거주 지역 규모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도서읍면산간지역					BG 1. 응답자 특성 <table border="1" data-bbox="909 695 1344 957"> <thead> <tr> <th>성별</th> <th>1. 남</th> <th>2. 여</th> <th>연령대</th> <th>1. 20대</th> <th>2. 30대</th> <th>3. 40대</th> <th>4. 50대</th> <th>5. 60대</th> <th>6. 70대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거주 지역</td> <td colspan="2">(시/도)</td> <td>거주 지역 규모</td> <td colspan="6">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지역 4. 도서산간지역</td> </tr> <tr> <td>재직 여부</td> <td colspan="2">1. 풀타임 근무 중 2. 일용직/파트타임/시간제 근무 중 3. 무직 상태임</td> <td>구직 준비 여부</td> <td colspan="6">1. 구직준비 중 2. 아님</td> </tr> </tbody> </table>	성별	1. 남	2. 여	연령대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6. 70대 이상	거주 지역	(시/도)		거주 지역 규모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지역 4. 도서산간지역						재직 여부	1. 풀타임 근무 중 2. 일용직/파트타임/시간제 근무 중 3. 무직 상태임		구직 준비 여부	1. 구직준비 중 2. 아님						연구진: 재직 여부 및 구직준비 여부 추가 A: 연령대에 70대 이상 추가. 은퇴 직후 연령대인 60대와 70대 이상은 서로 다른 삶의 배경이나 태도 차이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함. B: 재직 및 구직의 구분이 모호. 재직 중에서도 재직 중과 재직 중이 아닌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현재 시간제 근무를 하거나 단기간 근무 중인 경우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듯함.
성별	1. 남	2. 여	연령대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거주 지역	(시/도)		거주 지역 규모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도서읍면산간지역																																														
성별	1. 남	2. 여	연령대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6. 70대 이상																																									
거주 지역	(시/도)		거주 지역 규모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지역 4. 도서산간지역																																														
재직 여부	1. 풀타임 근무 중 2. 일용직/파트타임/시간제 근무 중 3. 무직 상태임		구직 준비 여부	1. 구직준비 중 2. 아님																																														

<부록 8> 「진로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개정 초안 및 전문가 의견에 따른 수정안 대조표

초안	수정안	전문가 의견
<p>「진로교육법」</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모든 국민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p> <p>5. “진로수업”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수업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기관 및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업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p>	<p>「진로교육법」</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모든 국민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p> <p>5. “진로수업”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수업과 대학이나 각종 진로교육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업을 말한다.</p>	<p>D,F - 국민의 범위에 따라 소외될 대상 확인 필요</p> <p>B,C - 진로교육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설정 필요 ('모든 국민'으로 최종 반영)</p> <p>E,G - 간결하고 명료한 표현 필요 (5항 '수업 및 프로그램' → '수업')</p>
<p>제4장 성인의 진로교육</p> <p>제15조(성인의 진로교육) ① 성인의 진로교육은 개인의 진로를 선택, 계획, 준비,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여 성인의 성공적인 직업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장 성인의 진로교육</p> <p>제15조(성인의 진로교육) ① 성인의 진로교육은 개인의 진로를 선택, 계획, 준비,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E - 불필요한 표현 축소 (1항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여 성인의 성공적인 직업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 →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함')</p> <p>D,G - 구체적 표현 필요, 동일 법령은 '본법'으로 수정 (2항 '「진로교육법」' → '본법', 3항</p>

200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초안	수정안	전문가 의견
<p>② 「진로교육법」 제15조와 제16조에 따른 진로교육 기관 및 「평생교육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성인의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교육부장관은 성인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다.</p>	<p>② 본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른 진로교육기관 및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은 성인의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교육부장관은 성인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나 관련 기관과 협력하기 위한 성인진로교육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p>	<p>‘성인진로교육협의회’로 구체화)</p>
<p>제16조(진로교육 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 ① 성인 진로교육에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전문기관에서 개발 및 보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진로교육기관과 평생교육기관은 성인의 자아이해와 진로탐색, 진로준비, 진로설계 및 재설계, 진로의사결정, 진로관리 등 다양한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p> <p>③ 진로교육기관과 평생교육기관의 장은 성인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성인에게 적합한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제16조(진로교육 서비스의 운영) ① 본법 제15조 2항에 따른 성인 진로교육 실시 기관은 성인의 자아이해와 진로탐색, 진로준비, 진로설계 및 재설계, 진로의사결정, 진로관리 등 다양한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성인 진로교육 실시 기관의 장은 성인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성인에게 적합한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p>	<p>G,E - 명확한 표현 필요 (초안의 1항과 2항을 묶어 수정안 1항으로 제시) (수정안 2항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의 수정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 ‘인력을 배치하여’)</p>

초안	수정안	전문가 의견
<p>제20조(진로체험 지원)</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20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진로교육 실시 기관, 모든 국민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B - 진로체험 파트에서도 대상 확대 필요 (‘학생’ → ‘모든 국민’) (‘진로교육 실시 기관’ 문구 추가)</p>
<p>제21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p>	<p>제21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① 교육부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체험기관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p>	<p>B - 진로체험 파트에서도 대상 확대 필요 (‘학생’ → ‘모든 국민’)</p>
<p>「평생교육법」</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성인 진로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p> <p>4. 진로교육은 개인의 진로를 선택, 계획, 준비,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여 성공적인 직업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p>	<p>「평생교육법」</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진로교육 및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p> <p>4. “진로교육”은 개인의 진로를 선택, 계획, 준비,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p>	<p>B,C - 직업능력 향상교육과 연관성 반영 필요 (1항 ‘진로교육 및 직업능력 향상교육’으로 변경) E - 불필요한 표현 축소 (4항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여 성인의 성공적인 직업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p>

202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초안	수정안	전문가 의견
<p>제7장 진로교육</p> <p>제41조(성인의 진로교육) ① 「평생교육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및 「진로교육법」 제15조와 제16조에 따른 진로교육기관에서 성인의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교육부장관은 성인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다.</p>	<p>제7장 진로교육</p> <p>제41조(성인의 진로교육) ① 본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및 「진로교육법」 제15조와 제16조에 따른 진로교육기관은 성인의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교육부장관은 성인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나 관련 기관과 협력하기 위한 성인진로교육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p>	<p>D,G - 구체적 표현 필요, 동일 법령은 '본법'으로 수정 (1항 「평생교육법」 → '본법', 2항 '성인진로교육협의회'로 구체화)</p>
<p>제42조(진로교육 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 ① 성인 진로교육에 필요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전문기관에서 개발 및 보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평생교육기관과 진로교육기관은 성인의 자아이해와 진로탐색, 진로준비, 진로설계 및 재설계, 진로의사결정, 진로관리 등 다양한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p> <p>③ 평생교육기관과 진로교육기관의 장은 성인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성인에게 적합한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제42조(진로교육 서비스의 운영) ① 본법 제41조 1항에 따른 성인 진로교육 실시 기관은 성인의 자아이해와 진로탐색, 진로준비, 진로설계 및 재설계, 진로의사결정, 진로관리 등 다양한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성인 진로교육 실시 기관의 장은 성인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성인에게 적합한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p>	<p>G,E - 명확한 표현 필요 (초안의 1항과 2항을 묶어 수정안 1항으로 제시) (수정안 2항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의 수정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 '인력을 배치하여')</p>

□ 저자 약력

- 서유정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이재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이윤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 발행연월일 2020년 11월 28일 인쇄
2020년 11월 28일 발행
- 발 행 인 나 영 선
- 발 행 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 화: (044)415-5000, 5100
팩 스: (044)415-5200
- 등록일자 1998년 6월 11일
- 등록번호 제16-1681호
- I S B N 979-11-339-8286-8 93370
- 인 쇄 처 에이치에이엔컴퍼니(02-2269-9917)

©한국직업능력개발원